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430-10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일러두기

이 책은 그동안의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를 모아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신법령 등을 반영한 종합민원 사례집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민원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이 책의 내용이 적용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쟁송, 유권해석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최근 관세행정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개인 민원이 2023년 전체 민원 총 240,103건에서 54%를 차지할 정도로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 분야의 중심 고객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기대하는 관세행정 서비스 수준에 부응하면서 보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민원상담 사례 1,021건을 수록한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직구 등 문의가 많은 분야를 추가·보완하고 최신 법령 등을 반영한 종합민원 사례집으로, 국민 사용편의를 위해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에 e-book으로 함께 제공되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납세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24시간 응대를 위해 AI 챗봇 서비스도 향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세행정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관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직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2024년 4월

관세청장 고광효

01 통 관

■ 1. 수입통관

1. 의료용구 수입시 세관 통관절차	003
2.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 절차	004
3. 애완동물 수입통관 절차	005
4.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통관 절차	006
5. 식용 식물 수입통관 절차	007
6. 의약품 수입업자 자격요건	008
7.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009
8. 수입시 중고차와 신차의 구분기준	010
9.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고시와의 관계	011
10.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012
11.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 수입요건	013
12.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014
13. 용도세율 신청시기	015
14. 전자적 무체물의 세관신고 절차	016
15.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요건구비 후 통관	017
16. 검역 대상 물품의 통관 절차	018
17. 수입통관 보류되는 국세체납자 범위	019
18. CITES 물품의 정의와 해당물품	020
19.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021
20.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22
21. 술, 담배의 면세기준과 기준 초과시 수입절차	023
22. 세관검사 이유와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이유	024
23. 수입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상보상 절차	025
24.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 타인 명의로 다시 수입 가능한지?	026
25.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	027
26. 수입 신고는 어느 세관에 하여야 하나?	028

27.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	029
28. 개인자격으로 영리목적 수입 가능한지?	030
29. B/L 분할 수입신고 요건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	031
30. 수입신고 방법	032
31. 수입신고 취하 절차	033
32.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034
3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	035
34. 수입요건 및 절차	036
35. 쇠고기 등 육류 수입통관 절차	037
36. 식용활어 수입요건	038
37. 화장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39
3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지원제도	040
39. 신고오류점수 벌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041
40.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 입력 기준	042
41. 견본품 일시반출 절차	043
42. 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구비요건	044
43. 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생략대상	045
44.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용지원제도	046
45. 병행수입물품 통관 구비서류	047
46. 허브제품 샘플의 수입통관 절차	048
47.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어린이장난감 구분	049
48. CITES대상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050
49.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 수입 절차	051
50. B/L양도 절차	052
51.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053
52. 유박(식물성 기름 짜고남은 찌꺼기)이 수입신고 대상인지?	054
53. 수입신고는 누가할 수 있나요?	055
54. 반입금지 외국 의약품	056
55. 전기용품 인증서류 세관 제출	057
56. 건강기능식품 통관불허 품목	058
57.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신고 요건확인	059
58. 수입통관 시 요건확인 서류	060
59.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시 희망하는 날짜로 가능한지요?	061
60. 부두직통관 제도의 의의	062
61. 장식용램프의 전기용품 인증서류	063

62. 수입금지품목	064
63. 해외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신고 요령	065
64.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066
65. 레저용 칼 수입 시 필요한 세관장확인 사항	067
66. 헬스기구 수입 시 요건 업무처리 방법	068
67. 3D 펜 수입 시 필요 요건	069
68. 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 사항	070
69. 방사능 관련 세관장 확인 서류	071
70. 금형제작비 과세가격 산정	072
71.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073
72. 창고보관료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074
7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의 과세가격	075
74. 수출국내 운임관련비용의 과세가격	076
75.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채무의 과세가격	077
76.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가격	078
77. 수출대금 상계·할인가격의 과세가격	079
78. 현금할인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080
79. 생산지원 금형대금의 과세가격	081
80. 수출항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산정	082
81. 선지금금 과세가격 산정	083
82. 무상제공 재료비용 과세가격 산정	084
83. 수출국내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산정	085
84. 판매자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의 과세가격 산정	086
85. 수입항 도착 후 창고보관료의 과세가격 산정	087
86. 수출국내 내국세 공제 과세가격 산정	088
87. FOB조건에서 운임 및 보험료의 과세가격 산정	089
88. 구매자가 무상제공한 디자인비용의 과세가격 산정	090
89.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091
90. B/L 양수시 관세의 과세표준	092
91. DDP조건에서 수입국내 부과세 공제여부	093
92.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094
93.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098
94. 관세환율이란?	099
95. 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100
96. 클레임 상당액을 상계한 지급금액의 과세가격 산정	101

97. 해외임가공 물품 수입 시 왕복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	102
98. 변경된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103
99. 포인트를 수입물품 대가로 지급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	104
100.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 결정	105
101. 가격할인 받은 경우 과세가격 결정	106
102. 고구마를 튀긴 제품의 HS 코드	107
103. 담배잎의 HS 코드	108
104. 솥을 집을 때 사용하는 집게의 HS 코드	109
105. 비누로 만든 꽃의 HS 코드	110
106. 딸기 탕후루의 HS 코드	111
107. 파티용 풍선의 HS 코드	112
108. 스노우볼메이커의 HS 코드	113

■ 2. 감면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115
2.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물품의 재수출 시기	116
3. 관세감면 신청시기	119
4.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면세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은?	120
5.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121
6.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요건 및 신청 절차	122
7.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	123
8.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	124
9. 장애인용품 면세	125
10. 군부대와 계약체결 후 수입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126
11. 업체가 수입하는 견본품이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7
12.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후 재수출하는 경우(재수출면세)	128
13. 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하는 경우(재수출면세)	129
14. 재수출감면세	130
15. 재수입면세 요건 및 대상	131
16. 재수출 조건부 면세물품의 재수출 불이행, 용도의 사용 및 양도	132
17.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수출이행 불가 시 여타 감면 조정	133
18.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	134
19. 하자있는 수출물품 국내로 반입 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135

20.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136
21. 국내 수리목적 수입물품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137
22. 아동복지단체 기증 목적 수입물품 따른 관세 면제 여부	138

■ 3.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	140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요건	141
3.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	142
4.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방법	143
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144
6.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145
7.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146
8.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47
9. 상표권 등록 방법 및 절차	148
10. 상표권 침해 여부	149
11. 위조상품이 무엇인지, 처벌은?	150
12.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보시 대응 방법	151
1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보류	152
1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 신고취하 안되나요?	153
1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통관 요령	154
1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절차	155

■ 4. 수출통관

1.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이란	157
2. 수출화물의 선적정보 조회 방법	158
3. 폐업한 회사 수출신고필증 재발급 가능한지?	159
4.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과 절차	160
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직접 휴대반출 가능한지?	161
6.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162
7. 계약상이물품 수출 절차	163
8.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 절차	164

9.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방법	165
10. 수출신고 대상 세관	166
11. 수출신고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	167
12.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 절차	168
13. 수출신고 사항 정정 시 필요한 서류	169
14. 원상태 수출신고	170
15.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71
16. 반송신고의 취하	172
17. 반송물품 보세운송신고	173
18. 반송신청 절차	174
19.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기간 초과 시 조치	175
20. 반송이 가능한 경우와 배제되는 경우	176
21.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신고	177
22.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용품의 수출통관	178
23.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179
24.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분할 적재	180
25. 물품 수출 시 과세 여부	181
26. 해외 구매물품 반품 절차	182
27. 휴대반출물품 사후 적재 확인 가능 여부	183
28. 수출신고필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184

■ 5. 여행자휴대품

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186
2. 세관공무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	187
3.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188
4. 관세 등의 사후납부 허용	189
5. 밀수입물품의 몰수 규정	190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91
7.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 범위와 통관 절차	192
8.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193
9.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	194
10.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	195
1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196

12.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총기·도검류 등 신고	197
13. 외화반입 한도 및 절차	198
14. 입국 시 자진신고	199
15.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200
16. 의약품 및 건강식품 수입통관	201
17.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202
18. 유치된 여행자휴대품 반출 절차	203
19. 주류에 대한 세율	204
20. 제주도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 수량 한도	205
21. 대리반입 처벌	206
22. 국내면세품 구매물품 교환·환불 절차	207
23. 식품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208
2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 가능 여부	209
25. 공항에서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210
26. 외국인도 사후납부 가능한지요?	211
27. 휴대물품 반출신고 절차	212
28. 휴대품신고서 제출	213
29. 휴대품 신고	214
30. 향수의 면세범위	215
31.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의 정의	216
32.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218
33. 흡의 휴대반입 가능 여부	219
34. 전자담배용 무니코틴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220
35. 출국장 텍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 방법	221
36. 인천공항 은행 등 유관기관의 업무시간	222
37. 간이통관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225
38. COB화물 통관 절차	226
39. 자진신고 불이행시 처벌	227
40. 유치물품의 공매(매각 처분) 근거규정	228

■ 6. 특송물품

1. 해외직구 화장품과 향수에 대한 면세범위	230
2.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세액	231
3.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	232
4.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 절차	233
5. 축산물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통관 절차	234
6.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	235
7. 특송물품의 통관진행상황 확인 방법	236
8. 특송물품 배송위치 확인 가능 여부	237
9. 특송물품 통관지연 사유	238
10. 통관 대행업체(관세사) 연락처	239
11.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 변경 방법	240
12. 수입신고정정 방법	241
13.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 변경 방법	242
14.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243
15. 환불을 위해 통관대행업체에 통장사본 제공해도 되나요?	244
16. 통관보류 사유 및 처리 절차	245
17. 통관보류 물품 처리 절차	246
18. 통관 시 개인정보 누락으로 인한 통관보류	247
19.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248
20. 판매처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 환불에 통관보류통지서	249
21. 세관통관 시 과세대상은 가격자료 제출	250
22. 중국 의약품 및 건강식품 수입통관	251
23.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	252
24.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해외직구 시 통관 절차	253
25. 목록통관의 정의 및 범위	254
26. 특송우편을 통한 외화송금 절차	255
27.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256
28.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	257
29. 상용물품은 과세대상	258
30. 자가사용물품 재판매 가능한지?	259
31.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	260
32. 구매하지 않은 물품 합산과세대상지정시 처리	261
33. 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262

34. 알 수 없는 관세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263
35. 지재권침해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제재는?	264
3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 절차	265
37.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 폐기 가능 여부	266
3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방법	267
39. 구매대행업자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268
40.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269
41.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 통관 가능 수량	270
42. 담배 면세 기준	271
43.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272
44. 수입요건을 면제 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	273
45.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 절차	274
46.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	275
47. 주류 및 담배 면세범위	276
48. 소액면세 범위	277
49.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 수량	278
50. 화장품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279
51.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	280
52.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	281
53. 해외직구 북한물품의 통관	282
54.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 기준	283
55.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 허용 수량	284
56. 유명상표제품 해외직구 가능 여부	285
57. 공동구매하는 물품 면세 여부	286
58. 분류 목록통관	287
59. 목록통관 배제 물품	288
60. 전자담배 용액 목록통관 가능 여부	289
61. 주방용칼 목록통관 가능 여부	290
62. 목록통관 한도	291
63.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292
64. TV의 목록통관	293
65.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	294
66. 향수 목록통관 허용 수량	295
67. 한국여행중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하는 차량 통관	296
68. CBG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통관	297

69. 차류의 면세통관 범위	298
70. 특송물품 면세 한도	299
71. 할인가 적용시 소액면세 가능 여부	300
7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301
73. 목록통관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	302
74. 소액면세제도란?	303
75. 할인금액에 대한 소액면세 가능 여부	304
76.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지 않고 해외직구 가능한지?	305
77. 개인통관고유부호 타인에게 대여 안되나요?	306
78. 사업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 가능 여부	307
79.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308
80.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대상인가?	309
81.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310
82.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또는 삭제 방법	311
83.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기재 시 변경 방법	312
84.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면?	313
85.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대처 방법	314
86.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지?	315
87.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	316
88.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317
89.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방법	318
90. 세율 오류를 사유로 통관보류 시 조치 요령	319
91. 서류제출 보안을 이유로 통관보류 시 조치 요령	320

■ 7. 이사물품

1. 이사물품 수입신고	322
2.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절차	323
3. 자동차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324
4.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중 "단기체류자"의 기준	325
5. 외국시민권자의 이사자 거주기간 확인	326
6.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327
7. 이사물품 수출신고 요령	328
8.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329

■ 8. 우편물통관

1.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여부	331
2.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의 종류	332
3.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은?	333
4.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파손(분실) 되었을 경우 배상 절차	334
5.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 절차	335
6. 인터넷을 통한 국제우편물 통관신청 방법	336
7. 우편물 소액면세 기준 자가사용물품 통관 기준	337
8. 특송업체 배달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338
9.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방법	339
10. 사업자 명의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340
11.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방법	341
12.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방법	342
13. 선물에 대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방법	343
14. 간이통관 신청 후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지?	344
15. 대리인이 수령할 물품에 간이통관 신청	345
16. 간이통관 신청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346
17. 우편물 통관조회가 안되는 경우	347
18. 간이통관 신청내역 수정(취소) 방법	348
19. 우편물 반송 사유	349
20. 우편물 반송 절차	350
21. 해외직구물품도 반송	351
22. 해외직구물품 반송 시 배송지 변경 가능	352
23.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도착했다면?	353
24. 신용카드 납부를 계좌이체로 변경	354
25. 카톡으로 온 통관절차 수수료는 납부해야 되는건지?	355
26. 우편물 간이통관 납부영수증 발행기관	356
27. FTA협정 사후적용 신청 절차	357
28. 해외직구물품 현장에서 수령	358
29.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359
30. 프랑스산 위스키 한-EU FTA	360
31.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개장검사하는 이유	361
32. 세관방문해야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통관할 수 있나요?	362

■ 9. 보세화물

1. 견본품 반출규정	364
2. 공동보세구역 특허 시 충족 요건	365
3. 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되는 경우	366
4.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367
5. 보세사자격증 취득요건 및 관련 규정	368
6.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 사용가능 물품	369
7.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신고	370
8. 자유무역지역 제조가공 물품 국내업체에 판매 시 통관 절차	371
9.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	372
10.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	373
11.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	374
12.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375
13.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	377
14.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378
15. 보세구역 보수작업	379
16.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책임자	380
17. 적재목록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적재화물목록 정정	381
18. 국제무역선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 절차	382
19. 적재화물목록	383
20. 현행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	384
21. 해외 구매물품 반품 절차	385
22. 적재목록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적재화물목록 정정	386
23.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보세구역 확인	387
24. 보세판매장 반입 내국물품의 국내 재반입	388
25. 체화물품 공매 시 매각대금 처분	389
26. 종합보세구역 내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390
27. 보세구역 종류별 지정 시 혜택	391
28. 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392
29.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	392
30.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	394
31.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	395
32.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396
33. 신혼여행 기념 명품가방 면세점 구매 가능 여부	397

34.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398
35. 보세제도란?	399
36. 보세구역 장치기간	400
37. 보세운송업자들의 영업등록 요건	401
38. 적하목록 2차 전송 후 B/L누락 시 처리 절차	402
39. 체화물품 적하목록 정정	403
40. 환적화물 관리대상화물 검사	404
41. 국내 환송비행기 면세품 구매	405
42.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 요건	406
43. 보세판매장내에서 보수작업 인정 여부	407
44.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408
45. 세관에서 개인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이유	409
46.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과태료	410
47. 장외작업장에서 보세공장 등으로 물품 반출 가능 여부	411
48. 보세구역이란?	412
49. 보세공장의 내국작업	413
50. 보세판매장 물품의 전자상거래 가능 여부	414
51. 보세판매장 반입검사	415
52. 보세판매장 재고물품 처리 절차	416
53. 보세판매장 미인도물품 처리 방법	417
54. 영업용보세창고 허가 요건	418
55. 특허보세구역 승계 시 구비서류	419
56. 일관운송 환적화물	420
57. 보세공장의 원재료 원상태 반출	421
5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	422
59. 보세공장 내 견본품을 전시 등을 위해 일시반출	423
60. 보세공장운영인 기장의무	424
61.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425
62.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	426
63.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	427
64. 특허보세구역에 반입정지 또는 특허 취소	428
65. 관리대상화물의 정의 및 선별 기준	429
66. 검사지정화물의 해제	430
67.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정의와 법적 의무	431
68.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의 관리대상화물 검사 절차	432

69. 검역불합격된 보세화물의 폐기 절차	433
70. 보세공장 내 조립·분해 등 가능 여부 및 장치기간	434
71. 수입 화장품의 보세운송 요령	435

■ 10. A.T.A 까르네

1. A.T.A.까르네 정의	437
2.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438
3.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439
4.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440
5.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와 사용	441

■ 11. SOFA

1.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443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444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445
4. SOFA협정 대상자의 이사물품 면세통관 방법	446
5.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	447
6.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	448

■ 12. 기타

1. 수입신고 시 관세사 대행	450
2. 관세사시험 공고 및 시행시기	451
3.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대행수입 판매 절차	452
4.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453
5. 세관 통관 수수료	454
6. 세관 물수품 구매처	455
7. 선용품공급업체의 영업등록 갱신 절차	456
8. 선용품의 정의	457
9. 외국무역선(기) 입항보고 절차	458

10. 외국무역선 출항 절차	459
11.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중인 선박에 방문하려면?	460
12. 선용품공급업자의 상시승선증 발급 절차	461
13. 영업등록 주소지 변경	462
14. 선용품공급업자의 공급대행 한도	463
15. 특정지역 선용품공급업자가 타지역 영업 가능 여부	464
16. 선박용품관련 관세청고시	465
17. 선용품공급업체 영업등록 기간 갱신	466
18. 국제무역선 적재허가받은 자 승선신고 따로 해야하나?	467
19.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용	468
20. 선박용품 적재완료보고 시기	469
21. 일반인 구매 참여시 낙찰 한도	470
22. 압수와 몰수의 차이점	471
23. 세관 구매의 참여 및 응찰 방법	472
24. 모바일 팩스로 받은 승선허가서로 부두 출입 가능 여부	473
25. 내국선박용품도 적재 후 완료보고	474
26. 수리불가 적재물품 수입통관 가능 여부	475
27. 수출신고 하지 않은 선박에 선용품 적재 가능 여부	476
28. 해외직구물품 파손 시 보상	477

02 심사

■ 1. 품목분류

1. 콤포지션 리더 vs. 합성피혁의 차이점	480
2. A4 용지의 품목분류	481
3. 소프트웨어 CD 품목분류	482
4. HS 품목분류상 미완성, 미조립 기계의 분류원칙	483
5.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	484
6. HS 품목분류상 다기능 기계와 다용도 기계의 분류원칙	485
7. HS 품목분류상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원칙	486
8. HS 품목분류상 부속기기의 분류원칙	487
9. HS 품목분류상 기계부분품이란?	488
10. 컴퓨터 및 노트북의 품목분류	489
11. 스마트폰에 대한 품목분류	490
12.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491
13.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	492
14. HS 품목분류상 범용성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 원칙	493
15. 사료식물 및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품목분류	494
16. 인조·합성·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495
17.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496
18. 옥수수 사일리지(Silage)의 품목분류?	497
19. 페루산 장어류에 대한 품목분류	498
20. 식용 어류설육의 품목분류	499
21.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	500
22.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	501
23. 건조한 도라지의 품목번호	502
24.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503
25.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	504
26. 과실주스와 과실음료의 품목번호	505
27. 스위트콘과 옥수수의 품목분류	506
28. 커피 함유 제품의 품목번호	507

29.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508
30.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509
31. 고추의 품목분류	510
32. 청국장, 낫또(Natto)의 품목분류	511
33. 어류의 필렛(Fillet)란?	512
34. 순수한 에틸알코올(or Ethanol)의 품목분류	513
35. 김치(Kim-chi)의 품목분류	514
36. 참깨·참기름 및 들깨·들기름의 품목분류	515
37. 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516
38. 돼지족발의 품목분류	517
39. 어류 식용설육의 품목분류	518
40. 소의 곱창·양·천엽의 품목분류	519
41.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520
42. 녹차·홍차·보이차의 품목분류	521
43.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522
44. 참깨분의 분류기준	523
45. 멸치함유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524
46.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품목분류	525
47. 드론의 품목분류	526
48.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527
49. 이륜 전동 운송장치의 품목분류	528
50. 유모차·핸드카트의 품목분류	529
51.잡지와 함께 수입되는 부록(가방)에 대한 과세여부	530
52. 애견용 삼푸·의류의 품목분류	531
53. 여자용·남자용·유아용 의류의 구분기준	532
54. 구강·치과 위생용제품의 품목분류	533
55. 셀카봉의 품목분류	534
56.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535
57. SSD(솔리드 스테이트)의 품목분류	536
58.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537
59.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538
60.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거	539
61.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540
62. 품목분류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541
63. 지폐·주화·옛날 돈에 대한 관세율	542

64.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543
65. 캠핑용 선풍기(Tripod camping fan)의 품목분류	544
66. 진공방식 텀블러의 세 번분류	545
67. 팔로산토 나무스틱의 품목분류	546
68.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품목분류	547
69.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548
70. 인조가죽자켓의 HS 코드	549
71. 강화유리의 HS코드	550
72. 방한용 의류와 일반 의류의 분류기준	551
7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HSK 제9703호)의 분류기준	552
74. 주방용 목제가구의 의미는?	553
75. 품목번호(HSK)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554
76.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제출서류	555
77.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수수료	556
78.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시 샘플제출 여부	557
79.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한	558
80. 관세율표의 가금류의 정의	559
81.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560
82.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수수료	561
83.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반려	562
84. 로열젤리의 정의	563
85. 관세율표의 인경(Bulbs)의 정의	564
86. 관세율표의 육두구(Nutmeg)의 정의	565
87. 관세율표의 변성유장의 정의	566
88. 관세율표의 커드(Curd)의 정의	567
89. 관세율표의 마롱글라세의 정의	568
90. 관세율표의 수세미의 정의	569
91. 관세율표의 납(Waxes)의 정의	570
9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권자	571
93. 도체와 이분도체	572
94. 품목번호(HSK)란?	573
95.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574
96.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신청	575
97. 원산지확인을 위한 품목번호 확인방법	576
98. 사후분석결과에 따른 수입신고	577

99. 소매용 세트포장 물품의 인정범위	578
100. 국가간 품목분류 기준	579

■ 2. 관세환급

1. 과오납환급 신청	581
2. 계약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582
3.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 반품 시 환급	583
4. 해외직구제품 반품 시 환급	584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기한	585
6.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586
7.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반품 및 환급 절차	587
8.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기납증 발급	588
9. 환급 관할지세관	589
10.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590
11. 수입관세율이 다른 원재료의 관세환급 방법	591
12. 환급금 계좌등록 시 제출서류	592
13. 간이정액환급·개별환급 선택	593
14.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물품 개별환급 신청	594
15. 환급신청 후 보관대상 서류와 보관기간	595
16.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596
17. 환급대상의 수출사실 확인	597
18. 수입세액분할증명(분증) 발급	598
19.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및 구비서류	599
20.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600
21. 임가공위탁자 요건	601
22. 환급대상 수출(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및 공사)	602
23. 환급대상 수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	603
24.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	604
25.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605
26.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	606
27. 원상태 수출환급 절차	607
28. 추가환급신청 대상과 제출서류	608
2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609

30. 덤프방지관세 환급여부	610
31. 최초 환급신청 절차	611
32. 환급신청 시점	612
33. 환급신청권자	613
34. 과다환급 자진신고 기간	614
35. 과다환급금에 대한 자진신고	615
36. 환급신청 제출서류	616
37. 추가환급 신청기간	617
38. 해외임가공임에 대한 과세 및 환급	618
39.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619
40.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단축배제	620
4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단축배제	621
42. 원상대수출 유효기간 단축배제	622
43. 소요량 산정 및 신고 방법	623
44. 환급대상 원재료	624
45. 수출용원재료 수출이행기간	625
46. 개별환급제도란?	626
47. 환급신청권의 승계 절차	627
48. 환급 사후심사	628
4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산물 관리	629
50. 보세공장 불량물품 국내반출	630
51. 클레임에 따른 대체품 관세환급	631
52.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 환급	632
53. 수출용품 포장용기 환급	633
54. 제증명 양도일자 기준	634
55. 신고납부 세액정정	635
56. 징수금액의 최저한	636
57. 과오납환급 환급가산금과 기준	637
58. 소프트웨어 입력의 환급특례법상 생산 해당 여부	638
59. 보세공장 건조 선박의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639

■ 3. 과세가격

1. 신고납부 수정 및 경정	641
2. 납세신고란?	642
3. 신고납부 세액정정	643
4.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	644
5. 무료배송으로 구매 시 과세운임	645
6.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사유	646
7.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647
8.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	648
9.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 과세	649
10. BWT조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650
11. ATA까르네물품 과세가격 결정	651
12.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	652
13. 실제지급가격이란?	653
14.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654
15. 보세장치 중 전매된 물품 과세가격 결정	655
16.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환율과 적용시점	656
17. 수입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	657
18. 수입 후 국내 설치비 과세가격 산정	658
19. 할인금액 과세가격 산정	659
20. 우리나라에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과세여부	660
21.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661
22.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662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663
24. 해외가공 수입 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여부	664
25. 사전심사 결정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665
26. 납세의무자가 아닌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	666
27.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란?	667
28. 클레임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668
29. 무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669
30.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방법	670
31. 잠정가격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671
32. 포인트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기준	672
33. 수입 중고승용차 과세가격	673

34. 잠정가격 신고	674
35.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 관련성	675
36.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676
37. 동종·동류비율 산출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기준	677
38.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678
39. 당면 및 만두(파스타)의 품목분류	679
40. 관세법령정보포털	680
41. 품목분류 사전심사	681
42. 관세의 납부기한	682
43. 토요일·공휴일 관련 납부기한	683
44.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684
45. 관세 등 납세증명서 발급	685
46. 체납가산세 감면여부	686
47. 관세체납자 출국금지	687
48. 관세체납자 출국정지 해제요청	688
49.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689
50.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690
51.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691
52.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692
53. 수입용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693
54. 원산지판정 기준	694
55.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	695
56. 원산지판정 신청	696
57.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697
58.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698
59. 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	699
60. 관세 등 납부방법	700
61. 담보의 종류	701
62. 포괄담보 제공 신청	702
63. 월별납부업체 승인 신청	703
64.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관리	704
65. 유통이력신고 절차	705
66. 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706
67. 유통이력신고 의무	707
68. 유통이력신고 거래일자	708

69.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709
70. 과자제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710
71. 재수출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711
72. 약세사리에 원산지표시 방법	712
73.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713
74.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방법	714
75. 요가매트 원산지표시 방법	715
76. 조립식가구 원산지표시 방법	716
77.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방법	717
78. 봉제인형 원산지표시 방법	718
79. 기저귀 원산지표시 방법	719
80. 애완견 사료 원산지표시 방법	720
8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721
82.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	722
83. MADE IN P.R.C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723
84. 화장품용기 원산지표시 방법	724
85. 담보기준가격의 정의	725
86. 원산지 미표기에 따른 보수작업	726
87. 온라인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727
88. 유통이력신고 대상	728
89. 위스키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	729
90.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730
91. 사후관리물품의 양도	731
92. OEM방식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732
93. 사후관리대상물품 반입기한 연장	733
94. 벌크물품 원산지표시	734
95. 유통이력관리제도란?	735
96. 유통이력관리물품 반입명령	736
97.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제공 가능여부	737
98. 포괄담보에 해당하는 담보물	738
99. 월별납부 한도액 상향조정신청 시 제출서류	739
100.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740
101. 관세 등의 납부방법	741
102. 담보의 종류	742
103.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743

104.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744
105.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745
106. 원산지 표시 인정	746
107.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747

■ 4. AEO

1.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란?	749
2. AEO공인 혜택	750
3. AEO공인 신청방법	751
4. AEO공인 신청 심사요건	753
5. AEO공인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754
6. AEO공인 후속절차	755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 자격 및 역할	757
8. 기업상담전문관이란?	758
9. AEO MRA(상호인정약정)의 정의	759
10. AEO제도의 혜택	760
11. AEO공인심사 절차	760
12. AEO인증 관련기관	761
13. 기업상담전문관(AM)이란?	761
14. 종합심사·갱신심사·재공인심사의 정의	762
15. 다수 공인부문에 대한 중복신청 가능여부	762
16. AEO공인신청 전 준비사항	763
17. AEO공인기준 가이드라인	763
18. AEO공인(갱신) 절차와 담당기관	764
19. 공인(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764
20. AEO공인 신청서류 제출	765
21. AEO공인 갱신 신청기한	765
22. AEO공인심사 정정 및 취소(취하)신청	766
23. AEO공인(갱신) 신청 결격사유	766
24. 재무건전성 관련 동종업계 부채비율 확인 방법	767
25. AEO공인 기준	767
26. AEO공인 등급(단계)	768
27.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BP경진대회) 참여혜택	768

28. 수출입관리책임자의 지정	769
29.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769
30.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770
31. AEO공인 필수교육	770
32. AEO관리책임자 교육	771
33. AEO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및 수수료	771
34. AEO관리책임자 변경 시 교육	772
35. AEO공인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772
36. 수출입관리책임자 변경 시 조치사항	773
37. AEO심사대상 사업장이란?	773
38. 수출포장 거래업체에 위탁 시 해당업체도 심사대상?	774
39. 사업장일부를 타사업자에 임대한 경우 AEO공인 인정여부	774
40. 사업장 폐쇄 시 현장방문심사 생략여부	775
41. AEO공인 예비심사	775
42. AEO예비심사란?	776
43. AEO예비심사 절차 및 비용	776
44. AEO예비심사방식과 내용	777
45. AEO서류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777
46. AEO공인기준 가이드라인	778
47. 현장심사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778
48.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779
49. 서류심사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못한 경우 조치	779
50. 공인기준 미충족 시 공인(갱신)신청	780
51. 수출입물품 미취급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780
52. 공인심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781
53. 현장심사 항목	781
54.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 교부	782
55. 현장심사 준비사항	782
56. 현장심사 시작회의 및 CEO인터뷰	783
57. 현장심사 평가회의	783
58. 현장심사 일정연기(중지)	784
59. 현장심사 중단사유	784
60. AEO최종공인	785
61. AEO공인 심사절차	785
62. 종합심사 신청기간	786

63. 종합심사진행 기간 중 AEO공인 효력유지	786
64. AEO공인등급 상향신청	787
65. AEO공인 등급 조정신청	787
66. 공인등급 조정심사 신청시기	788
67. 공인등급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788
68. 등급조정 심사기준 및 공인기준	789
69. 등급조정심사 결과	789
70. 등급조정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790
71. AEO공인 종합심사 신청	790
72. AEO심의위원회 상정시기	791
73. AEO심의위원회 추가제출서류	791
74. AEO심의위원회 결과 확인	792
75. 심사결과 점수기준 미달 시 공인신청 기각여부	792
76. AEO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인유보 사유	793
77. 신고정확도 하위 10%의 의미는?	794
78.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구제방안	794
79. AEO인증일 기준	795
80. AEO 업체 AAA등급 상향 조건	795
81.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검증 연기 신청 시기	796
82. AEO업체의 과태로 감경기준	797
83.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	798
84. AEO기업의 수입신고 시 혜택	799
85. AEO기업의 수출신고 시 혜택	800
86. AEO 공인 중복신청 가능 여부	801

■ 5. 세율

1. 세계 주요국가의 수입관세율	803
2. 관세율의 정의	804
3. 베이킹믹스 제품에 대한 관세율	805
4. WTO양허관세 적용대상 국가	806
5. 최빈국특혜관세	807
6. 덤핑방지관세	808

■ 6. 관세조사

1. 관세조사란 무엇인가요?	810
2. 관세조사에 따른 납세자권리보호	811
3. 일자리창출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812
4.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	813
5. 관세조사의 중지·연기 사유	814

■ 7. 기타

1. 분석자료 보완요청 기한경과 시 조치	816
2. 분석결과 확인방법	817
3. 재분석의뢰	818
4. 분석진행사항 확인	819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820
6.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821
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822

03 FTA

■ 1. FTA 특혜관세

1. APTA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825
2.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 여부	826
3. 원산지증명서 양식	827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828
5.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시 원산지결정 기준	829
6. 한-미 FTA 특혜관세	830
7.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831
8. 국내구매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 여부	832
9. 상대국의 FTA협정세율	833
10. 수리·개조 재반입물품 면세	834
11. 원산지증명서 반복사용(포괄증명)	835
12.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836
13.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837
14. 한-미 FTA 직접운송 규정	838
15. 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839
16. 완제품 구매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	840
17. 원산지검증 후속절차	841
18.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842
19.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환급	843
20. 협정국간 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844
21. APTA 적용 신청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845
22.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846
2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847
24.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	848
25. FTA 협정관세 적용 충족요건	849
26.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850
27.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서식	851

28. FTA협정세율 확인 방법	852
29. FTA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853
30.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854
31. 원산지증명서와 실제수입량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	855
32.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	856
33. 수리 후 재반입물품에 대한 한-EU협정세율 적용	857
34. 보세공장물품 FTA협정세율 적용	858
35. 수입국과 수출국의 HS code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	859
3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860
3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여행자휴대품의 범위	861
38. 협정관세 사후적용	862
39. 원산지증빙서류 보존기간	863
40.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864
41. 인증수출자 서류보관 의무 면제	865
42. 인증수출자 신제품 재인증	866
43.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차이	867
4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868
45. 동시 송부물품 가격합계 기준	869
46. EU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870
47.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871
48. 한-중 FTA 수출대행자 발급 C/O 인정여부	872
49. 중국의 APTA 원산지증명서	873
50.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결정	874
51.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	875
52. RCEP특혜세율 적용	876
53. RCEP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877
54.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878
55. 한-미 FTA 수리후 재반입물품의 관세 면제(비당사국 경우 시)	879
56.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의 범위	880
57. 한-영 FTA적용 대상물품 직접운송 원칙	881
58. 한-EU FTA협정 적용	882
59. 한-중FTA 누적 적용	883
60.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	884
61. 임가공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885
62. 한-EU FTA 원산지 누적기준	886

63.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887
64. 원산지포괄증명서	888
65.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889
66.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890
67. 원산지관리시스템	891
68.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892
69. 한-EFTA 협정 적용	893
70.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자	894
71. 1개의 B/L로 수입하는 다수품목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895
72. 원산지증명서류 관리	896
73. 원산지관리전담자	897
74. 한-EU FTA 당사자	898
75. EU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화물 분리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	899
76.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900
77. 원산지소명서 작성	901
78.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902
79.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903
80. 한-EU FTA 6,000유로초과 물품	904
81.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시 조치	905
82. 제3국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906
83. 사후 취득한 인증수출자번호로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	907
84.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908
85.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경유 EU물품의 직접운송 기준	909
86.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표기방식	910
87.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911
88. 양식이 없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912
89. 원산지증명서 란 기재방법	913
90. 한-EU FTA 인증수출자	914
91. 세번변경기준	915
9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916
93. 인도관세당국의 원산지관리 강화	917
9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	918
95.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	919
96.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920
97. 미국산 의류 해외직구 시 FTA 세율적용	921

98.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922
99. 제출자료의 비밀유지	923
100.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면제	924
101. 협정관세 적용배제	925
102. 원산지검증	926
103.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927
104.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반려	928
105. 원산지사전심사 내용변경	929
106. 관세청 YES FTA 아카데미	930
107. 「FTA-PASS」란?	931
108. FTA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	932
109.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933
110.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934
111. 미조립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935
112. 용도세율대상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936
113.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	937
114.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의 재적용	938
115. 협정관세의 재적용	939
116.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함께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940
117.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941
118. EU로부터 수입하는 탁송화물의 총가격 계산	942
119. 이사화물인 미국산 차량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943

04 조 사

■ 1. 일반조사

1. 밀수신고 대상	946
2. 밀수신고 방법과 절차	947
3. 위조상품 판매 신고	948
4. 밀수신고 포상금	949
5. 대리 구매·반입 행위	950
6.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951
7.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에 따른 처벌	952
8.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953
9.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	954
10. 통고처분의 정의	955
11. CITES대상 생물 수입 시 처벌	956
12. CITES의 정의	957
13. CITES대상 동물의 수입절차	958
14. 탐지견 분양절차	959
15. 탐지견 핸들러 채용절차	960
16. 밀수입물품의 몰수	961
17. 세관공무원의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962
18. 세관의 범죄 수사 범위	963

■ 2. 외환조사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965
2. 다국적기업의 채권·채무 상계	966
3. 물품으로 수출자에 대한 채무상계	967
4.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	968
5. 구매대행 대금 제3자지급 신고절차	969
6.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제3자지급 대상여부	970

7.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	971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용카드 거래	972
9. 온라인 가상화폐 환전소 창업 절차	973
10.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행위	974
11. 외화의 휴대반출신고	975
12. 외화반입신고	976
13. 유학 시 휴대수출 외화 한도	977
14. 우편물로 반입한 외화의 세관신고	978
15.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979
16. 환전영업자 반기보고	980
17. 미화 2천불 이하 매입·매각 시 인적사항 확인여부	981
18. 환전업 운영에 따른 장부기재	982
19. 환전장부 보관기간	983
20. 환전업 폐업 절차	984
21. 환전업 일시휴업 절차	985
22. 환전업 등록 시 제출서류	986
23.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 작성방법	987
24. 환전영업자 업무 허용 범위	988
25.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	989
26. 외국환업무의 정의 및 등록 절차	990
27.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991
28. 물품 수출에 의해 해외수출자에 대한 채무 상계 절차	992
29. 구매대행업체로 통한 대금지급이 제3자지급신고예외대상인지 여부	993
30. 당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신고절차	994
31. 우편물로 외화 수령시 세관 신고 방법	995
32. 매입·매각 시 인적사항 확인 여부	996
33.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	997
34. 외국환 업무의 정의 및 미등록시 처벌	998
35. 일반시민이 환전영업소에서 환전 시 제한	999
36. 제품을 유상으로 수출한 후 해당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1000
37.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 수령 절차	1001
38. 수취인과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	1002
39. CREDIT NOTE(신용전표)가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1003
40.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행위에 대한 처벌	1004

05 납세자보호

■ 1. 불복청구

1. 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1007
2. 관세법상 불복청구 대상	1008
3. 세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	1009
4. 이의신청의 정의와 신청기간	1010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1011
6. 불복청구 제기 세관	1012

■ 2. 납세자보호

1. 관세 관련 법령 절차 상담 센터	1014
2. 관세청·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1015
3. 관세청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1016

06 기 타

■ 무역통계

-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이용방법 1019

■ 유니패스

- 1. 관세청 유니패스(UNI PASS) 1023
- 2. 유니패스 회원 가입·탈퇴·정보변경 1024
- 3. 유니패스 인증서 및 등록방법 1025
- 4.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1026

■ 기타

- 1.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1028
- 2.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활용 방법 1029
-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1030
- 4.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과 절차 1031
- 5. 휴대폰을 이용한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1032

PART 1

통 관

1. 수입통관
2. 감면
3. 지식재산권
4. 수출통관
5. 여행자휴대품
6. 특송물품
7. 이사물품
8. 우편물통관
9. 보세화물
10. A.T.A 가르네
11. SOFA
12. 기타





1. 수입통관

1

의료용구 수입시 세관 통관절차



의료기기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www.kmdia.or.kr 02-596-7404) 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만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세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란의 명의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 ※ 의료기기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아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구비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 의료용구 해당여부, 수입자의 자격,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2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 절차



총포·도검·화약류 수입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총포,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 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 질의하신 물품이 동법에 해당물품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청 생활질서과(www.police.go.kr, 02-3150-2647),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www.smpa.go.kr, 02-700-29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용물품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www.dapa.go.kr, 1577-11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3

애완동물 수입통관 절차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054-912-0423, www.qia.go.kr
- 환경부 ☎ 1577-8866, 044-201-7240, www.me.go.kr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4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통관 절차



한약재나 식용으로 사용되는 식물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www.qia.go.kr, 식물검역과 054-912-0616)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계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6000-1841)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시,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수입 허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 해주시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5

식용 식물 수입통관 절차



식용식물(과일, 채소 등)을 수입할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6

의약품 수입업자 자격요건



의약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약사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신고필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 수입신고필증 검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다음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

* <https://unipass.customs.go.kr>

■ 해당 화면에서 발행번호, 신고번호, 납세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품명, 순중량, 총 과세가격, 총 세액합계를 모두 입력한 후 검증버튼을 누르면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쇄물 출력은 제한)



관련법령

- 해당 없음

8

수입시 중고차와 신차의 구분기준



수입하는 자동차 중 신차와 중고차의 구분기준이 있나요?



- HSK 분류상 “신차”는 제작사가 신규로 제작·조립한 자동차로서 국내·해외에서 운행을 위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분류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중고차”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

9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고시와의 관계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세관장 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라 한다.)」는 관세법 이외의 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시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비게시된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0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어떤 것인가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신규지정되는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2018년 1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며, 수입통관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해당 요건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유아용 의류’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은 관세율표 제61류 주6 및 제62류 주5에 규정된 바에 같이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에 적용되며, ‘유아용 의류’는 관세율표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분류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관련 ‘유아용 의류’는 제6111.20-1000호, 제6209.20-1000호 등 HSK 기준으로 6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유아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및 관련 위임행정규칙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Disposers)를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HS CODE 제8509.80-4000호)에 분류되는 물품 수입시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 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2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의료기기 수입시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 의료기기법규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허가자 명의로만 수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 4. 9.부터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상 수입허가자(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 수입허가 받은 자)가 세관 수입신고서 '수입자'란의 명의인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허용됩니다.

* 세관 수입신고 사례 : 수입신고서상 ① 수입자가 수입허가자이고 납세의무자가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 경우이거나, ② 수입자와 납세의무자 모두 수입허가자인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3

용도세율 신청시기



용도세율이란 무엇이며, 어떤 물품에 대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세율 적용 대상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입니다.
- 용도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3조
-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14

전자적 무체물의 세관신고 절차



전자적 무체물(소프트웨어)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서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상 ‘무역’은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을 말합니다.
- 즉, 「관세법」에서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유체물’의 국가 간 반출입을 수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조 및 제241조
- 대외무역법 제2조

15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요건구비 후 통관



제가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라 요건미비로 통관보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자가사용이라고해도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 또는 수입신고한 관세사에 검역신청하시어 검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대상인 도검, 총기류 등은 경찰청장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규제대상 도검 또는 총포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통관이 가능하며, 약사법 대상인 개인자가사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해당 없음

16

검역 대상 물품의 통관 절차



제가 받을 물품이 검역대상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역대상 물품(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은 개별 법령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검역증명서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검역 검사를 신청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41. 검역물품 통관절차 관련 문의》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7

수입통관 보류되는 국세체납자 범위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되나요?



-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신고 건은 통관보류될 수 있습니다.
- 통관지세관장이 위에 해당하는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여부를 결정하며, 미압류 결정 시 통관보류가 해제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5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18

CITES 물품의 정의와 해당물품



CITES는 무엇이며, 해당물품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 공고」 별표 5, 6, 7, 7의2, 7의3, 8, 9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www.me.go.kr, 전화번호 044-201-7240)에 확인하면 됩니다.

※ 별표 5에 계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9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세관장확인 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으로서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수출입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별법령 혹은 「통합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전기용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 안전확인 등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 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술, 담배의 면세기준과 기준 초과시 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되는 술,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물품가격	면세수량	비고
주류			1병 (1L 이하)	주세, 교육세는 과세
담배	궐련	미화 150불 이하	200개비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 상기의 면세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 : 관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항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용은 왜 화주(화물주인)가 부담하나요?



-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 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 세관검사는
 -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생략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제173조 제3항(세관검사장)

23

수입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상보상 절차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세관검사로 인하여 손상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특송화물·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결정 사항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4조 및 제6조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지급절차 및 방법)

24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 타인 명의로 다시 수입 가능한지?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 원칙적으로 구매취소하는 경우 반송하여야 하며, 이미 통관되어 다른 사람이 다른 주소지에서 해당물품을 수취한 경우, 배송지 상이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액면세를 받은 자가사용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지방세 포함)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주요 세액 계산 방식]

세종	과세표준 및 세율
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 × 관세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 * 일반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기준가격
주세	주정 : 수량(kℓ) × (57,000 + 가산금액)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 × 주세율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관련법령

-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입신고는 언제부터 어느 세관에 할 수 있나요?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출항전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가능
- 다만, 세율인상 예정물품, 새로운 수입요건 요구법령 적용(예정)물품,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HS 10단위 변경, 수량 또는 중량이 변경되는 물품 등은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3조 및 제244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7조, 제8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3.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외에도 허가 또는 승인받은 내역대로 물품을 취급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에는 하역허가를 받거나 보수작업 승인 등을 받은 사람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조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 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 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문의 필요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8조

29

B/L 분할 수입신고 요건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



B/L 분할 수입신고 및 B/L 합병 후 수입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수입신고는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통해 전송하면 됩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 다만,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송품장, 가격 신고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됩니다.

- 그러나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사전세액 심사 대상물품 등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31

수입신고 취하 절차



수입신고 취하 절차는 무엇인가요?



-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 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 취하 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수입신고의 취하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0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고지연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보세창고 등의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지연 가산세(최대 500만원)를 징수합니다.
- 가산세 징수 대상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 지연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제3항,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및 제248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도 적용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수리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5.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 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이 중 1번의 분할선적 수입이란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종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 또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 각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회에 걸쳐 분할 선(기)적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할선적 조건은 1)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 2) 단일 계약에 의해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국적기업의 본·지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수출자로 인정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2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34

수입요건 및 절차



수입시에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품목분류번호(세번, HSK) : 국제간에 공통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어떠한 물품이라도 반드시 하나의 번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35

쇠고기 등 육류 수입통관 절차



쇠고기 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 등은 무엇입니까?



-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 054-912-0423)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요?



- 식용 활어를 수입하려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www.nfq.s.go.kr, 051-400-5716)의 검역합격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www.mfds.go.kr, 1577-1255)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여부, 상세절차 등은 위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37

화장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 수입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후 매 수입시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www.kpta.or.kr, 02-2162-8000)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 통관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수입시 세관장은 표준통관예정보고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수입자의 자격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화장품법」을 참고하시거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1577-12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수출입통관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에서는 2020. 7. 1.부터 「관세법」 제17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검사비용에 대하여는 일정조건 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는 제외)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운송료와 상하차료, 적·출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주 본인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제3항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당사에 부과된 오류점수는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오류발생일의 다음 달 3일부터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기타 → 귀책 사유자별 오류현황(상세)



관련법령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오류발생현황 제공 및 통보)

40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 입력 기준



수입신고 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를 입력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거래처: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 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 해외공급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 상의 Shipper 기재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41

견본품 일시반출 절차



검역 등을 위한 견본품 반출 시 수입신고 수량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검역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수거증으로 확인되는 수량만큼 제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1조



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입 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은 물품의 품목번호 별로 다릅니다.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와 구비요건을 확인 및 이를 구비 후 수출입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별법에 따라 구비해야할 수출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물품 수출입 시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세관장확인입니다.
- 다만, 같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식물방역법」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리대상화물 관련 검사비용 지원대상 및 환수제도는 어떠한가요?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수출입하는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및 신고지 검사를 수행한 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하였거나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 비용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검사비용을 신청하였거나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 부정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물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과금의 부과·징수)



병행수입 제품을 통관할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관세법」제24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라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 관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세관장이 수출입물품 검사시,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에 따라 수출입자 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실을 통보받은 수출입자 등은 상표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 또한 해당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내지 제242조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허브씨앗 수입 시 필요한 수입요건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수입하는 허브팩내 허브 및 허브씨앗 등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시마다 검역을 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피규어(15세 이상) 수입요건은 무엇인가요?



- 완구 수입의 경우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귀하가 수입하는 완구가 14세 이상 수집용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요건확인 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제품 포장 등에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으로 표시하는 등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확인대상 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매 시 표시 관련 사항 등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주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457)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 (외래동물, 파충류, 양서류, 외래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나요?
2. 애완용으로 맹독성 생물을 들여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도 있나요?
3. 최근에도 실제 밀수입된 CITES 파충류, 양서류 등 적발된 사례도 존재하나요?



1. '19.12월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래(야생)생물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력하여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협업검사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야생생물법 등에 따른 요건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2021년 8월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세관에서 맹독성 사탕수수 두꺼비, 멸종위기종 악어 등 불법수입 외래생물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김포공항세관에서 CITES 지정 생물을 허가 없이 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49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 수입 절차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료기기) 수입 시 필요한 수입 요건 및 원산지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시력교정용 플라스틱 안경렌즈(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 및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야 하며,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품목신고(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오니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B/L 양수도 계약 후 수입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상법」 제852조에 따른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 간 B/L을 양수도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장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양수도계약서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해당없음



오류점수 통보를 받고 해당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오류점수에 의견이 있다면 오류점수가 발생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오류점수가 발생한 세관장에게 같은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오류점수의 의견제출 및 확정)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됩니까?



- 유박(식물성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은 수출입 신고 대상 폐기물 중 동식물성 잔재물에 해당되어 수입을 위해서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화주(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신고인부호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https://unipass.customs.go.kr>
- 관세사등은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 의미하며 관세사 등은 타인으로부터 수입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을 의뢰받아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2조



반입이 안되는 중국산 약은 무엇이며, 반입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CITES 대상물품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이 검출된 일부 중국산 약이 반입이 제한됩니다. 주요 반입제한 중국산 약은 안궁우황환, 거통편, 우황청심환 등이 있습니다.
- 외국 의약품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효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여행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관가능한 외국 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용인 경우 국내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전기인증 요건서류를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만 해도 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 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대상법령으로, 수입물품이 전기용품 인증대상이라면 요건확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245조 제1항,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요건기관의 확인서 또는 요건 면제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세관은 일정비율의 검사 및 서류심사를 할 시에 수입물품의 해당 법령에 의한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이라면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상관없이, 각 법령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건확인서 없이 수입신고 후 국내 유통되는 미인증 불법제품은, 대상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인증 요건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멜라토닌, 요힘빈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통관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관세청은 의약품 유효성분이나 식품첨가물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식약처에서 제공받아 통관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위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237조(통관의 보류)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수입신고시 요건확인 어떻게 되나요?



- (관세청)「관세법」 제226조 및 관련 고시에 의거 수입식품은 세관장확인 생략 불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제외
- (식약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1호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비대상물품 지정,운영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2020. 4. 22, 일부개정) 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4.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
- 수입식품의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77-1255(식약처 종합상담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수입통관시 관련법령 등에 의한 요건확인서류 구비방법 문의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하면 요건확인 기관에 수입 허가승인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허가승인서 등 요건 확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요건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종이서류의 제출은 생략 됩니다.
-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요건확인기관의 경우에는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종이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59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시 희망하는 날짜로 가능한지요?



P/L제재 시행일자를 신고인 또는 화주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지요?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에 따라 P/L 제재는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6항(오류에 대한 제재 등)



부두직통관 제도는 무엇인가요?



- 부두직통관 제도는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한 후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운송하지 않고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컨테이너 상태로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송함으로써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두직통관은 FCL(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 화물(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이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장식램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미포함 제품도 인증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구조, 용도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 문의하신 물품이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품목번호 제9405.30호에 분류될 것으로 검토되며,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으로 배터리 미포함 제품이라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 「관세법」제234(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4조

63

해외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신고 요령



한 건의 수입신고 시 해외공급자가 다수이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만 입력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인 납세의무자 상호, 해외공급자 부호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다수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대표적인 해외공급자 부호만 입력하여 수입신고하면 기타 해외공급자의 부호는 신고가 누락되므로, 문의하신 방식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입신고 시 성분을 범위로 기재할 수 있나요?



- “성분”이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관세 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뜻합니다.
- 수입신고 하려는 물품의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각 요소의 함량·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확한 함량·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로 표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65

레저용 칼 수입 시 필요한 세관장확인 사항



레저용 칼 수입 시 필요한 세관장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에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물품의 품목번호와 연계하여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구비조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같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습니다.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일반적으로 칼 등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제8211호로 분류된다면, 세관장확인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9)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 02-3150-1361)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방위사업법」(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4)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헬스기구 수입 시 요건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이때, 귀하가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구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요건 대상이 아니라는 소관부처 민원답변, 용도설명서 등 요건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라. 귀하가 수입하는 헬스 기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 대상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3D 펜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할 때마다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수입하는 3D 펜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할 때마다 적합성평가 확인서를 구비하거나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구비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USB 무드등 수입통관 시 기타 세관장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나. 귀하께서 수입하려는 USB 무드등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등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 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 귀하가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비요건을 명확히 답변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69

방사능 관련 세관장 확인 서류



방사능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 식품이나 농수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식약처에서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무방사능확인서를 받고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폐기물수입신고증명서'를 환경부에서 세관에 전송하고 세관에서는 승인내역과 수입신고 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통관하게 됩니다.
- 그 외 고철, 비식용수산물, 요건확인 비대상 석탄재는 수입통관시 '산지증명서' 또는 '무방사능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에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사대상은 검사결과 이상없는 경우 통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중국에서 제조 및 수입하는 제품의 금형비를 구매자가 지급하고, 추후 제품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면 금형비를 환급받는 조건으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한 경우, 실제로 금형비를 환급 받은 후에 금형비 과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하며(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Ⅲ 7), 법 제30 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금형비를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금형 제작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누적발주수량이 일정 수량이상이 되어 금형비를 환급받는다 할지라도, 수입 후 환급받은 금형비로 인한 가격 변경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71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냉동 수산물 수입(구입)시 해당 원료구입 준비금으로 사전에 2,500만엔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판매자가 해당 준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판매단가(¥200/KG)에서 ¥50/KG을 공제한 단가(¥150/KG)에 근거해 송품장가격을 계산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구매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판매자의 변제는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판매단가(¥200/KG)를 기초로 한 송품장가격이 계산된다.)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송금한 원료구입준비금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판매가격(단가 ¥200/KG)에서 변제액(¥50/KG)을 공제한 금액(단가 ¥150/KG)에 따라 송품장가격이 계산되는 것이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고, 물품대금의 일부와 판매자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송품장가격으로 한 것이므로, 송품장가격(단가 ¥150/KG)에 해당 상계액(¥50/KG)을 가산한 금액(단가 ¥200/KG)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2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E국의 제조업자 S로부터 창고인도 가격으로 가구를 수입하는데, 거래 시점에 해당 수입물품은 S에 의해 E국의 제3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게 보낸 송품장가격(창고인도가격)에는 상기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송품장가격의 일부인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 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기 보관료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7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의 과세가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특수기계를 수입하면서 구매계약과 관계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의 M사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해당 기계를 포장하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가격에는 해당 기계의 포장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가산요소의 하나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재료비 이외에 인건비 기타의 비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부담하는 포장용 자재의 비용, 작업원의 왕복 여비, 이들의 호텔비 등 수출국에서의 체재비 및 일당 또는 임금 등 모두가 해당 기계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조건으로 수입(구입)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은 판매자 공장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송품장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수출국내에서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 B와 판매자 S와의 수입(매매)계약은 FOB조건으로 되어 있고, 구매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품대금을 구성하는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을 판매자 S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출국내 운임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75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채무의 과세가격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77

수출대금 상계·할인가격의 과세가격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건조과실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과실 건조용 기계를 \$10,000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물품대금(\$15,000)의 일부와 상계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회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송품장 가격은 수출물품 대금과 상계된 할인 후의 가격 \$5,000로 되어 있다.

이 경우 할인 후의 송품장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 판매자 S가 구매자 B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수출물품대금)를 수입물품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후의 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가격인 \$15,000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대금결제를 현금 즉시 지급(일람불 수입어음의 결제)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할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 지급된 또는 지급되어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지급가격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입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수입거래에서 실제 결제조건에 대응되는 가격은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현금할인후의 가격이므로 해당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이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79

생산지원 금형대금의 과세가격



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에 따라 송품장 가격과는 별도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금형구입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도에서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 단, 판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금형 등을 구입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부담한 때에는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을 근거로 구매자는 판매자 에게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용을 수입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형대금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국내의 가전판매업자B (구매자 B)는 E국의 제조업자 S(판매자 S)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전기제품을 공장인도조건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상기 수입물품을 적재할 선박의 수출항 도착 지연으로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해당 수입물품을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E국의 수출항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C에 지급하는 상기 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이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에 구매자 B가 지출한 관리비용이며,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해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상기 보관료는 수입물품의 운송에 부수되는 일시적인 보관에 관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에 관한 비용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81

선지급금 과세가격 산정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는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600,000을 선지급하였다.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선지급금을 물품대금으로 총당하는 것에 합의하고, 송품장 1건당 \$10,000 ($\$600,000 \div 60$ 회)의 선지급상당액을 공제한 송품장가격으로 하였다.

이번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고 계약가격 \$50,000에서 \$10,000이 공제된 \$40,000 가격으로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 \$40,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도 되는가?



- 구매자 B가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하는 가격(\$50,000)이 '실제지급가격'입니다. 즉, 송품장가격(\$40,000)에 송품장 1건당 선지급상당액(\$10,000)을 가산한 합계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양말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구매자는 이 양말에 사용되는 재료를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왕복운임 및 보험료 구매자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재료비는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의 금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매자가 무료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분품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가산요소'의 하나입니다.
- 구매자가 제공한 물품의 비용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가격과 구매자가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송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 본 사례의 경우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는 수입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제공물품을 국내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때의 가격 및 이것을 판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임 등의 총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83

수출국내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산정



국내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통조림을 구입(수입)한다. 구매자 B는 판매자로부터 상기 수입물품을 인수 받은 후 국내로 수출에 앞서 E국에 자기 비용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보관료(해당 수입물품 반출입에 관한 비용을 포함)를 E국의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한다.

상기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결정할 때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할 보관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상기 보관료는 상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S로부터 구매자 B에게 인도된 후 구매자 B의 계산으로 지급한 보관비용이고,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의류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송품장 상 물품대금의 내역에는 판매자가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구입 비용에 대한 은행융자 이자가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구매자가 의뢰한 수입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의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본 사안은 연불조건의 수입거래에 관한 이자*가 아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불이자 :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을 늦추는 기간 동안의 이자로 그 성격상 물품의 대가가 아니라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국내의 구매자 B는 특수관계가 아닌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합판을 구매(수입)한다.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구매자 B는 상기 수입물품을 사용한 제품의 국내생산을 개시하기까지의 동안 자기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 창고업자 C의 보세창고에 장치한다.

구매자 B가 창고업자 C에게 지급하는 상기보관료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 상기 보관료는 상기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자 B의 부담으로 행해진 보세창고에 관한 비용이고, 구매자 B로부터 판매자 S에 대한 또는 판매자 S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해진 지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지급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는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주문하였는데 송품장가격은 내국소비세 상당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수출국에서는 해당 물품 수출 시 수출국에서 부과한 내국소비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다.



- 수출국에서 수출 시 경감(면세를 포함)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은 경감 또는 환불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환불 또는 경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87

FOB조건에서 운임 및 보험료의 과세가격 산정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매한다. 구매자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박회사와 체결하고 해당 운임을 선박회사에 지급한다.
또한 구매자는 수입항까지 수입물품의 운송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운임 및 보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임 등 '가산요소'의 가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에 소요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 비용'(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가산요소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은 FOB조건으로 수입되어 송품장가격이 실제 지급가격이며 실제지급가격에 운임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구매자가 선박회사 및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운임 및 보험료의 가액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등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구매자 B는 D국의 판매자 S로부터 스웨터를 수입(구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구매자 B는 내국인 디자이너 C로부터 스웨터 디자인을 구입하여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구매자가 구입한 C의 디자인은 C가 E국의 디자인 사무소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이하 “령”) 제1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을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매자 B가 판매자 S에게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은 내국인 C가 제작한 것이지만, E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국외에서 개발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디자인(의장)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 비용은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무상 제공한 디자인(의장)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과세가격 사전심사 처리기한



-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사전심사)에는 1년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시행령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B/L 양수도 거래 시 관세의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법(이하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이하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한 후 이루어진 B/L 양수도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며,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기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관세평가운영에 관한고시 제15조 (수출판매의 범위)

91

DDP조건에서 수입국내 부과세 공제여부



DDP 조건으로 수입신고 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지 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법정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관세법 §30①)을 말하며,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총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법 §30②)
 - 수입물품의 가격조건이 DDP조건인 경우에는 수입국 내의 관세 및 체세 등이 송품장에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구분이 가능하므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신청방법 문의



■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란

- 과세가격 사전심사란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즉,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방문신청 포함)또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305-5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접수담당자 앞

[전산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심사 > 과
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 신청서 서식 및 구비서류는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관세평가 > 관세평가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양식)

[별지 제12호서식]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서 【일반용】			
(처리기간 : 1개월)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 예정 물품			
⑤ 수입 예정 시기		⑥ 통관 예정 세관	
신청내용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 금액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⑧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 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 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 【특수관계자용】			
(처리기간 : 1년)			
신 청 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관 련 기 업	④ 법인명(상호)	⑤ 대 표 자	
	⑥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⑦ 국가 및 주소		
⑧ 수입 예정 물품		(품목별·규격별 명세 기재)	
⑨ 수입 예정 시기		⑩ 통관 예정 세관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을지 작성)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제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수입 예정 물품(⑧)은 신청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건부터 사전심사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의 전일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제40조제3항 및 제47조제8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⑪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

※ 아래의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신청서 겹지에 첨부하여야 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제출서류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함

1. 거래내용

- 거래구조도
- 거래의 조건 또는 전제 (품목별로 구분되는 경우 구분 작성)
- 최근 5년간 공급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입가격 현황(신청물품에 한함)

2. 거래당사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

- 정상가격(이전가격) 산출방법(T/P 가이드라인의 방법)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3. 세관신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법」 제30조에서 제35조 중 1)
- 가격 산출 방법 또는 계산식
- 선택 경위 및 이유 설명

4.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 비교가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 비교가격 존재여부 및 비교가격과 신청물품의 가격 비교
- 거래상황법에 의한 비교(「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 통상적인 가격결정 방법,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등과 비교

5. 세관 심사실적 등

- 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를 받은 경우 심사기간, 대상기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경우 품목별 통보일자, 동종동류비율
-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를 받은 경우 사전심사 결정서 교부일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고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관련법령



관세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 회사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서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을 시달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세청 홈페이지> UNI-PASS전자통관> 정보조회> 신고지원정보> 주간환율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선불할인*에 따른 실제대금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신고 전에만 인정되는지, 계약 조건에 지급시기를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 이후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인보이스 발급일 부터 10일 이내 지급되는 경우 1%할인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선불할인이 적용된 거래가격이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 이전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확정된 경우
- 수입신고 당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수입물품 중 일부 불량이 확인되어 다음 수입될 물품의 인보이스에 불량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신고가능한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클레임 상당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대금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이후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클레임 상당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품장 가격에 상계액을 가산한 금액(즉, 원래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해외임가공 물품 수입 시 왕복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수입할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으로 공급한 원재료 등의 구입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가산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또한 상기 생산지원의 가격 외에 수입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하여야 하며, 이때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수출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운임(EXW Charge)과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Ocean Freight)·보험료 및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98

변경된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



판매자의 사정으로 구매자가 주문한 제품보다 더 고사양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은 처음 주문한 제품가격으로 판매하기로 수입 전에 약정한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한 제품이 아닌 고사양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주면서 기존 주문한 제품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 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이 수입신고 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변경된 거래가격(고사양 제품에 대해 실제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해외에서 소량의 물건 몇개를 100%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무료로 구매한 경우 수입신고 시 물건가격을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



-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그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판매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를 화폐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인트, 적립금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작사측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 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은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세관장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검사비용(7,000c.u.)을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10%(5,000c.u.)의 가격 할인을 받은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다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건 또는 사정의 가치(7,000c.u.)는 실제 지급가격의 일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고구마를 튀긴 제품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튀긴 고구마”라면 제2008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담배잎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401.10호에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이 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잎담배라면 제2401.1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종(種) 확인]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숯을 집을 때 사용하는 집게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지깥이·불집게·갈퀴와 스토브(stove)나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하신 물품이 제8205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제 8205.51호(그 밖의 수공구_가정용공구)로 분류될 것이나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비누로 만든 꽃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됩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비누 꽃이 비누성분만으로 꽃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라면 제3401호의 비누에 분류되고, 비누성분과 플라스틱 등 기타 다른 재료를 조합하여 인조 꽃으로 완성된 물품이라면 제6702호의 인조 꽃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딸기 탕후루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분류 딸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9)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한다)[예: 마롱글라세(marrons glaces)나 생강](포장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관련법령

- 기타



파티용 풍선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그 밖의 완구”가 분류되고, 제9503.00-3911호에는 “풍선”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 “HAPPY BIRTHDAY” 글자 풍선과 꽃 모양의 풍선 등 파티에 사용되는 풍선은 제95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품목분류는 물품의 구성성분 및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형태, 용도, 포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스노우볼메이커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눈(snow) 놀이 시 앞쪽 Ball 모양에 눈을 넣어 뭉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집게모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HSK 제9503.00-3919호로 분류한 사례는 있으나, 눈(snow)을 넣어 뭉칠 수 있는 제품이라 하여 모두 상기 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개별 제품의 사양, 구성요소, 작동원리 및 기능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재질·사양·작동원리·기능 및 용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나,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보가 없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 분류가 어렵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정확한 품목번호를 제공하고자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2. 감면



1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나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여부



- 관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HS code가 제85류 또는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감 가능)
-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만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함)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격 + 가공 또는 수리비 + 왕복운임·보험료) ×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2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물품의 재수출 시기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대상 및 재수출 시기



[재수출면세 대상]

■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50조)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포장용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 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 ②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제외)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주문수입을 위한 물품, 시험용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의 범위(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 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본으로 사용될 물품
 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본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제작용 견본: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본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모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카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함)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함)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팔레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
 - 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재수출 시기]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연장 가능)에서 다시 수출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수출면세 기간(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 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자,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3

관세감면 신청시기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4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면세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은?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물품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면세가 가능(단,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다만,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정정하는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대상 금액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동 사유로 수입 신고 취하 후 다시 '목록통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5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우리나라 주재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외교관물품에 대해 면세 신청 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 외교관 물품 등의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외교사절담당관)에서 발행한 면세통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3년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으며,

-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양수제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 포함)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업총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6

서울불균형물품 면세요건 및 신청 절차



서울불균형물품 면세요건 및 신청절차



■ 관세법 제89조에 따른 서울불균형물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서울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불균형면세 대상 물품(관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면 적용대상(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것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정)

※ 감면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1의2]의 물품
2. 시약 및 견본품
3.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8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



■ 관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 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공의료기관(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5호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9

장애인용품 면세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련기,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차량 등 장애인이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 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은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①장애인 보조기기 및 그 수리용 부분품, ②장애인 보조견, ③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의료기기, ④장애인용 특수차량, ⑤특수의료용도 식품, ⑥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이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규칙[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로 분류되고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

■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는 수입 주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일반 수입업체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0

군부대와 계약체결 후 수입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군부대와 계약체결 후 수입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관세면제 여부



- 관세법 제92조제2호에 따라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통상품 제외)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와 정부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군수품 확인서, 위탁수입 물품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위탁'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화주가 정부인 군수품을 정부가 정부외의 자에게 대행시켜 수입하는 경우(수입절차의 대행)을 의미함에 따라 정부와 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1

업체가 수입하는 견본품이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체가 수입하는 견본품이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세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소액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답)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하며,

- 천공·절단 및 견본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이 사용목적(반입사유), 반입수량, 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본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2

우리나라에서 테스트 후 재수출하는 경우(재수출면세)



시험용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테스트 후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주문 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로 수입 된 후 1년의 범위(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내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본품 제작 포함)만 해당 되며, 해당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3

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하는 경우(재수출면세)



우리나라에 제품 전시 목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감면 여부



-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전시회’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면신청 시 전시회 팸플렛, 부스 배정서 등 전시회 참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4

재수출감면세



외국에서 물품을 임대해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수출할 경우 관세 감면 여부



■ 관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부득이한 경우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 감면물품 관세 경감율(관세법 제98조제1항)

1. 재수출기간 6개월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85%
2. 재수출기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70%
3. 재수출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55%
4. 재수출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40%
5. 재수출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30%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5

재수입면세 요건 및 대상



재수입면세 요건 및 대상



■ 관세법 제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 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신청시 해당 물품이 수출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재수출 조건부 면세물품의 재수출 불이행, 용도외 사용 및 양도



[재수출 불이행]

-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당초 면제받은 관세와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단,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및 양도]

- 관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용도외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도 외로 사용한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당초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 ※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7

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 수출이행 불가 시 여타 감면 조정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적용 받았으나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관세법 상 다른 감면조항으로 면세적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세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자나 당해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때에 한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다른 감면조항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다른 감면조항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용도외 사용물품의 관세감면 신청 등)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법 제103조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8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더라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19

하자있는 수출물품 국내로 반입 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수출물품에 대해 사용 전 결함이 발견되어 재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하였으나, 수출국에서 사용 전 문제가 지속되어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임을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수출하였던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재수입하여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임에도 사용 전 발견된 결함이 지속되어 반품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감면 여부는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여 세관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20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21

국내 수리목적 수입물품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국내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 국내수리를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수출되고, 수리를 위해 수입한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인 경우,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을 당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적용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

22

아동복지단체 기증 목적 수입물품 따른 관세 면제 여부



아동복지단체 기증을 목적으로 완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1조 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여부



■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수증자의 명의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증 사실 및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시설(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관세면제 신청시 제출서류(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3항)

1. 기증사실 증명 서류
2.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



관련법령

- 관세법 제91조제2호(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물품 등의 면세)

3.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병행수입의 개념과 허용기준은 무엇인지요.



-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3

지식재산권 신고 절차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 지식재산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별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홈페이지(<http://www.e-tipa.org>)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문의사항은 02-544-5203으로 연락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4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방법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나,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 지식재산권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 침해가능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5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신고자 및 지식재산권자에게 동 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담보로 제공하고를 당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관보류의 기간은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토요일 및 공휴일등 제외)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지 못한 때에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담보제공시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의 배상에 사용해도 좋다는 뜻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1.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7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관세청장은 다음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8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상품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 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 참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등을 통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9

상표권 등록 방법 및 절차



통관단계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으로 특허청에서 등록된 상표이어야,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상표권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한 증명서류를 무역관련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제출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5.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6. 지식재산권 고시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7.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상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전부 상표권침해인가요?



■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법령

11

위조상품이 무엇인지, 처벌은?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12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통보시 대응 방법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조치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 의심 → 지식재산권 확인 →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지식재산권자/수입자) → 지식재산권자 침해여부 회신/수입자 소명 → 침해시 통관보류 및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에 대해 수입화주가 업체인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이선스 계약 등)를 요청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구매 가격자료, 기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1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보류



제가 수입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진정상품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통관이 되나요?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임을 입증하면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 상표권 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1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반송, 신고취하 안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 반송 없이 전부 폐기 대상인가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등이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 이거나, 침해물품인 경우에는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해당 침해부분을 제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송 또는 신고취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부서에서 조사중인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통지받았습니다. 수출입통관을 할 수는 없나요?



- 관세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5조제5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239조제2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통관 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1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관세법 제235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명, 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요청사유
-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4. 수출통관



1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이란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자율정정”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고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율정정”은 별표10 자율정정 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가능합니다.
 - ※ 자율정정 제외대상 :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자상호,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항(신고사항의 정정)

2

수출화물의 선적정보 조회 방법



수출(반송)신고 현황과 수출(반송)신고 화물의 선적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수출(반송)신고 현황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 후 우측화면 화물진행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B/L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출(반송)신고 화물의 선적정보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http://unipass.customs.go.kr>)로 접속 후 상단의 정보조회 → 통관 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에서 해당 수출(반송)신고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51조 제1항(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3

폐업한 회사 수출신고필증 재발급 가능한지?



폐업한 회사도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법 제32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4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일과 관계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가입 시 등록하셨던 사업자의 사용 가능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영문 수출신고필증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신고필증의 재교부)

4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과 절차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이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신고의 취하 및 각하)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

5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직접 휴대반출 가능한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직접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할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휴대택송물품의 적재 관리)

6

영문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



영문수출통관필증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영문수출통관증명서)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 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교부신청 시 관세법 제322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4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출신고인 또는 수출화주는 아래와 같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영문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경로 : UNI-PASS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출신고필증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 제6항(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6항(수출신고필증의 교부)



계약상이 수출은 무엇이고, 이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이하 '계약상이 수출 물품')이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제2호 다목에 따라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또는 반송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계약상이 수출 시 수출신고서 ⑩거래구분은 93으로 신고해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
-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8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 절차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 절차는?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을 연장하시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3항에 따라 당초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9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방법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가 뭔가요?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란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 수출하려는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로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물품이 아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을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거래구분 '15')로 신고하거나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수출물품
 - ②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수출물품
- 참고로, 간이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출신고서의 57개 항목 중 구매자부호 등 최대 30개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0

수출신고 대상 세관



수출신고는 어느 세관에,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서 별도로 정한 현지수출 어패류신고와 원양 수산물 신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

11

수출신고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



수출신고자료의 보관기간 및 관리 방법은?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한 자는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5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신고자료의 보관)

12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 절차



중고 자동차 수출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물품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중고자동차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 및 통합공고 제121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자동차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수출신고 할 때는 신고 세관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일반적 무역서류와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중고자동차를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의 보세 구역 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 부호를 부여받은 곳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⑧신고구분을 B(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로 신고해야 하며, 컨테이너번호가 표시된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 및 현품 차대번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말소등록)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 통합공고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13

수출신고 사항 정정 시 필요한 서류



수출신고 정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수출신고 정정이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고시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신고사항의 정정)

14

원상태 수출신고



원상태 수출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했는데, 거래구분 정정이 가능 한가요?



- 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상태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원상태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은 72, 제조자는 미상,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거래구분 정정은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5호(신고사항의 정정)

15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출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아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입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에 필요한 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 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신고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16

반송신고의 취하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반송신고의 취하)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과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반송물품의 보세운송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품의 성질, 중량, 운송수단,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및 제3항(보세운송신고)



관세법상 반송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관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반송”을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반송은 적재화물목록,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가 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41조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면 해당 물품의 B/L 또는 AWB,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반송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B/L 또는 AWB) 별로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조 제3호(정의)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반송신고의 취하)

19

수출신고수리 후 선적기간 초과 시 조치



수출신고 하였는데 적재기간 내에 수출물품 적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세관장은 관세법 제2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또는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적재기간 내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법 제277조 제6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1조 제2항(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2호(과태료)
-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 제1항(수출신고수리의 취소)

20

반송이 가능한 경우와 배제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반송을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반송이 제한되나요?



- 반송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되는 등의 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등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은 반송신고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또는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물품,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 중 신고가 취하되지 않은 물품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적용범위)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반송심사)

21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신고



판매 수량이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위탁판매 수출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HS)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물품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위탁판매물품이라면 수출신고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22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용품의 수출통관



해외에서 유학중인 가족이 사용할 생활물품을 보내주고 싶은데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을 제외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함으로써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제2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목록통관)

23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는 무엇이고, 대상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란 관세법(이하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과 별표 11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①중고자동차, ②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③생활폐기물 등 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3조 제4항(신고의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3항(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24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분할 적재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운송수단에 분할하여 적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에 의거하여 수출자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1조 제1항(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수출물품의 분할 적재)



물품 수출 시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26

해외 구매물품 반품 절차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반품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반품 및 환급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경로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_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적재확인을 받지 않고 해외로 휴대반출된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사후 적재확인이 가능한가요?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대조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 적재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 및 제2항(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28

수출신고필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수출신고필증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의 진위 여부는 수출신고필증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http:// unipass. customs.go.kr](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UNI-PASS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신고필증 검증

- 수출신고필증 검증'은 수출신고사항의 ②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번호, ⑦품명, ③순중량, ④원산지 및 수출신고필증 하단의 발행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5. 여행자휴대품



1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



모든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반가족이 있거나 단체 수학 여행 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3.5.1일부터)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②항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항

2

세관공무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



세관공무원이 나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나요?



-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의 집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이 있으므로 휴대품 검사시 여권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관세법 제276조 ④항 6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은 입항보고 및 승객예약자료를 통하여 여행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승선지 및 상륙지, 주소, 전화번호, 좌석번호, 동반 탑승자 등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객기 입항시 기장은 세관에 '입항보고' 하여야 하고, 세관이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요청시 항공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 관세법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3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데 또 세금을 내라니요?



-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서 해외 현지에서 상대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재반입시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그러므로 여행상대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해당국에 입국시 예치(보관)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시 국내로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4

관세 등의 사후납부 허용



자진신고를 안하면 사후납부가 왜 안 되나요?



- 여행자 휴대품은 부과고지 대상이며, 수입물품을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없이 납세고지(=사후납부 부과고지)와 동시에 검사현장에서의 물품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관세의 사전(현장)납부는 제재가 아니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사후 납부 허용은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예외적 혜택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①항 6호, 시행규칙 제9조 1호
-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②항 2호 및 ③항

5

밀수입물품의 몰수 규정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하는데도 물건까지 몰수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우리나라 관세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신고의 확보 필요성은 절대적인 반면, 이욕(利慾)범이자 재정범인 밀수입 사범에게 가해지는 몰수·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 외에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밀수입품의 몰수를 규정한 관세법 조항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법령

- 2010. 7. 29.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바 145)

6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 289조에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3자에게 제공 등을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2011년 제정한 법률로서, 종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법률임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 범위와 통관 절차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기본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면세범위 이내의 농림축수산물을 반입하더라도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농림축수산물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참기름	5kg	잣	1kg
참깨	5kg	쇠고기	10kg
꿀	5kg	돼지고기	10KG
고사리, 더덕	5kg	그 외	품목당 5kg

2. 한약재

품목(예시)	면세통관범위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품목당 3kg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 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0조

8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가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한 물품을 국내로 휴대하여 반입할 때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향수,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 고
기본 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 상용물품, 수리용품·건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 면세	술	2병	■ 합산 2ℓ 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단, 한 종류만)
	향수	100ml	■ 용량제한만 있음(수량무관)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9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 여행자가 출국시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
-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3조

10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및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4.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 국한·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10.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

11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세금은?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여행자휴대품으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해외취득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통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전체해외취득물품의 가격 - US\$800) ×간이세율(품목별 세율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5%)
- 참고로 간이세율이 15% 이상인 물품은 녹용(21%), 모피제품(19%), 의류(18%), 신발류(18%), 귀금속류, 고급시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12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총포·도검류 등 신고



외국에서 총포·도검류 등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모의총포 등은 당해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동 물품을 가져오시다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13

외화반입 한도 및 절차



해외에서 외화를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 수수료나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 여행자가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US\$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6-2조, 제6-3조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1장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2년이내 자진신고 불이행이 2회 이상인 경우 60%)로 부과되며,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등이 제한됩니다.
 -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6조, 제241조

15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해외에서 제가 입을 의류를 구입하여 오려고 합니다. 미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메인화면 주요서비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나 '모바일 세관신고' 앱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선물용으로 사오는 건강식품은 반입에 제한이 없나요?



- 여행자 본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는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17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납부 방법



미국여행 중 예물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약 일주일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예물시계에 대하여 한국 입국 시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은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자로서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을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하며, 미리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최초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0장

18

유치된 여행자휴대품 반출 절차



부산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유치 되었는데 출국할 때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 반송, 기내 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은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B/L반송이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7장

19

주류에 대한 세율



주류 면세 및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의 면세범위는 여행자 1명당 합계 용량이 2ℓ 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2병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 여행자가 입국 시 반입하는 술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0

제주도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담배 수량 한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구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껍련 200개비, 엽껍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니코틴함량 1%이하) 20ml 이하 등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면세 처리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담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의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 고
• 껍련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도로 면세 •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 한 종류만 해당
• 엽껍련	• 50개비	
• 전자담배	• 껍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ml • 기타 유형 110g	
• 그 밖의 담배	• 250g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1

대리반입 처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탈세 등을 위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이며, 반입자뿐만 아니라 이를 부탁한 소유자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 대리반입은 우범여행자 등이 밀수입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세관에서는 통관질서 확보 및 밀수입 수단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69조

22

국내면세품 구매물품 교환·환불 절차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 시 국내 면세점(또는 기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과세통관을 한 후 구매처로 직접 교환,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됩니다.

- 교환 및 반품 가능 기간, 절차 등은 구매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23

식품 휴대반입 시 유의사항



해외 구매 식품 국내 휴대 반입시 유의사항



■ 여행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구입·선물 포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로서,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가격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대상으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과일, 채소, 소시지 등과 같이 검역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면세 범위와 상관없이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될 만한 중 수량의 식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6조



여행자의 짝퉁물품도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더라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공항에서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내야 하나요?



-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가 부과되나, 2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대리반입을 지시한 행위자 및 대리반입자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69조

26

외국인도 사후납부 가능한지요?



저는 외국인이고 휴대품 통관 시 세금을 사후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에 납부 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대상입니다.(체납자, 우범 여행자, 만19세미만인자,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 그러므로 외국인은 세금의 사후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8조

27

휴대물품 반출신고 절차



출국할 때 가지고 갔던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입국할 때 면세 받고 싶습니다.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8장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

29

휴대품 신고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 여행자 휴대품 신고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인터넷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 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심사대'나 세관검사대에 설치된 'QR리더기'에 인식하면 세관신고가 완료됩니다.
-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는 전자신고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5조



향수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ml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 수량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은 무엇인가요?



-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제도는 우리나라를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사용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세제도’입니다.
- 대상자 및 허용범위는 외국거주자 중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는 자이거나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근무자 등 1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으로 한정(회사용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한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면세기간은 1년 이내 최초 출국일까지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반출기한 연장은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 입국시부터 최초 출국시까지 최장 2년간 면세가 가능합니다.
- 여행자는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허용일 이후 최초 출국하는 날에 일시반입한 물품과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가지고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합니다.
- 타인이 아닌 면세받은 여행자가 출국 시 반출확인을 직접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재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 조건부 면세받은 세액 전액과 미반출에 대한 가산세 20%를 부과하여 추징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60조~제63조

(별지 제9호서식)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Confirmation on Temporary Import of Goods under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직업 (Occupation)	
여권번호(Passport No.)	국적(Nationality)	기(선)명(FLT NO)	자진신고 ☐ 유, ☐ 무
한국내주소(Address in Korea)		전화번호(TEL) ()	여행기간(Length of stay) 일(days)
입국일자 (Arrival Date) 20 . . .	최초 출국(예정)일 (First Departure date) 20 . . .	여행 목적 ☐ 관광(Tour) ☐ 사업(Business) ☐ 공무(Official), ☐ 기타(Other)	

품명 Item	전산부호 No	수량 Quantity	중량 Weight	규격 Description	가격 Price

본인은 상기물품에 대해 아래의 수출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면세신청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재수출조건"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I hereby request a duty-free importation of the above listed goods on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see below)

신청자 서명
Declarant signature

세 관 장 귀 하(For Customs Use Only)

검사자 소속	직원 번호	성명	서명	전산입력확인

[재 수 출 조 건]

- 본 확인서는 최초 출국시에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재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물품의 수출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최초 출국일까지입니다.**
만일, 미반출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과 가산세(관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미수출시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최초 출국할때 미반출한 경우에는 총 세액과 가산세(관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준비하여 출국 2시간전에 담보를 예약하거나 본 물품을 우리세관에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로 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곤란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망됩니다.
- 담보금을 예약한 경우에는 재수출 기간내에 출국시 세관직원의 재반출확인을 받은 후 담보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재수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관 여행자휴대품 통관부서 ○○○(☎)에게 문의바랍니다.

[THE CONDITION OF RE-EXPORTATION]

- You must receive a confirmation of re-exportation by presenting this document to a customs officer at the first time of your departure.
- Duty-free status of goods declared under this document is vali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your arrival or until the date of your first departure whichever comes first. If the goods are not re-exported within that period, you will be required to pay the total amount of duties and the additional duties(equal to 120% of the customs duties due.)
- If special circumstance prevent re-exportation of the goods on your first departure, you must apply for an extension or a deposit of security at least 2 hours before departure by depositing a security equal in value to the total amount of duties and the additional duties(equal to 120% of the customs duties due.)
※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guidelines may cause delays to your flight, therefore, we recommend that you take all proper precautions in advance.
- Upon re-entry into Korea, those who have provided security should file an 'Application for Refund of Security',before the extended period expires to receive applicable refunds.
- If special circumstances prevent your departure within a year of the arrival, you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re-exportation period of up to a year.

*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the Customs at Baggage Clearance Section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통관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과세통관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지방세는 국세와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담배 종류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 ▶ 결련 200개비, 엽결련 50개비
- ▶ 전자담배 : 결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1%미만) 20ml, 기타유형 110g
- ▶ 그밖의 담배 250g
- ※ 1종류만 면세 가능, 기본면세범위와 별도 면세,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

-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하며, 담배 종류에 따른 세종 및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종류	종가세(%)		과세 단위	총량세(원)		
		관세	부가 세		국세 개별 소비세	지방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피 우 는 담 배	결련(필터담배)	40	10	20개비당	594	1,007	443
	파이프담배			1g당	21	36	16
	엽결련(시가)			1g당	61	103	45
	각련			1g당	21	36	16
	전자 담배	액상	8	용액 1ml당	370	628	276
		결련형	40	20개비당	529	897	395
		기타형	40	1g	51	88	39
	물담배	40		1g당	422	715	315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215	364	160
	냄새맡는 담배(코담배)			1g당	15	26	11

-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39(43.99%) 「지방세법 제151조」
- ▶ 부가가치세의 면세 :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이 하의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특수용 담배인 경우 면세, 그 외는 모두 과세대상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33

흙의 휴대반입 가능 여부



외국에서 흙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흙은 「식물방역법」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품목이므로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흙이란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로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병해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흙은 HS부호 2530.90-9099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관장 확인대상(식물방역법)입니다.

흙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 유기물이 혼입되어 있지 않는 모래, 자갈
 - ▶ 바다에서 채취된 모래, 자갈
 - ▶ 피트모스, 코코피트(코코넛 허스크), 이끼 등 → 흙으로는 보지 아니하나 식물방역법 대상 물품임
- ※ 피트모스(Peat Moss) : 늪지 식물이 습지의 바닥에 퇴적되어 부식한 것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용액”의 수입이 가능한지?



- 전자담배용 용액(무니코틴)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첨부파일)에 의거 세관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 수입신고한 후 통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5조). 이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용액(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해당물품을 관련부처인 유역(지방)환경청(☎ 1577-8866) 확인 받으신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



출국장에서 텍스리펀드(내국세 환급업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내국세 환급업무는 전자환급을 기본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면세사업장의 경우 판매확인서에 스탬프 날인으로 반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심사사항 : 현품과의 일치여부 심사
 - 여행자로부터 여권, 탑승권,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현품과의 일치여부 확인 (전산/수작업)
 - 물건을 우편 등으로 따로 송부한 경우 우편소포증이나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반출확인 같음(특례규정 제9조)
 - 내국세 환급불가 사유
 - 구매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물품 (특례규정 제6조 ④항)
 - 국내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환급 비대상
 - 간이영수증 또는 카드전표만 제시하는 물품 ⇨ "(Tax) Refund" 등이 표기된 텍스리펀드 영수증만 가능
 - 1회 거래가액 **3만원 미만** 물품(한도제한 없음), 문화재, 중독성·습관성의약품, 총포·도검 및 화약류,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등은 환급 비대상 (특례규정 제3조,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 ※ 환급대상 내국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 주세 등은 환급불가
- **내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36

인천공항 은행 등 유관기관의 업무시간



인천공항 은행 등 유관기관의 업무시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여행자 휴대품 관련 유관기관 영업시간 · 위치 · 연락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종합안내 1577-2600)



관련법령

● 제1여객터미널(T1)

금융기관	영업시간	세금수납	연락처	위치	비고
우리은행	09:00~16:00	O	743-1050	B1	연중무휴
신한은행	일반	09:00~16:00	743-5100	B1(교통센터)	토일 공휴일 제외
	환전	06:00~21:00			연중무휴
KEB하나은행	09:00~16:00	O	743-2220	B1	토일 공휴일 제외
입국장내 환전소(신한)	00:00~00:00	O	743-5127	1층 입국장내(B구역)	연중무휴
입국장내 환전소(우리)	00:00~00:00	O	743-1054	1층 입국장내(C구역)	연중무휴
1층 환전소(KEB하나)	06:00~마지막비행	O	743-2232	1층 입국장내	연중무휴
3층 환전소(KEB하나)	06:00~22:00	X	743-2251	3층 출국장내	연중무휴
우체국	세금수납	09:00~16:30	740-2900	2층 중앙	토일 공휴일 제외
	택배	09:00~18:00			

유관기관·업체			업무시간	연락처	위치	비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9:00~18:00	740-2921	3층 7.8번 안쪽 (G체크인카운터부근)	연중무휴
인천공항경찰단	외사계			745-5608	2층 서편	
	유실물관리소		07:00~22:00	741-3114	B1	연중무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식물검역		00:00~00:00	740-2079	1층 입국장내(B구역)	연중무휴
	동물검역		00:00~00:00	740-2671		연중무휴
	통합민원		09:00~18:00	740-207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수산물검역		00:00~00:00	740-2981		연중무휴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9:00~18:00	455-2347	인천 남동구	토일 공휴일 제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		09:00~18:00	02)3272-4102	서울 마포구	토일 공휴일 제외
항공사(미검화물)	대한항공	일반	06:30~21:30	742-5193	2층 2145호	연중무휴
		현장	00:00~00:00	742-5183	4번 캐로셀	
	아시아나	일반	09:00~17:00	744-2205~8	2층 2100A호	연중무휴
		현장	00:00~00:00	744-2262,3	18번 캐로셀	연중무휴
보세판매장	신라	대표	07:00~21:30	743-4463	3층 출국장내	연중무휴
		루이비통	07:00~21:30	743-4496,7		
	롯데	대표	07:00~21:30	743-7779		
		주류	00:00~00:00	743-7947		
	관광공사	대표	07:00~21:30	743-2000		
		샤넬	07:00~21:30	743-2124,21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유치창고		00:00~00:00	740-4132~3	B1 여행지통관1과내	연중무휴
	체화창고		09:00~18:00	740-4135	B1 서편	토일 공휴일 제외
	예치창고		00:00~00:00	740-4137	입국장내	연중무휴
	반송대		00:00~00:00	740-4146	3층 27-28게이트	연중무휴
보세운송	협동통운		09:00~18:00	744-8580	화물터미널 B동	연중무휴
보안검색	항공보안상황실		00:00~00:00	741-4736	1층 귀빈실 옆	연중무휴
관세사	탐관세사무소		09:00~18:00	인터넷 조회	B1 여행지통관1과내	공휴일/야간: 비상주(예약필)
	이오스관세사무소		09:00~18:00			
그린캡 (Green Cap) : 통역			00:00~00:00	722-4527	입국장 동편	연중무휴

● 제2여객터미널(T2)

금융기관		영업시간	세금수납	연락처	위치	비고
우리은행		09:00~14:00	O	743-2050	B1 동편	토일 공휴일 제외
신한은행	일반	09:30~15:30	O	226-5100	B1 서편	연중무휴
	환전	06:30~21:30	O	743-5100	3층 A 카운터 맞은편	연중무휴
KEB하나은행		09:00~16:00	O	875-1111	B1 동편	토일 공휴일 제외
입국장內 환전소(우리)		06:00~22:00	O	743-2050	1층 입국장內(A구역)	연중무휴
1층 환전소(KEB하나)		07:00~21:00	O	875-1111	1층 2번 출구	연중무휴
3층 환전소(KEB하나)		07:00~21:00	X	875-1111	3층 H카운터 부근	연중무휴
한진택배		07:00~21:30	X	743-5835	3층 H카운터 맞은편	연중무휴

유관기관·업체			업무시간	연락처	위치	비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09:00~18:00	743-2923		연중무휴
인천공항경찰단			07:00~22:0	745-5561		연중무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식물검역		00:00~00:00	740-2020	1층 입국장內(B구역)	연중무휴
	동물검역		0:00~00:00	740-2021		연중무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수산물검역		00:00~00:00	740-2975		연중무휴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09:00~18:00	455-2347	인천 남동구	토일 공휴일 제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총포검사팀		09:00~18:00	02)3272-4102	서울 마포구	토일 공휴일 제외
항공사(미검화물)	대한항공(입국장)		00:00~00:00	742-5183	1층 입국장內	연중무휴
	KLM네덜란드항공		00:00~00:00	744-4900~1		
	에어프랑스항공					
	델타항공		00:00~00:00	744-6037		
	에어로플로트		00:00~00:00	744-8672~3		
보세판매장	신라	대표	00:00~24:00	032-743-1700	3층 출국장內	연중무휴
	롯데	대표	00:00~24:00	032-743-7460		
	신세계	샤넬	06:00~21:30	080-200-2700		
		구찌	06:00~21:30	1577-037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유치창고		00:00~00:00	740-4255	B1 여행사통관2과內	연중무휴
	체화창고		09:00~18:00		B1 서편	토일 공휴일 제외
	예치창고		00:00~00:00	740-4258	입국장內	연중무휴
	반송대		00:00~00:00	740-4256	3층 G249 맞은편	연중무휴
그린캡 (Green Cap) : 통역			00:00~00:00		입국장 동편	연중무휴

37

간이통관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입국장에서 간이통관 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수입세금계산서는 회사물품 통관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기본세율로 통관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물품의 현장 통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율 적용 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발급 불가**



관련법령

- 수입세금계산서 [tax invoice on import] 부가가치세법 제35조 ①항



COB화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COB 화물은 쿠리어 개인 휴대품 검사 후 여행자통관과 内の COB장치
장으로 반입하여 검사 후 면세통관하거나 유치하여 정식 수입통관합니다.

※ COB란 Courier On Board의 약자로 쿠리어(Courier:운반원)가 직접
항공기에 탑승(On Board)하여 화물을 휴대/기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하
는 방법을 말한다. COB 화물은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
에 한하며, COB 업체 및 쿠리어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 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 및 면세점 반품 배제, 40%의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며 밀수입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기본면세범위(\$800)는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세금 사후납부 불허

수입물품은 세금납부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휴대품을 신고한 국내거주 내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후납부가 허용(단,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19세 미만자는 제외)되므로, 신고불이행시에는 사후납부가 불허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예관한고시 제58조

◆ 면세점 반품 불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국내면세점 구매후 재반입물품 포함) 중 면세범위 초과분은 세관에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면세점 구매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시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해야 하므로, 신고불이행시 면세점 반품은 불가함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예관한고시 제6조 / 보세판매장운영예관한고시 제19조

◆ 미신고 가산세 부과

여행자 및 승무원이 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내국세)의 100분의 40(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 관세법 제241조 제5항 제1호,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예관한고시 제6조

◆ 밀수입죄로 처벌

단순 신고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통고처분, 조사의뢰)

⇒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0조, 제274조, 제311조 등

◆ FTA 협정세율 적용 배제

협정세율은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심사 후 적용가능한 것으로서, 휴대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시 세관신고 사항 2란(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물품)에 체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협정세율 적용신청에 갈음하나, 신고불이행의 경우 이러한 신청이 없으므로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⑤항 1호 및 시행령 제247조 ④항

40

유치물품의 공매(매각 처분) 근거규정



유치된 여행자휴대품은 무슨 근거로 공매(매각처분)를 하나요?



-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써 관세법 제208조에 의거 공매할 수 있습니다. 매각처분을 위해서는 반출통고가 필요하나, 유치물품의 경우 휴대품 유치시 교부하는 유치증 하단의 반출통고 문안과 안내로 같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6. 특송물품



1

해외직구 화장품과 향수에 대한 면세범위



개인이 해외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화장품과 향수의 반입가능
수량과 목록통관가능 여부, 면세범위 등을 알려주세요.



- 화장품은 수량과 관련한 별도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나, 세관직원이 수입된 내역 등을 심사하여 자가 사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됩니다.
-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 만일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되며, 이때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신고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제67조[별표11]

2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세액



미국의 쇼핑 사이트에서 한화 약 300만원 정도 되는 고급 핸드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 고급 핸드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고급 핸드백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 각각의 세액을 계산해보면, 물품가격+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이라고 한다면, 관세=과세가격×8%, 개별소비세=(관세 과세가격+관세-200만원)×20%, 교육세=개별소비세×30%,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3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



특송물품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별표11]

4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 절차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는?



■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5

축산물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통관 절차



축산물 수입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무엇입니까?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축산물의 종류
 - 식육(소고기 등), 포장육, 식용란
 - 원유(우유 등)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양념고기 등)
 - 유가공품(판매용우유, 분유 등)
 - 알가공품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지정된 동물 및 동물생산물은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통합공고 제63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농림부고시로서 수입금지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동·축산물 검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Tel : 054-912-1000)로 문의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6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은 통관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1]은 수출물품, [별표2]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구비 요건 및 대상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내용 확인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 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등 34개 기관 70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통관 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관단일창구 이용방법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7

특송물품의 통관진행상황 확인 방법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특송〉

■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및 구매사이트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기재된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 HBL번호)를 확인 후
 -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우편〉

■ 국제우편물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편물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 (우편)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제가 받기로한 물건이 다른 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실제 배송 위치도 확인할 수 있나요?



〈특송〉

- 세관에서는 통관완료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이후의 배송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해당 물품을 배송했던 특송업체 혹은 국내 최종수령지로 물품을 배송한 택배 배송업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 인터넷 >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 > EMS국제우편 > 인터넷 행방조회 > 우편물번호 13자리 입력
- 국제우편물 도착확인 · 보관 · 배달 · 반송 · 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9

특송물품 통관지연 사유



수입물품 통관 지연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10

통관 대행업체(관세사) 연락처



내 물품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통관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 관세청 홈페이지 아래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인터넷 > 관세청(<http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로그인 > 신고(제출)번호 클릭
 - ① (목록통관) 특송업체 정보조회
 - ② (수입신고) 관세사 정보 확인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11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 변경 방법



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12

수입신고정정 방법



제가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과 관련하여 금액, 수량, 가격, 품목분류 등 신고가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의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13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 변경 방법



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14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 제공



해외직구 시 통관대행업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나요?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의 송·수하인 내용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작성시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통관대행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15

환불을 위해 통관대행업체에 통장사본 제공해도 되나요?



통관대행업체에서 해외직구물품 환불을 위해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류: 해당물품 구매내역 또는 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반송 운송장 또는 반품확인서 등
- 반송확인서류: B/L, 반품운송장 등
- 환불증빙자료: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 영수증 등
- 관세환급신청서류: 환급신청서, 환급금 수령할 통장사본

■ 이때 환급금을 수령할 통장의 명의자가 수입신고상 수취인과 동일인인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위 신청서류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해외로 반송한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협의후 국내에서 물품을 폐기하고 환불만 받은 경우는 관세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16

통관보류 사유 및 처리 절차



구매한 물품의 통관보류 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관보류 사유는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량 폭증으로 인하여 세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송통관개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관련법령

17

통관보류 물품 처리 절차



목록통관이 배제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특송통관 정보 조회) ① 관세청(<https://customs.go.kr>) 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②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메인 화면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배너 클릭> 로그인 후 통관 내역 조회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18

통관 시 개인정보 누락으로 인한 통관보류



해외직구 물품이 통관정보 누락 또는 불일치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특송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품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내역 조화·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 관련 사항의 확인과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우편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자료를 전송하시어(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9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제가 주문한 물품이 수량과다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허용되는 수량기준이 있나요?



-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확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행정규칙 > 조회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20

판매처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 환불에 통관보류통지서



판매처에서 해외직구로 주문한 물품 환불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통관보류통지서는 화물의 상태가 "통관보류"일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담당 검사세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의 경우 통관보류 통보서 등 반송 관련 서류를 문서로 받기를 원하시면 제목에 통관번호 기재 후 minwon9@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고객님의 우편물 통관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21

세관통관 시 과세대상은 가격자료 제출



세관에서 제 물품에 대한 가격 증명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가격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보정신청)



중국 의약품, 건강식품(복방감초편 등)은 통관이 제한되나요?



-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 관리법」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국내 처방전에 의해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23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



해외에서 물품 수입시 구비해야 하는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에 관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수입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HSK 10단위를 알아야 합니다. HSK 10단위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의 품목분류 상담원에게 문의해 보실 수 있으며, 통관전문가인 관세사와도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결정사례가 없거나 난해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평가분류원 : 042-714-75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해외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인 경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각각 총 6병(6병을 초과하는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입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물품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내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피유래 성분이나 의약품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우선 수입하고자하는 물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하여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에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록통관대상 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혼재되어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신고구분)



특송·우편으로 외화를 보내거나 받으려고 합니다. 신고대상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 그러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 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특송)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 인터넷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조회서비스 > 고액 외화수표 사전 신고 > 사전신고하기
-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외국환 거래규정

27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과세가격은?



해외직구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나요?



- 면세한도 제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자휴대품과 달리 「관세법」 제94조에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세금은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해외직구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나요?



-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29

상용물품은 과세대상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판매용 물품은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등의 면세)
-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등의 증명 및 확인)



면세통관한 자가사용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 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판매하는 것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후 1년 이내 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외 판매가 불가

《붙임 325. 소액면세 물품 판매 가능여부 문의》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을 알려주세요.



■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②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물품가격'에는 구입 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32

구매하지 않은 물품 합산과세대상지정시 처리



구매하지 않은 물품과 제 물품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되어 물품가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통관 처리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판매자에게 있는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합산과세 금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물품에 대한 세관 담당자에게 수입신고 취하 확인 후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33

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34

알 수 없는 관세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유니패스에서 알 수 없는 관세가 조회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기존 해외직구 시 발생했던 관세가 체납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입신고가 적절히 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조회방법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관련법령

35

지식재산침해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제재는?



수입되는 물품이 가품인걸 알고 주문했는데, 관세청에서 가하는 제재가 있나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조사의뢰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36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 후 판매자로부터 환불 절차



수입 중 통관보류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폐기하고 판매자로부터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40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환불 :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소비자상담(1372)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60조(장치물품 폐기)



해외직구한 물품이 통관보류 되었는데, 폐기할 수 있나요?



■ 실무상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확인 후 반송 또는 폐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0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대상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 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물품가격증빙서류 등
 - 신청세관 : 직전연도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세관중에서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 * 특송물품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315), 항만통관 검사5과(032-452-3393),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25), 평택세관 특송통관과(031-8054-7105), 용당세관 통관지원과(051-793-7153)
 - * 우편물품의 경우 공항우편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28), 부산우편센터(055-783-7422)



관련법령

39

구매대행업자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주요 수입요건과 법령, 소관부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수입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은 수입품목에 따라 소관부처 및 관련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2)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6병(단 의약품의 경우 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나,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 됩니다.

※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임.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41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 통관 가능 수량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담배의 면세 기준은?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결련 200개비, 엽결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43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44

수입요건을 면제 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



우편물이나 특급택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사용 물품을 수령할 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 가능합니다.

* 특송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와 같이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금액과 수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조건을 구비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수입품목에 따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관련법령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



DHL, Fedex, UPS 등 특급택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이 되나요?



-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
 - 간이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 24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 다만, 물품가격이 2,000불 이하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46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



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목록통관하려고 하였으나 배제되었습니다. 일반 수입통관을 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을 하더라도 꼭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목록통관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송화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목록통관배제 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입통관의 경우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상기 소액면세제도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개별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또한 수입신고 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3조 제4항(신고의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3항(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 이하&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상기의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해외구매 사이트에서 각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로 여러건을 구매하였는데, 과세가 되었습니다. 150불 이하이면 면세가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세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시 몇 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1개(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노트북 1대 분량까지 요건구비 없이 일반수입 절차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노트북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어 일반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에 관해서는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해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하여 목록통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된 수입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 「화장품법」 제2조



여행을 위해 해외로 자동차를 반출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자동차를 재수입 조건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 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일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 자동차의 일시 수출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일시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
 - 자기 및 가족소유*의 자동차를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에 일시 수출하는 사람

* 가족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이 경우 일시 수출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일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일시 출국자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입 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일시 출국 시 교부받은 일시수출신고필증의 제출로 재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필요(관세 등 세금부과 가능)



관련법령

- 관세법 제99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1조~제24조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이 소액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에는 어떤 금액들이 포함되나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물품가격'은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는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입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북한제품을 해외직구할 경우 통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북한 관련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이거나 「남북교류 협력법」 제13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북한 관련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계기관(통일부 또는 국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통관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54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 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물품들은 몇 개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자가 사용물품은 통관지 세관장이 물품 수량, 구매가격, 최근 구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가사용물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약,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제세(관세 등)를 납부하신 후 통관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반입갯수 제한 사유 및 6병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 건강기능식품*을 반입 개수를 제한하는 사유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건강기능식품이 통관되어 상용으로 사용되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마약성분을 함유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성인 1일 복용량(3회/3정)

* 3개월분을 고려하여 '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유명상표의 제품을 해외직구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상표권과 관계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 중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그렇지 않은 상표가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진정상품은 누구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상표의 제품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신고된 상표의 병행수입 가능 품목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수입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 상표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35조



공동구매하는 물품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 「관세법」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불)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어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확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과 간이신고 배제 대상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공동구매'에 경우에는 해당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상기규정의 목록통관을 적용받지 못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물품의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하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분유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분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정식수입신고절차)가 진행됩니다.
 - 1회 5kg만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한꺼번에 의류와 식료품을 구매했을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의류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식료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그러나, 목록통관대상물품과 배제대상물품이 한번에 반입될 경우, 해당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 현 제도상 1개의 송장에 1개의 수입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방식 결정

- 이렇게 목록배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내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전자담배 용액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전자담배 용액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하(니코틴용액 20ml, 껍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00g)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만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주방용칼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제품확인을 위해 세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방용이 아닌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수입신고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임
-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함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됨(정식수입신고대상)
- 다만, 개인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통관가능하며,
 -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TV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다만, 스마트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65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요?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미포함되나,
-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과 보험료는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66

향수 목록통관 허용 수량



향수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 이내이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되는 경우 60ml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함

**관련법령**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



한국여행 중 사용하기 위해 개인승용차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자동차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에 시·도지사가 발급한 국가식별 기호표 및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일시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용승용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캠퍼 포함)·이동식업무차·이륜자동차
- 자동차의 일시 수입 신고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단,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관서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이 경우 세관장은 일시 수입차량의 재수출 기간을 일시수입신고 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서 일시 입국자의 사증 등에 따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여권의 관련 사실(사증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등) 기재란 사본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장이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7조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제9조



CBG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통관이 가능한가요



-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추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대마"에 해당되며, 마약관리법 해당물품은 마약류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마약류취급자)가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제품에 CBG가 함유된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차(茶) 면세통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물품이 개인 자가사용이고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에서 수입된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등 제세 납부없이 통관(목록통관)되나, 문의하신 차(茶)와 같은 식품류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 및 관세 등 제세 납부대상이 되고,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 경우5Kg, 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경우(수출국 불문) 관세 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 녹차가 3Kg을 초과하거나 「식물방역법」 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특송물품 환율에 따른 면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 관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 할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라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일반수입신고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할인가 적용시 목록으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되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액면세 적용 요청이 가능한가요?



- 귀하가 실제 구매하신 금액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해야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 경우 소액면세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사에서 세금부과대상으로 연락이 왔을때 소액면세적용 신청 필요)
- 다만,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구매금액과의 차액인 과다납부세액(관세, 부가세)은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귀하의 신고를 대리한 관세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특송물품의 면세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목록통관 운임, 보험료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해외배송료)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송국가 內 운임(예: 배송대행지 이용 시 배송대행지로까지의 해당국 內 내륙운임), 세금, 보험료 등은 포함이 됩니다.
- 추가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해외운임 등 포함)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해당국 內 운송료 등의 지불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 포함됨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목록통관 물품가격 기준은 200불 이나,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금액이 200불에서 150불로 변경되므로,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세액이 높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 소액면세제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과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물건)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달러 이하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미국 홈페이지에서 미국기념일 20% 할인을 받아 200불 이하로 결제한 경우 소액면세가 적용되는지요?



-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 즉,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의 실제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 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민원인께서 제출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76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지 않고 해외직구 가능한지?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데, 제가 주문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은 어떻게 통관되나요?



〈특송〉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편〉

- 정식수입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1,000불이내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간이통관대상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더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4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및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사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할 수 없나요?



■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 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각 본부세관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사본을 지참하여 세관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80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대상인가?



외국인, 해외거주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기간 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을 가지고 세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PC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가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82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또는 삭제 방법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지 또는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정지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화면에서 가능하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통관 관련 구체적인 진행 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통관대행업체정보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탭 > H B/L번호(운송장 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



관련법령

84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도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신고
 -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go.kr>) 하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관련법령

86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지?



판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묻지 않고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통관부호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나 기타 개인식별부호 제공없이 물품이 발송되었다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사용하거나 판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 자료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통관진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가 없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4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88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본인명의의 휴대폰번호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모두 없는데 PC나 모바일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발급가능하며, 인증수단이 없거나 발급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사본을 지참하여 세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해당없음



개명, 주소이전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연계된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변경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 수정 및 사용정지는 관세청 모바일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하지 못 하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가 받을 물건이 세울 오류를 사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신고인(=관세사)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신고한 세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신고 내용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세율로 정정신고하고 심사결과 정정한 세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이 서류제출 보완을 이유로 통관보류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등의 경우에 서류제출을 보완하여 담당 검사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제출하거나, 고객님의 담당 검사 세관의 수입화물 통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 >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 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7. 이사물품



1

이사물품 수입신고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누가, 어디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이사자(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이때 해당 이사물품이 도착한 세관(도착지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도착지 세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 인천세관
 - 용당세관
 - 대전세관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반적인 이사자와 달리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입국 후 외국 영주권 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2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3항

2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절차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이사물품 자동차 통관 후 등록 절차는 관세청(세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각종 인증대상 여부 및 관련 절차는 다음 내용 등을 참고해 해당 기관으로 반드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환경인증 :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032-590-5000 / www.mecar.or.kr)
- 신규검사 : 이사물품 자동차 등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www.ts2020.kr)
- 차량등록 :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
(거주지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 지방세 등 납부필요)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등

3

자동차의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납부할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관세법」상 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중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3.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 이사물품 자동차는 일반적인 이사물품과 달리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 시 면세가 가능합니다.

■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사물품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이 결정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주요서비스-예상세액 조회-이사화물 자동차)에서 예상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4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중 "단기체류자"의 기준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거주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단기체류자”는 이사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 포함)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본문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5

외국시민권자의 이사자 거주기간 확인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는 어떤 서류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려는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려는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취업입국 시) 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영구귀국 시) 등을 통해 그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6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이사자가 이사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사물품 수입신고 시 이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발급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우리나라 국민	재외 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비 고
이사물품반입내역서	○	○	○	○	관세청 홈페이지
여권사본	○	○	○	○	동반가족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 자치센터) 발급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증명서	○	○	○	○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재외국민주민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여권실효확인서		○			영구귀국 시 제출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인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	○	○	거주예정기간 확인 시 제출
선하증권(B/L)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포장명세서(P/L)	○	○	○	○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자동차등록증 -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등	○	○	○	○	자동차 통관 시 원본 제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	○	○	자동차 통관 시 제출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7

이사물품 수출신고 요령



이사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지고 이주할 예정인데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 하나요?



-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 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 물품의 HS세번별로 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 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 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로 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 제2항 및 별표 11에 따라 차량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8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은 무엇이며, 외국에서 사용하던 모든 물품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사용했더라도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제외), 선박·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필수과세대상)됩니다.
- 이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3개월 미만 사용 물품 등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수과세대상 물품은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제6조

8. 우편물통관



1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여부



외국 친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관세 납부 여부는?



-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뜻하며, 외국의 친지가 보내는 우편물품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 다만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일정금액(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2호(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2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의 종류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우편물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3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 기준은?



우편물의 소액면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기준은?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해외구매, 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 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 고시」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2호(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4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파손(분실) 되었을 경우 배상 절차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이 개장되어 있으며 내용물이 파손(또는 분실) 되어 배상받고자 할 경우는?



- 관세법 제2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0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우편물의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보관, 관리, 개·포장 및 배달은 우체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제우편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사항은 국제우편물류센터(032-745-9733) 또는 부산국제우체국(055-371-0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5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 절차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공항) 및 부산국제우체국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 과세대상 및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 통관안내서를 수취한 후 해당 통관우체국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처리가 되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 통관대행취급수수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국제우편물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간이통관 신청)

6

인터넷을 통한 국제우편물 통관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국제우편물의 통관신청 방법은?



■ 인터넷으로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격증빙자료 첨부가능)

-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unipass.customs.go.kr)
- ② 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 클릭
- ③ 휴대폰(실명)인증
- ④ 우편물번호 또는 통관번호 및 반입일자 입력 후 조회
- ⑤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 ⑥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



관련법령

7

우편물 소액면세 기준 자가사용물품 통관 기준



우편물 소액면세를 받기 위한 자가사용물품 통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2호(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8

특송업체 배달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특송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절차로 통관되나요?



-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해당 특송업체에서 수취인에게 물품도착 통보를 하며,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절차를 대행하여 배달합니다.
-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입하는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신청한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대상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배제물품 제외)



관련법령

9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방법



안내받은 우편물에 대하여 신청기간 내 간이통관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야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간이통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편물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 도착일로부터 15일(45일 연장 가능)이내이며 보관기간내 세관에 간이통관 신청이나 일반 수입신고 하지 않는 경우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해외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0

사업자 명의로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을 사업자 명의로 할 수는 없나요?



- 간이통관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선물은 5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 사업자 명의로는 불가하며, 사업자 명의로는 일반수입신고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1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방법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서작성방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customs.go.kr/incheon_airport) >> 관세행정 >> 우편물통관 >> 간이통관 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2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방법



간이통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HS코드, 화폐단위, 통관번호 기입 등)



■ 신청서작성방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 (customs.go.kr/incheon_airport) >> 관세행정 >> 우편물통관 >> 간이통관 신청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3

선물에 대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 방법



수입되는 물품이 선물이란 내용, 금액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해당 우편물을 보내신 분께 가격을 확인하여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편물 통관담당직원이 현품상태 및 국내외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 참조하는 등의 심사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14

간이통관 신청 후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지?



간이통관 신청 후 우편(등기)으로 신청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접수가 잘 된건가요?



- 등기우편물 수취인에게는 자동적으로 간이통관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간이통관 신청을 하셨다면 담당자 배부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15

대리인이 수령할 물품에 간이통관 신청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신해서 수령할 물품에 대해 간이통관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편물 간이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간이통관 신청 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우편, 팩스, 이메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시 신청인 란에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방문) 위임장,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16

간이통관 신청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후 진행상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우편물통관 진행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7

우편물 통관조회가 안되는 경우



우편물 중 통관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EMS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 EMS·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일부 소형 우편물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8

간이통관 신청내역 수정(취소) 방법



우편물에 대한 간이통관 신청내역은 어떻게 수정/취소할 수 있나요?



■ 우편물 신고내용 정정의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 연락하여 요청 하시거나, 이메일, 팩스로 자료를 보내셔서(통관번호 기재 필수) 최초 신고내역을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락처] : 세관 대표민원전화(032-720-7400), 이메일 minwon9@korea.kr, 팩스 032-722-3816



관련법령

19

우편물 반송 사유



제가 수취할 우편물에 대해 간이통관 신청서를 못 받고 반송 신청서를 받았는데, 통관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반입제한물품에 해당되어 반송안내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반입제한물품 : 가짜(위조)물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등



관련법령

20

우편물 반송 절차



간이통관을 하도록 안내받은 우편물을 반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 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반송이 가능한가요?



〈특송〉

- 아직 수입신고 전인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협의하에 반송이 가능하며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판매자, 운송회사와 반품협의를 완료된 경우에만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 간이통관신청서의 '반송 및 폐기 신청란'에 체크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반송 승인 여부는 세관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7471, 7481)로, 세관 반송 승인 후 우편물 반송 일정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 032-745-9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22

해외직구물품 반송 시 배송지 변경 가능



반송신청 접수 후 해외로 나가야 하는 물품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 배송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체국 고객센터(☎1588-1300) 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032-745-9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가 주문한 적도 없는 물품이 도착했다고 통관신청 하라고 연락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우편물의 배송정보(수취인 정보 등)를 확인하신 후, 귀하가 주문하시거나 선물로 수취하시는 물품이 아니라면 간이통관 신청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우편물의 배송정보(수취인 정보 등) 확인은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또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24

신용카드 납부를 계좌이체로 변경



우편물 세금 납부 방법으로 간이통관신청서에 신용카드 납부를 기재했는데, 계좌이체로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계좌이체로 납부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이통관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송된 문자메세지 내용에 따라 관세납부전용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25

카톡으로 온 통관절차 수수료는 납부해야 되는건지?



카톡에 수입한 우체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왔는데, 이게 뭔가요?



- 물품통관시 발생하는 조세와 별도로 체신관서(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세관 통관 검사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징수하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관련법령

26

우편물 간이통관 납부영수증 발행기관



우편물 간이통관 납부영수증은 어디서 발행되나요?



- 간이통관 납부영수증은 과세통관된 해당 소포박스에 '국제우편물 영수증서'라는 제목으로 동봉되어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관련법령



간이통관된 우편물에 대해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FTA 사후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 간이통관 신청 단계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제우편물 간이 통관 신청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 등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처(국가) 및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 하여야 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우편〉

- 최근 국제우편물량 증가로 우편세관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또는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우편 : 인천공항세관 ☎032-720-7400, e-mail: minwon9@korea.kr
 - 선편우편 :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055-783-7424, e-mail: onestop7013@korea.kr

〈특송〉

-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통관 후 현장 직접 수령은 해당 운송(특송)업체에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29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회



국제우편물품 예상세액 조회방법이 궁금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요서비스 > 예상세액' 메뉴에서 '해외 직구'를 선택하신 후에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세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간이통관] 프랑스반입 위스키의 한-EU FTA 적용방법 문의합니다.



- 간이통관시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이통관신청서 하단에 'FTA 협정관세적용신청 >> 한-EU' 체크하시고, 송품장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 및 서명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은 프랑스등 한-EU 협정국가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합니다.
- 해당물품이 한-EU FTA 관세 특혜를 받기위한 요건이 충분하시다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나머지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과세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의 면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1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개장검사하는 이유



왜 국제우편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개장하여 검사하는지요?



- 관세법 제257조(우편물의 검사)에 따라 통관우체국을 경유하는 우편물은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테러물품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마약 등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편물의 면세 또는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관련법령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을 통관하려고 하는데 세관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 방문하지 않아도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모바일(<http://m.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우편, 팩스, E-mail을 통해 간이통관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9. 보세화물



1

견본품 반출규정



보세구역에서 견본품을 반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견본품 반출입 절차)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관세법 제161조 제4항에 따라 세관직원이 검사상 필요에 의하여 견본품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舊.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舊.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 법령이 지정한 검사원, 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거(압류)증 등을 제시하고 검사시료 또는 검체 등을 직접 채취(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세관장의 견본품반출 허가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출입 사항을 견본품반출입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법령·판례등>>행정규칙>지시 지침에서 '견본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확인가능

《붙임 84. 견본품반출 관련 질의 회신 (※연번과 동일번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1조(견본품 반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견본품 반출입 절차)

2

공동보세구역 특허 시 충족 조건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까?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받을 수 있음
 -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물품을 보관
 -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이 수입하는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
 - 수출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회원사의 수입원자재를 수입하여 보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자가 입주업체의 수입품을 일괄하여 보관
 - 관광진흥산업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주)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가 회원사에 공급할 물품을 일괄 수입하여 보관
 -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보관, 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수입 물품을 일괄 보관
- 공동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면적 중에서 신청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하여야 함
-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법령 및 특허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갖추는 것
 -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할 것
 - 장치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추는 것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도난, 분실, 멸실 등에 따른 운영인 간의 명확한 책임 관계,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추는 것



관련법령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7조 등

3

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나요?



-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물품 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개월 이내
 -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1개월 이내
 -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개월 이내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8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4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조립·검사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 그렇지만, 보세공장에는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 반입이 허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등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 목적에 적합한 물품은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5

보세사자격증 취득요건 및 관련 규정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관련규정을 설명하여 주세요



- 관세법 제175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보세사 시험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 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과목을 면제합니다.
-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65조,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5조, 관세법시행령 제185조

6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 사용가능 물품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보세전시장 내 사용할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세전시장 내 반입된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 오락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케 하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중 유상으로 제공될 물품
- 증여물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한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08조,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7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신고



자유무역지역에 외국물품을 장치한 후 필요시 국내기업에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수입도매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또한 화주가 수입한 물품을 보관 계약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보관해주는 업을 하는 업체는 화주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수입 통관 후 반출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물품만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목적의 업체에게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8

자유무역지역 제조가공 물품 국내업체에 판매 시 통관 절차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 내국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조·가공 후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1조,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9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



하선장소 반입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반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날이 반입기간입니다.
기간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반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예) 컨테이너화물 반입기간 5일

- 월요일 입항 → 화~토, 일, 월요일까지 반입의무기간
- 화요일 입항 → 수~일, 월까지 반입의무기간
- 수요일 입항 → 목~월까지 반입의무기간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10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



해상 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 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Y"라 하며, CFS를 포함)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하선신고)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자유 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가공증명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장치 장소
2. 화물관리번호
3. B/L(AWB)번호
4. 반입일자
5. 품명, 반입중량, 수량
6. 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한 작업과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신청은 선박대리점 또는 포워더가 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건당 400원입니다.



관련법령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12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

- 정부비축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물품,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합니다.
-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 보세창고는 제외) : 2개월
- 부산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
- 인천항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CFS를 포함) : 2개월

- 지정장치장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과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입니다.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 또는 세관장 인정시 1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며,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세관장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보세창고 반입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관 관할구역내에 해당 화물을 반입할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지연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인지부서의 자체조사, 고발의뢰,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 등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선적서류 등 수입신고 또는 신고수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지연·반송대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 특허기간 (보세공장 반입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로부터 1년)

■ 보세창고 반입 내국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이며,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입니다.(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13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규정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
 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
- ② 동일 B/L 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 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0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14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될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비가공증명서 발급)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보수작업 승인신청)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작업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
- 보수작업은 보세구역내의 다른 보세화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작업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작업 신청인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작업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보수작업 대상) 부터 제23조 까지(보수작업의 감독)

16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책임자



적재화물목록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마스터 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이용하는 선박회사 또는 공동 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 하우스 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17

적재목록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적재화물목록 정정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의 기재사항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 이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위임 받은 자 포함)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정기한(B/L 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 출항 :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국제무역선의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34조,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명칭·등록기호·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품명·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 이 때,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출입 횟수 1회 기준으로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총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34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56조



적재화물목록의 개념?



- "적재화물목록"이란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 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의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현행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관세법령상 개항은 아래와 같이 항만 25개, 공항 8개입니다.
 - 항구(25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공항(8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관련법령

- 관세법 제133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55조

21

해외 구매물품 반품 절차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보세판매장(출국장면세점 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신고 후 구매자가 직접 휴대하여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한 후, 해당 보세판매장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수입화물입니다.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에 반드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해야 하나요?



■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정생략 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정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 벌크화물(ex. 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ex. 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ex. 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ex. 펄프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 해상화물(1~6번), 항공화물(2~6번)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6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 신청 생략)

23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보세구역 확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보세구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에 따라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한 자는 그 반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한 자가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가산세)에서 가산세 부과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별표1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가산세)

24

보세판매장 반입 내국물품의 국내 재반입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내국물품이 있는데 판매부진으로 인해 해당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시중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 제3절에 따른 반입(적재)확인서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반입확인서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함)
2. 그 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25

체화물품 공매 시 매각대금 처분



수입물품 체화되어 있고 향후 공매진행 예정입니다. 공매가 되면,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교부되나요?



-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 일반적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경쟁입찰, 경매, 수의계약, 위탁판매 등)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①매각비용, ②관세, ③기타 제세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11조,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26

종합보세구역 내 내국물품 반출입 절차



종합보세구역 내 내국물품 반출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제199조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 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보세구역의 종류별 지정 시 혜택이 무엇인지



종 류		목 적
지 정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
특 허	보세 창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관
	보세 공장	외국물품(내국물품 포함)을 원재료로 제조·가공, 기타 유사 작업
	보세건설장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산업시설 건설
	보세전시장	박람회·전람회·건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전시 또는 사용
	보세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
종합보세구역		둘 이상의 특허보세구역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역



관련법령

- 관세법 제154조, 제169조,



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임차할 수 있는지
2. 보세구역 지정 해제 방법 및 해제기간



1. 보세구역을 지정 또는 특허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관세법 제167조, 제177조의2,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받은 자는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67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받은 운영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7조, 제177조의2, 제204조, 제276조

29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 되나요?



■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됩니다.

1) 시내면세점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규특허수 결정 통보 →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2) 출·입국장 면세점

- 시설관리권자 입찰공고 및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 그 외의 경우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되 위의 각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31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지정요건과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 및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에 따라 일반보세운송업자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업체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 만약,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관할세관에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하여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관세법에 의한 처벌, 파산선고후 복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 또한,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조, 제5조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려고 합니다. 결혼선물로 명품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미화 4천불입니다. 구매 가능한가요?



- 입국장 면세점을 제외한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의 경우 구매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시 면세 한도는 미화 8백불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 시에 미화 8백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은 미화 8백불을 초과하는 물품이 적발될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관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달러 한도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술·담배·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34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나요?



이번에 가족여행을 동남아로 갈 예정입니다. 시내면세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구매한 물품을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매장에서 받을 수 없으며, 출국하는 공항만 인도장에서 인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당일 출국장 내 인도장을 방문하셔서 교환권 및 여권 등을 제시하신 후 구매하신 물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보세제도란?



- 보세제도란 보세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수입물품이 머물러 있을 때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54조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세창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0조



보세운송업자등의 영업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아울러 보세운송업자등은 아래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세한 등록사항은 개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 ~ 5. 국제무역선(기) 하역업자, 국제무역선(기) 선박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내 물품 용역 공급업자: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6. 상업서류 등 송달업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적재화물목록 2차 전송 후 B/L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1, 2차 전송이 가능하며, 1차 전송 후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 전송이 가능합니다.
2차 전송 후 누락된 B/L이나 오류통보 받은 B/L에 대해서는 적재화물 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세관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당해물품의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하선완료 후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공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 마감 전송 후 부분 추가 전송이 가능합니다.(최초 부분 추가 전송 이후 5시간 안에 두번째 추가전송 가능)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1조(적재화물목록 제출)



체화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화된 물품이라도 정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체화된 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은 체화를 해제해야 정정 가능하므로 EDI로는 정정신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신청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환적화물인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환적화물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 세관장은 세관장은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적화물에 대하여 총기류 등 위해물품·마약류·수출입금지품·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 또는 감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41

국내 환승비행기 면세품 구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나요?



- 면세점(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관세법상 환승전용내항기를 말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에서 입국 시 입국경로에 입국장면세점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 자가용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74조 및 제175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3조,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받아야 함

[고시 제3조 운영인의 자격]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명 이상의 보세사 채용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다만, 아래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허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 위와 유사한 물품

[고시 제14조 시설요건]

-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 시설요건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

[고시 제5조 특허신청시 제출서류]

-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4조, 제175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3조, 제14조 등

43

보세판매장내에서 보수작업 인정 여부



면세점 브랜드 매장에 전시된 시계를 고객이 시연하는 과정에서 밴드 제품 시계줄의 변형·변색, 스크래치 등 상품가치 훼손사례 발생하고 있어 보세판매장에서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를 위해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수작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 보세판매장 내에서의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작업은 국내에서 조달된 부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HSK 10단위에 변화가 없으며, 시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으로 「관세법」 및 「보세화물관리예고안」에서 정하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보세판매장에서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보수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 세관에 보수작업 결과보고를 하면 됩니다.
- 참고로 보세판매장에서의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면세물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보관창고'내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물품 반입시 부가 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자, 작업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의 비치, 보수작업시 보세사가 입회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이후, 출항 적재화물목록은 적재화물목록 최종마감 이후 가능합니다.
 - 입항 적재화물목록의 경우 심사완료 이후인 경우에도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완료 전,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도착지 반입전까지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45

세관에서 개인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확인하는 이유



관세청(세관)에서는 무슨 근거로 면세점 구매내역을 알고 있나요?



-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21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에서는
 -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 하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운영인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적재화물목록 정정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 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 적재화물목록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선(기)결과보고서 및 반입물품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선박,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 출항: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해상화물은 90일, 항공화물은 60일 이내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별표5(3. 구간별 개별기준 '자')

47

장외작업장에서 보세공장 등으로 물품 반출 가능 여부



장외일시장치 장소와 장외작업 장소에서 다른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가요?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제1호에서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4조에 따라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은 제4항의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보세구역이란?



- 외국물품 또는 일정한 내국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 또는 내국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 전시 등을 위한 장소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54조



보세공장의 '내국작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희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인은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00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보세판매장 운영인입니다.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까?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운영인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세판매장의 판매용물품 반입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반입검사신청 방법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보세판매장의 미판매 재고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 운영인은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인은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미인도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 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0항제2호(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확인된 해외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과 부지가 갖춰야할 요건이 있습니까?



- 영업용보세창고의 건물·부지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건축물로서 고내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하층 포함 건축물로 그 용도를 「건축법」 상 창고로 설계하여 건축허가·준공검사를 받고, 화물전용통로, 전용승강기 등을 갖춘 경우 지하층 창고면적을 합산
 -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통상 운송되는 단위 포장 및 중량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견고한 선반을 설치한 경우 선반의 면적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
 - 트레일러가 주차하고 회차하기에 충분한 부지
 -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등 내화성 및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
 -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상 보세화물의 보관 적합
 - 건물의 바닥은 시멘트 등으로 하여야 함
 - 건물·건물의 주변 등에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 등 적정시설 설치
 -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해 담벽, 철조망, 조명 설치, 상시 녹화 및 기록보관이 가능한 감시 장비를 갖추어야 함.(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 시 감시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 임차시설인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함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설요건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하여야 함



관련법령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

55

특허보세구역 승계 시 구비서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승계하고자합니다. 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입니까?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9조, 「관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등



일관운송 환적화물이 뭔가요?



■ 일관운송은 복합환적화물에 대한 운송신고 특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 복합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의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복합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재화물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복합환적절차)

57

보세공장의 원재료 원상태 반출



보세공장 운영 시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가있나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에서 제조·가공 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추가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특허 목적에 맞는 물품(원재료)이라면 원상태 반출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폐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59

보세공장 내 견본품을 전시 등을 위해 일시반출



보세공장 내 견본품을 전시 등을 위해 일시반출하려고 할 때 절차는?



-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상담이나 전시, 품질검사, 연구·시험용 목적의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합니다.
 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같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5. 보세공장과 전시장 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인이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검사연월일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승인연월일
 -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 보세공장의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 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 나. 반출장소
 - 다.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의 각호 사항 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06조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공장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 다만,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은 뭘니까?



■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이란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 1)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63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



종합보세구역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합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5.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 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관련법령

-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보세구역에의 반입정지 또는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 세관장은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반입정지 또는 특허취소를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세관장은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등



관리대상화물이란 무엇이며,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감시 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선별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는 경우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경우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세관장은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조



검사지정화물의 해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정의와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마약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
 - ④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대여 불가
 - ⑤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 ⑥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의 관리대상화물 검사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 목록을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특송물품,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이 반입하는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등이 있습니다.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일반적인 검사는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을 대상으로 검색기 검사, 즉시 검사,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후 검사 등의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 또한, 세관장은 화물의 우범성, 감시 단속의 목적상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여 하선·하기감시 검사, 운송추적감시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특송물품·이사물품등·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검사방법 등은 아래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69

검역불합격된 보세화물의 폐기 절차



검역불합격된 보세화물의 폐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 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아울러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폐기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폐기기준) 및 제26조(폐기신청 및 승인)



보세공장 내 조립·분해 등 가능 여부 및 장치기간



-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분해·검사 등의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은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 해당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의 특허기간 동안 장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7조, 제185조

71

수입 화장품의 보세운송 요령



화장품은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이 아니지만, 해상운송을 위한 입항적하목록에는 특수화물코드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상 특수화물코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내법상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세운송신고 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이때, 해당 물품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는 화주 및 보세운송신고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 만약, 운송물품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법령에 따른 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1조

10. A.T.A 까르네



1

A.T.A.까르네 정의



A.T.A.까르네의 정의는 무엇이고 누구 명의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이며,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A.T.A.까르네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 간 일시 수입물품의 원활한 교류와 신속·간편한 수출입절차를 위해 만든 제도로 통관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과 관세 등 수입 제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일시수입신고해야 하며,
-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인이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2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됩니다.

1.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4.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5.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6.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7.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또는 판매·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3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A.T.A.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 전까지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한 A.T.A.까르네 및 관련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 **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A.T.A.까르네
- 세관장은 이와 같은 연장신청을 승인한 경우, 재수출기간을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4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A.T.A.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시 보세구역 반입과 적재기간 준수가 필요한가요?



- A.T.A.까르네를 이용해 물품을 일시수입한 자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 부분신고서에 항공(선)편, 반출 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합니다.
-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신고한 자는「관세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수출신고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단, 적재기간의 연장은 A.T.A.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및 제17조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용도 외 사용절차는 무엇인가요?



-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 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련법령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제20조

11. SOFA



1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주한미군 납품용 수입물품을 면세통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 SOFA협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용 물품을 미군에 납품하는 자(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주한미군용 물품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를 위해 군납업자는 미 군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한민국 세관에 수입신고 시 주한미군 계약장교가 서명한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75EK)와 B/L 사본 등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75EK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면세통관 된 후 주한미군에 납품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날짜(제출일자)를 지정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 군납업자는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제출일자까지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76EK)를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추징합니다.



관련법령

- SOFA협정 제9조제3항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SOFA협정 대상자가 사용할 개인용품이 우편으로 수입되면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합중국 군사우체국이 아닌 일반 우체국을 통해 우송되는 것은 SOFA 협정에 따른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 SOFA협정 제9조제3항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SOFA협정에 따른 미국군대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SOFA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미국군대 구성원(Member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다만, 미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군사고문단은 제외
- 군속(Civillian Component)
 -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합중국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다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는 제외
 - ※ 대한민국-합중국 이중국적자는 SOFA협정 적용 시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
- 가족(Dependents)
 -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관련법령

- SOFA협정 제1조

4

SOFA협정 대상자의 이사물품 면세통관 방법



SOFA협정 대상자의 이사물품 면세통관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私用)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장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면세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B/L 사본 등의 선적서류와 주한미군용 수입 신고서(95EK)를 미군통관장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SOFA협정 제9조제3항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SOFA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양도 가능 자
 -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도 대상 차량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 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 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 필요 서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관련법령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6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



SOFA 면세차량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SOFA 면세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법률,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세받고 차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관 및 개인
2.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자선, 구호시설과 사회 복지시설
3.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
4. 법 제9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된 학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직업 훈련원과 학술연구기관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6. 양수차량을 외화획득에 직접 사용하는 자
7. 일간신문사, 일간통신사, 주간신문사 및 방송회사
8. 수입차량의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 자가 신분변동 등으로 해당 면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계속 우리나라에 체재할 자
9.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10.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게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4조

12. 기타



1

수입신고 시 관세사 대행



수입신고 시 관세사에게 꼭 대행해야하는 지 여부



■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 제253조(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통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로서,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법 제3조에서는 “관세사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통관 대행 관세사 정보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02-547-9714) 접속 후 회원사 안내 > 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서울지부(전화번호 : 02-540-7867)
- 부산지부(전화번호 : 051-988-0011)
- 인천공항지부(전화번호 : 032-742-8443)
- 인천지부(전화번호 : 032-888-0202)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2조 및 관세사법 제3조

2

관세사시험 공고 및 시행시기



관세사 자격시험 공고 및 시행시기



- 관세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관세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세사 자격시험 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를 통해 전년도 12월 경에 공고되며, 원서접수 및 그 밖에 시험관련 사항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net 접속 > 전문자격시험 > “관세사”
-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사법 제6조(관세사 시험) 및 제26조(위임과 위탁)

3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대행수입 판매 절차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2) 통신판매업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4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합니다.
- 선박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6조

5

세관 통관 수수료



물품 수입시 세관에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게 맞나요?
사기로 보이는데, 신고 절차가 있나요?



■ 최근 세관통관을 빙자하여 관세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주문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물건이 아니라면 피싱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관대행업체(관세사무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품명·금액)가 가능합니다.

②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제출일자 조정, 조회구문 '통관고유번호' 선택, 제출번호에 수입신고번호 입력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제출번호를 클릭하여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세관에서 몰수한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 관세청에서는 세관에서 몰수한 물품과 세관 공매에 의해 판매되지 않아 국고귀속된 물품을 사단법인 보성 통해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 몰수품 등의 판매는 진열판매, 인터넷판매 및 전자입찰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주 및 고가의 물품 등은 진열매장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관세청 유통사업단'(<http://www.utong.or.kr>)을 검색하시면 판매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6조

7

선용품공급업체의 영업등록 갱신 절차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세관에 영업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물품공급업 등록을 위해서는「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에 임원명부,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동 고시 제5조에서 물품공급자(법인 또는 개인)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록장소별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8

선용품의 정의



선박용품(항공기용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 되는 것을 말하고,
-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조

9

외국무역선(기) 입항보고 절차



외국무역선(기)가 입항보고시 절차는?



- 국제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국제항(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35조, 관세법시행령 제157조

10

외국무역선 출항 절차



외국무역선(기)가 출항시 절차는?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36조, 관세법시행령 제158조

11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중인 선박에 방문하려면?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데 배에 방문 할 수 있나요?



- 승무원의 가족이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하고 승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등 포함)나 선장(당직사관 포함)이 승선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승선신고서에는 선박의 명칭,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승선 이유 등을 기재하셔야 되고, 승선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승선자는 승선기간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모바일승선신고수리서 조회 가능)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1조

12

선용품공급업자의 상시승선증 발급 절차



선용품 공급업자입니다. 상시승선증을 발급받고 싶은데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상시승선(신고)증을 발급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승선증발급신청서 1부.
 - 별지 제16호서식의 각서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 2매(4×3cm)
- 다만, 선박용품공급자가 주문수령, 대금수납, 업무협의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국제무역선에 탑승하려는 경우에는 상시승선증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41조

13

영업등록 주소지 변경



세관에 영업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세관에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 영업등록업체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지체없이 영업등록된 세관에 영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14

선용품공급업자의 공급대행 한도



부산업체인데요. 평택업체에 공급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15

특정지역 선용품공급업자가 타지역 영업 가능 여부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하고 싶은데 평택세관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부산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평택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면 전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 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품공급업"
 -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해운대리점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관련법령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선박용품관련 관세청고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세청 고시는 인터넷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서 관세청을 입력하신 후 관세청 홈페이지-관련 누리집(화면 좌측하단)-관세법령정보포털-행정규칙(좌측)-고시를 검색(키워드 “선박용품”)하시어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면 되고, 의문이 있을 시는 세관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17

선용품공급업체 영업등록 기간 갱신



선용품공급업체인데요. 영업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영업등록 갱신은 세관에서 기간만료 2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 임원진 명단(법인일 경우)
-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당해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법령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18

국제무역선 적재허가받은 자 승선신고 따로 해야하나?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공급하려고 적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선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선박용품·선내판매용품·내국물품의 하역 및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용품 적재 등 허가(신청)서에 승선자 명단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7조

19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용



관리대상화물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 「관세법」 제173조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을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등에 필요한 비용(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세관 지정장치장·컨테이너검색센터 등 세관검사장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제1항 내지 제3항



선박용품 적재완료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공급자 및 판매자는 선박용품에 대하여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또한,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급자등이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21

일반인 공매 참여시 낙찰 한도



일반인이 공매 참여시 몇 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나요?



- 관세법 제208조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의거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화물 중 상품가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공매입찰일 10일전 관세청 사이트(www.customs.go.kr) 접속 후 공매 공고)및 소관세관관서의 게시판에 공고되며, 공고문에서 물품명, 매각방법, 입찰일시 및 장소, 입찰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의 공매참여는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입찰 참여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통상 동일 품목당 1~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로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08조



압수와 몰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압수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그 물품의 점유권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며 소유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압수물품의 처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반환(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
 2. 국고귀속
 3. 매각
 4. 폐기
- 몰수는 범죄가 성립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자산상의 이득을 박탈하는 형벌로 물품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 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일단 압수 후 범죄가 확정되면 몰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82조

23

세관 구매의 참여 및 응찰 방법



세관 구매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구매 공고 확인은 어디서 하고, 물건 확인 및 응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구매는 각 세관 별로 진행되며, 관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고 공시 > 구매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물건 확인은 공고상 기재된 장치 보세구역의 주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가능합니다. (사진촬영 불가)
- 또한, 각 세관 구매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구매 물건의 상세정보에 대해 질의할 수 있습니다.
-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
'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구매 당일 일반입찰의 경우 세관을 방문, 전자입찰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08조



승선허가서를 팩스기로 서면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팩스로 받은 승선허가서로 부두 출입이 가능한가요?



- 승선자는 승선기간 동안 승선신고(수리)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 신고(수리)서는 문서로 휴대하거나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4조

25

내국선박용품도 적재 후 완료보고



내국선박용품도 적재 후 완료보고를 해야 하나요?



- 내국선박용품도 외국선박용품과 동일하게 반드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26

수리불가 적재물품 수입통관 가능 여부



조건부로 하선했던 물품이 수리가 불가능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반송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입통관이나 반송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조건부로 하선했던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박에 적재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개월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하거나, 같은 선사 소속의 다른 국 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적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 또는 반송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통관 또는 반송 수출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세관에 '용도외처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및 22조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중인데, 아직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박용품 적재가 가능한지요?



- 국제무역선으로 운항예정인 신조선박의 건조·검사·점검·시운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외국무역선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신조선박에 외국선용품(소비용품 제외)을 적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해 선박을 건조하는 보세공장을 장치장소로 하여 출발지 세관장의 수출용 신조선박 선용품 보세운송승인신청서와 선박의 출항예정시기, 선박내 적재위치 및 적재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수출신고수리전에 적재한 선박용품에 대해서는 선박용품을 공급한 자가 신조선박이 수출신고수리된 때부터 출항 전까지 해당 선박용품에 대한 적재허가신청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28

해외직구물품 파손 시 보상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파손되어 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제조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며,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246조의2 ‘손실보상’ 규정을 통해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관 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특송·우편물품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일반 수출입화물은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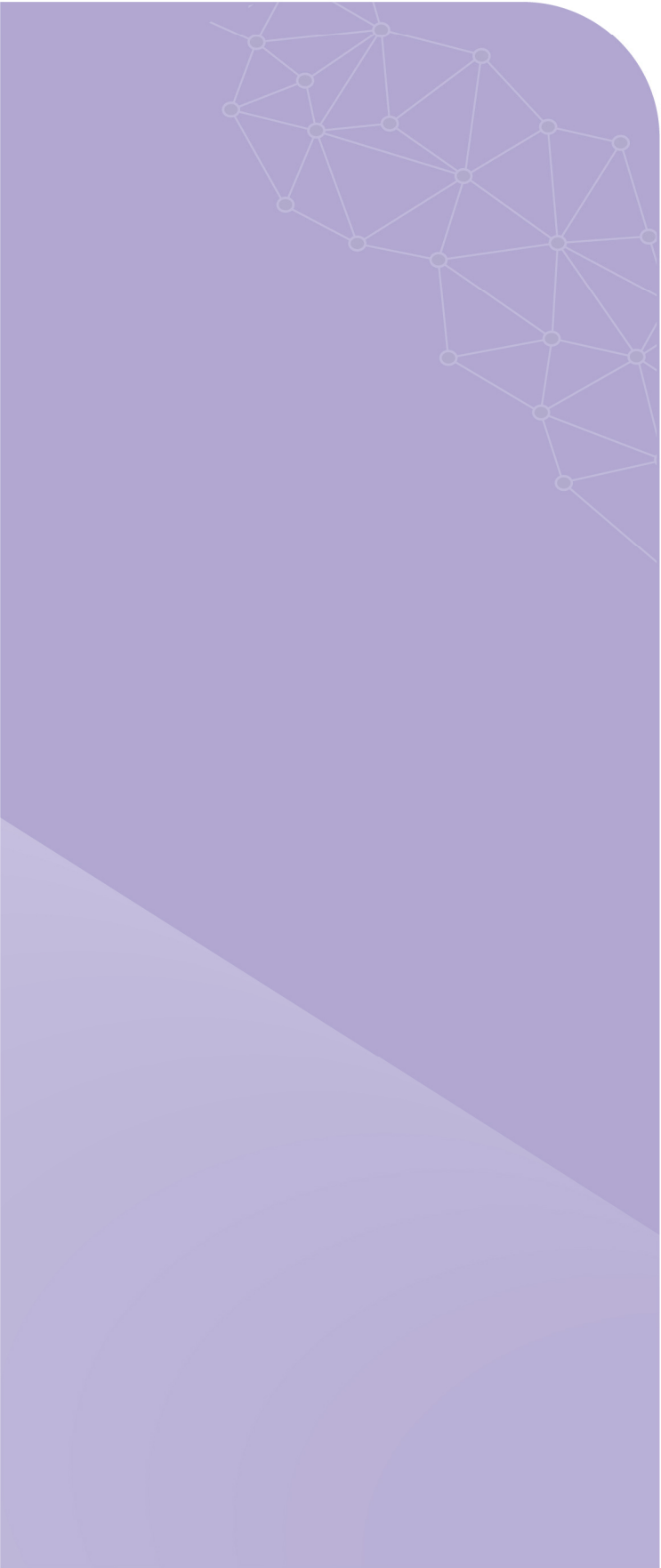
-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 제4조 및 제6조
-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지급절차 및 방법)

PART 2

심 사

1. 품목분류
2. 관세환급
3. 과세가격
4. AEO
5. 세율
6. 관세조사
7. 기타





1. 품목분류

1

컴포지션 레더 vs. 합성피혁의 차이점



컴포지션 레더(compositon leather)와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 차이점과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컴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는 ‘접착가죽(bonded leather)’이라고도 불리며, 주요 제조공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글루(glue)나 그 밖의 결합제로 가죽의 페어링(parings)과 웨이스트(waste)의 조각을 응집
- ② 결합제 없이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응집시켜서 만든다.
- ③ 가죽의 페어링(parings)이나 웨이스트(waste)를 종이와 같은 결합제 없이 물속에서 가열하여 얇은 섬유상이 되도록 분해하여 만들며, 펄프는 체질·롤링(rolling)과 광택가공을 거쳐 판 모양으로 성형된다.

■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의 사전적 의미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주 원료로 하고 천연의 가죽에 가까운 외관과 기능을 갖게 개발한 것을 말합니다.

☞ 컴포지션 레더는 가죽의 웨이스트의 조각을 응집해서 만든 가죽으로 진짜 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제4115호에 분류되고, 합성피혁은 폴리우레탄과 같은 합성수지로 가죽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으로 제39류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2

A4 용지의 품목분류



A4 용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복사용지를 포함해 공문서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가 바로 A4용지로서 규격은 297mm×210mm 입니다.
- 관세율표 제4802호에 “도포하지 않은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가 분류되며, 제4802.56호에는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이하인 것”이 분류됩니다.
- 따라서, 필기용 또는 인쇄용의 도포하지 아니한 종이 형태의 A4용지(1제곱미터당 중량 약 80g)는 제4802.56-10호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소프트웨어 CD 품목분류



소프트웨어 CD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별도의 분류되는 호가 없으나, CD 등 저장 매체에 수록된 경우 제8523호에 분류됩니다.
- CD에 수록된 경우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에 해당하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제8523.49-1010호, 비디오 녹화된 것은 제8523.49-1030호,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49-1040호, 기타의 것은 제8523.49-109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

HS 품목분류상 미완성, 미조립 기계의 분류원칙



HS 품목분류상 미완성, 미조립 기계의 분류원칙은?



- 미완성 기계가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었으면 불완전하더라도 완성된 기계로 분류됩니다.
- 수송 또는 포장의 편의상 기계를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는 미조립 기계는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으면 완전한 기계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5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은?



- 기계란 제16부 주 제5호에서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하며,
 - 기계는 구성 형태에 따라 단일기계와 복합기계, 기능 단위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단일기계는 해당하는 기계의 호에 분류하며,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는 주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제16부 주 3호)하고,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를 단일 기능에 해당하는 호(제16부 주4호)로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6

HS 품목분류상 다기능 기계와 다용도 기계의 분류원칙



HS 품목분류상 다기능 기계와 다용도 기계의 분류원칙은?



- 하나의 기계를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여러 가지 기능(예: 밀링, 볼링, 탭핑 등)을 수행하는 기계를 다기능 기계라고 합니다.
- 다기능 기계 분류 기준(제16부 주3)
 -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며,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
- 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 기준(제84류 주8, 제84류 주2, 제16부 주 3)
 - 주 용도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 용도에 따라 계기된 호에 분류하고, 주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84류 주2 또는 제16부 주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
 - 제84류 주2 호와 제16부 주3호의 복합기계인 경우는 각 규정에 따라 해당 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7

HS 품목분류상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원칙



HS 품목분류상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원칙은?



-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3)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계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를 말하며,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합니다.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란, 하나의 기계가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이 중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하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8

HS 품목분류상 부속기기의 분류원칙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부속기기의 분류원칙은?



- 부속기기의 유형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
 - 주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 주기와 함께 분류하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 주기와 분리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
 - 주기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주기에 종속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해당 호에 분류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9

HS 품목분류상 기계부분품이란?



HS 품목분류상 기계 부분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부분품이란 어떠한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위 구성요소들을 말하며, 이에 반해 부속품이란 기능의 보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닌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분품은 당해 부분품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주2와 제16부~20부의 각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재료나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15부에 우선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제16부 주1, 제84류·제85류 주1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 외의 부분품은 제16부 주 2 규정에 따라 분류됩니다.
 - ① 제16부 주1, 제84류나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 여부 확인 (단,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의 부분품은 재질에 의해 해당 호 분류)
 - ② 특계 호 우선 분류 (16부 주2 가)
 - ③ 특계 호가 없는 경우,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기계가 속하는 호나, 집단 분류호에 분류(16부 주2 나)
 - ④ 기타 부분품 제8487호나 제8548호 분류(16부 주2 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컴퓨터 및 노트북의 품목분류(HS code)는 어떻게 되나요?



■ 컴퓨터나 노트북의 관세율표상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아래의 제84류 주 제6호 가목을 충족하면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합니다.(단,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아닌 특정 기능에 적합한 경우 제8471호가 아닌 특정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에 해당하므로 제8471.30-0000호로 분류하고, 이외 컴퓨터의 경우 일체형은 제8471.41호, 시스템 형태는 제8471.49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11

스마트폰에 대한 품목분류



갤럭시탭, 갤럭시노트, 갤럭시 등 스마트폰에 대한 HS CODE 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인 전화기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되며, HS2022 개정 시 스마트폰이 분류되는 소호를 신설하였으므로 제8517.13-0000호에 분류합니다.
- 참고로, 태블릿 PC는 제84류 주 제6호를 충족하므로 제8471.30-0000호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나목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정제(tablet)·추잉검·패치(피부투여 방식)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니코틴을 함유하나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는 함유하지는 않고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 내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2404.91-0000호(경구용) 또는 제2404.92-0000호(피부투여용)에 분류됩니다.

※ HS 2022 개정에 따른 제2404호 신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13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



자기와 도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며, 도자제 컵의 품목분류는?



- 자기는 거의 완전히 유리화되었고, 견고하며, 실질적으로 불침투성(유약을 시공하지 않더라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색 또는 인공착색 되었으며, 반투명성(상당한 두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및 공명성이 있습니다.

☞ 자기제 컵 : 제6911.10-9000호에 분류

- 기타 도자제품의 경우

- 1) 다공질의 구조로 된 도자제품은 자기와는 달리 불투명하고, 침수성이 있으며, 철에 의해 쉽게 흠이 나고 파쇄면은 혀(舌)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석기(stoneware) : 이 물품은 조적이 치밀하고 철침에 의하여도 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지만 불투명하고 보통은 일부만이 유리화되었으므로 자기와는 다릅니다.
- 3) 반자기 또는 모조자기 : 외관이 상업적 자기가 되도록 조제, 장식 및 유약으로 시공된 것이다. 토기와 같이 실질적으로 불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사실상 반투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기제 컵 : 제6912.00-1090호에 분류(커피 세트 · 티세트 미해당 인것으로한정)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HS 품목분류상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원칙은?



-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이나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제기된 호에 분류됩니다.
- 제16부~제20부까지 부 또는 류·주에 제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또는 제39류의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 ②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 ③ 8301, 8302, 8308, 8310호의 물품과 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제1214호의 사료 식물,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품목분류 기준은?



■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워드(swede) · 망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헤(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스워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 · 망골드(mangold) · 사료용 순무(turnips) · 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 사료용 뿌리채소류 이들 뿌리채소류는 식용에 적합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호의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동물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예: 비트(beet) · 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은 제2308호에 분류)은 제외됩니다.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 · 식물성 웨이스트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됩니다.

- 1)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면실피
- 2)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 옥수수 줄기와 잎
- 3)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
-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 · 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 관세율표 제54류 주 1에 따른 “인조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 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합니다.

- 1) 합성섬유 :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 (예: 폴리아미드 · 폴리에스테르 · 폴리올레핀 · 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 2)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 :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 · 비스코스레이온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 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 · 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 · 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즉, 합성섬유와 재생 및 반합성섬유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인조섬유입니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17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어묵(Fish cake) 및 캐비아 대용물의 품목분류



-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 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 후 유통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에 분류됩니다.
-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제1604.31-0000호에 분류되고, 캐비아 대용물은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의알로 조제한 것을 말하며 제1604.32-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18

옥수수 사일리지(Silage)의 품목분류?



옥수수 사일리지(Silage)의 품목분류



- 사일리지(Silage)라 함은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풋베기작물 등을 사일로(silo)에 저장하여 젖산 발효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옥수수잎이나 속대 주성분에 소량의 옥수수 낱알 등으로 혼합하여 Silo에 저장하여 제조된 물품을 옥수수 사일리지(Silage)라 합니다.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에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옥수수 사일리지는 제2308.00-9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19

페루산 장어류에 대한 품목분류



페루산 장어류에 대한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0302호에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를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뱀장어는 소호 제0302.74호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 신선한 장어에 대한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뱀장어(앵굴라종) : 제0302.74-0000호
- 붕장어 : 제0302.89-3000호
- 갯장어 : 제0302.89-4000호
- 기타 장어 : 제0302.89-909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식용 어류설육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을 소호 제0305.7호에 분류합니다.

※ 제0305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에 대하여 분류

※ 단순 냉동한 것이라면 제0303호에 분류

1. 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

2.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 소호 제0305.72호에 분류

3. 기타 식용 어류 설육 : 소호 제0305.79호에 분류

※ 어류의 간·어란(魚卵)과 어백(魚白),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 [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턱이나 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혀]으로서 건조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훈제한 것도 이 호로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21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



비타민 E(토코페롤)를 함유한 유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 · 땅콩기름 · 들기름 · 참기름은 제외)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비교)

-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 -토코페롤, β -토코페롤, γ -토코페롤 및 δ -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임
- 2) 동물성 ·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임



관련법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7호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1509호에는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20-0000호에,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30-0000호에,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는 제1509.40-0000호, 그 외 것은 제1509.90-0000호에 분류됩니다.
- 카놀라유(Canola oil)는 반건성유가 해당하는 유채유로 보아 제1514호에 분류되며, 정제 여부나 에루크산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집니다.
 - 1) 저에루크산 카놀라유(정제한 것, 에루크산 함량이 2% 미만인 비취발성유)
: 제1514.19-1000호
 - 2) 기타 정제한 카놀라유 : 제1514.99-101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23

건조한 도라지의 품목번호



도라지 및 더덕의 품목번호는?



- 도라지 뿌리로서 신선한 것은 제0706.90-4000호에 분류하고, 건조한 것은 제1211.90-1960호에 분류합니다.
- 더덕은 신선, 건조한 것 모두 제07류에 분류하되 신선한 것은 제0706.90-3000호에, 건조한 것은 제0712.90-2095호에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 코코넛 : 코코스야자의 열매로 즙이 많아 음료로 마시며 열매 안쪽의 젤리처럼 생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섬유층은 카펫이나 산업용 로프, 차량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며 단단한 껍데기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재료로 사용합니다.

1.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2. 코프라(제1203호) : 야자유(coconut oil)를 짜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건조한 코코넛 과육으로서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3.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슬라이스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4. 코코넛밀크(제2106호) : 코코넛 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제조용으로 사용
5. 코코넛주스(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제2009.89-1030호
6. 코이어식물(제5311호) : 코이어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식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25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



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 미황색 결정상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예: 마스코바도(Mascobado)설탕]에 분류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1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 제1701.14-2000호에 분류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 제1701.99-0000호에 분류

■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율 및 적용기간 : 0%('24.1.1.~6.30.)
5%('24.7.1.~12.31.)

- 한계수량: 50,000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과실주스와 과실음료의 품목번호가 다른가요?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가 분류되며, 바로 마실 수 있는 과실주스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포도주스 100% : 제2009.21-0000호(브릭스 20이하), 제2009.29-0000호(기타-브릭스 20초과)
 - 탄산가스를 주입한 포도주스, 탄산수와 혼합된 포도주스 : 제2202.99-2000호
 - 포도주스 30%, 정제수, 설탕, 합성향 등 조제한 바로 음용 가능한 것 : 제2202.99-200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스위트콘은 옥수수와 다른가요?



■ 스위트콘과 옥수수는 육안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도, 품목분류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 스위트콘

- 신선, 냉장한 것 : 제0709.99-9000호
- 냉동한 것(삶거나 썰서 냉동한 것 포함) : 제0710.40-0000호

■ 옥수수

- 원상, 낱알 등 :
제1005.10-0000호(종자용), 제1005.90-1000(사료용), 제1005.90-2000
(팝콘용), 제1005.90-9000(기타)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커피가 들어간 제품들의 품목번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커피제품은 원두로 시작해서 부산물까지 널리 활용되고, 품목분류도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커피 원두 : 제0901.1호(볶지 않은 것), 제0901.2호(볶은 것)
- 커피 원두의 껍데기와 껍질 : 제0901.90-1000호
- 인스턴트 커피(예: 물에 바로 녹는 커피) : 제2101.11-1000호
-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예: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믹스 분말) : 제2101.12-1000호
-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커피 함유 음료 : 제2202.99-9000호(예: 커피우유, 캔커피 등)
- 커피 추출 후 남은 찌꺼기 : 제2308.00-900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29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쌀은 관세율표상 제10류에 해당하는 곡물로서 일반적으로 제10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은 제외하나, 쌀은 예외적으로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삶미도 제1006호에 분류됩니다.
 - 벼 : 제1006.10-0000호에 분류
 - 현미 : 제1006.20호에 분류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제1006.30호에 분류
 - 삶미 : 제1006.40-0000호에 분류
 - 쌀가루(제11류 주 제2호의 '분' 규정에 적합한 것) : 제1102.90-2000호에 분류
 - 가래떡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떡볶이 물품 : 제1901.90-9091호에 분류
 - 낱알상의 삶거나 찐쌀 : 제1904.90-101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는?



■ 대두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

* 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

* 예: 두부는 제2106.10-1000에 분류됨

- 유리 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1

고추의 품목분류



고추의 품목분류는?(신선·냉장, 냉동, 건조)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인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 냉장, 냉동 시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나, 건조하거나 파쇄 또는 분쇄한 경우는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됩니다.
- 제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 냉장한 고추는 제0709.6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청국장, 낫또(Natto)의 품목분류는?



■ 청국장 및 낫또 모두 대두를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로 수입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포장 또는 소매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고,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 1) 청국장 : 대두를 삶아서 고초균으로 발효후 숙성하여 말린 상태의 알갱이 또는 분말
- 2) 낫또(Natto) : 낱알상의 대두에 낫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

■ 두 물품 모두 다른 식품에 첨가되어 향미료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향신성을 가진 소스와 혼합조미료는 아니므로 제2103호의 기타의 장류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국장 및 낫또는 대두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대두 조제식품으로 보아 제2008.19-9000호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어류의 필렛(Fillet)란?



■ HS 관세율표 제0305호 해설서에 따르면 어류의 필렛(fillet)이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내장·지느러미(등지느러미·뒷지느러미·꼬리지느러미·배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와 뼈(척추나 등뼈·복부나 늑골의 뼈·아가미의 뼈나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이나 배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어류의 껍질의 존재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때로 필렛(fillet)의 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나 후속의 슬라이싱(얇게 저미,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껍질을 남겨둔다. 조각으로 자른 필렛(fillet)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단, 조리한 필렛(fillet)과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16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순수한 에틸알코올(or Ethanol)의 품목분류



- 일반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은 관세율표 제29류에 분류되나, 에틸알코올은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2207호로 분류되며, 에틸알코올 함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1) 변성하지 아니한 음료제조용 조주정,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1000호
 - 2)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10호
 - 3) 기타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합성주정 포함, 알코올함량 80%이상) : 제2207.10-9090호
 - 4) 변성한 에틸알코올(주세법상 변성알코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제2207.20-000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김치(Kim-chi)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김치(Kimchi) : 무, 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린 후 젖산 생성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제품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 김치는 일정한 원료나 제조공정이 규격화된 물품이 아니며,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주원료는 대부분 배추나 무 등의 주성분에 양념을 한 형태이므로 채소의 기타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2005호의 내용에 의하면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가 분류되며, 김치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배추나 무 등의 채소를 주원료로 양념한 김치의 경우 제2005.99-1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다만, 냉동한 김치는 제2004.90-9000호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참깨와 참기름 및 들깨와 들기름의 품목분류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각각 참깨와 들깨로부터 제조된 식용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유하는 방법에는 온압법과 냉압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참깨(또는 들깨)를 볶은 후 압착하는 방법으로, 짠 기름은 빛깔이 짙고 특유의 향미를 가지며, 참기름은 향미가 중시되므로 정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냉압하여 채유하는 방법인데,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쓰며, 기름은 빛깔이 옅고 향미도 덜합니다.
- 참깨 및 들깨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짜기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2류의 내용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되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압착하여 짜낸 참기름 및 들기름은 제1515호의 내용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에 의해 제1515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깨 및 들깨와 이들로부터 압착하여 제조된 참기름 및 들기름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참깨 : 제1207.40-0000호
 - 들깨 : 제1207.99-1000호
 - 참기름 : 제1515.50-0000호
 - 들기름 : 제1515.90-100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유지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제어유(TG) : 단일 어종의 유지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인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등)”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리-에스테르화한 어유 : 단일 어종의 유지의 것은 제1516.1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 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혼합어유 : 1517.90-9000호에 분류
- * 에틸에스테르화한 어유(EE)는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구조로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는 지방성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와 다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돼지의 발가락뼈와 발허리뼈 및 발목뼈 부분이 약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돼지족발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가 분류되고, 제0206호에는 “식용 설육”이 분류되며, 특히 제0206.49-1000호에는 “돼지족(냉동한 것)”이 분류됩니다.
 -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에서 “앞다리” (front leg) 부위는 전완골까지로 정의하고,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함
 - ※ 서울고법은 돼지 족의 판단근거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가축의 도축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적정하다고 판결(2012누18594, '12.11.23)
 - 전완골: 요골과 척골의 2개뼈로 구성
 - 발목뼈: 완골(腕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룬 짧은 뼈의 무리
 - 발허리뼈: 손바닥을 이루는 부분
 - 발가락뼈: 손가락을 이루는 부분
- 문헌상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세계대백과사전 등에서 “가축의 앞발(front feet)”은 앞발목뼈, 앞발허리뼈, 앞발가락뼈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은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명태 머리와 꼬리의 품목분류는?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어류의 식용 설육 범위 확대 요청으로 분류 체계 개정(2017년 제6차 HS 개정)으로 기존 어류 본체와 함께 분류되던 머리, 꼬리, 부레가 식용 설육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2호에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갈·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위·지느러미·헤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명태의 머리와 꼬리

- 신선·냉장한 것 제0302.99-0000호
- 냉동한 것은 제0303.99-0000호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소의 곱창과 양이나 천엽 등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4호의 내용에 “동물의 모든 장, 방광 및 위가 분류되며 원형의 것이나 단편의 것 또는 식용이거나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의 곱창 : 제0504.00-1010호(소의 장)에 분류

☞ 소의 양이나 천엽 : 제0504.00-3000호(동물의 위)에 분류

※ 다만, 삶거나 열처리하여 냉동한 소의 곱창은 제1602.5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1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가공방법(신선, 염장, 초산절임)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제0711호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가 분류됩니다.

☞ 껍질을 깠 신선한 마늘 : 제0703.20-1000호에 분류

☞ 염수에 저장 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초산절임 마늘 : 제2001.90-906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9호 및 제24호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녹차, 홍차 및 보이차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됩니다.

-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건조시킨 녹차(Green tea)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10호 또는 제0902.20호에 분류되며,
- 미숙한 엽을 불에 쪄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둥개지고(rolled) 발효된 홍차(Black tea)나 반발효 차(예 : 우롱차 등), 후발효 차(예 : 보이차 등)는 내용량(3kg 기준)에 따라 소호 제0902.30호 또는 제0902.40호로 분류됩니다.

※ 차(茶)로 종종 호칭되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 마테(mate) : 제0903호에 분류
-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s)” 제조용으로 조합된 물품 : 이들은 예를 들면 제0813호 · 제0909호 · 제1211호나 제2106호에 분류
- 인삼차나 인삼음료 조제품 : 제2106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3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볶은 땅콩의 기준이 궁금하며, 커피 땅콩이나 땅콩 버터의 품목분류는?



▶ 땅콩은 제조공정이나 성상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땅콩(볶거나 조리한 것 제외) : 제1202.4호에 분류

☞ 커피땅콩* : 제1704.90-9000호에 분류

* 땅콩 52.3%, 설탕 47.3%, 커피 0.4%로 구성되어 설탕이땅콩 표면을 완전 도포

☞ 땅콩버터(Peanut butter) : 제2008.11-1000호에 분류

☞ 볶은 땅콩* : 제2008.11-9000호에 분류

* 색차계로 5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이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제29호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참깨분이 1.25mm 금속망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조건으로 제1208.90-0000호와 제2008.19-9000호로 분류되는 차이점은?



■ 참깨분이 1.25mm 금속망체 95% 이상 통과할 경우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제1208호와 제2008호(가공한 것)에 분류됩니다.

* 가공처리 : 참깨분은 일반적으로 볶음(roasting) 처리함

☞ Roasting 하지 않은 참깨분 : 제1208.90-0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 : 제2008.19-3000호에 분류

※ Roasting 처리한 참깨분이라 할지라도 1.25mm 금속망체에 95% 이상 통과하지 않은 것은 제1207.40-0000호에 분류

〈 부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 〉

가.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7.40호에 분류한다.

나.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품목번호 제1208.90호에 분류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5호

45

멸치함유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멸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대두 등에 설탕, 식염 마가린을 조제하여 볶은 제품(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대한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와 제20류 주 제1호 제외규정에 따른 멸치 함유량에 따라 제1604호와 제2008호로 분류됩니다.

☞ 멸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초과한 경우 제1604.16호에 분류

☞ 견과류 조제품 : 멸치 함유량이 20% 이하일 경우 기타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제2008.19-9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6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품목분류



식품으로 중국에서 아교분말(당나귀 껍질) 수입시 품목분류는?



■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90호(기타 조제 식품류) 또는 제3503.00호(젤라틴 등)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2106.9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 (제3503.00호) ■ 기본세율(A) : 8%
- 한-중 FTA 협정세율 : 0%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드론의 품목분류란?



- 관세율표 제88류 주 1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8806호에는 무인기(Unmanned aircraft)가 분류되며, 위 규정을 충족하는 드론은 제8806호에, 오락목적으로만 설계된 드론은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한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HS 해설서 제8703호에서 ‘모터홈(캠퍼 등),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침실·주방·화장실 등)를 갖춘 차량’을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므로 캠핑카는 제8703호에 분류되며,
 - 캠핑카는 내연기관(불꽃점화식, 압축점화식)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부 등에 따라 HSK가 세분류됩니다.
- 또한, 관세율표 제8716.10-0000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1)에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의 이동 주택형 트레일러 (여행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871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49

이륜 전동 운송장치의 품목분류



이륜 전동 운송장치(일명: 샤오미 나인봇 미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며, 소호 제8711.60호에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 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모터스쿠터(motor-scooters), 내장된(built in)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중 모터사이클은 제8711.60-1000호에 분류되며, 모터사이클이 아닌 것은 제8711.60-9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유모차, 카시트 및 핸드 카트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8715호에는 “유모차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유모차(baby carriages): 접는 식인지에 상관없으며, 둘 이상의 바퀴를 갖추었고 일반적으로 손으로 미는 식의 것[대푸쉬체어(push-chairs) · 퍼램블레이터(perambulators) · 스트롤러(strollers)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유모차는 제8715.00-0000호에 분류합니다.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가 분류되며, 소호 제9401.80호에 “그 밖의 의자”가 세분류되며,
 - 해당 소호 해설서에서 “소호 제9401.80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카시트는 제9401.80-0000호에 분류합니다.
-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핸드카트는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에 해당하지 않고,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제8716.80-1000호에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일본산 잡지와 함께 수입되는 부록(가방)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 관련하여 두 개의 물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품목분류 되는지가 쟁점인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한 개의 물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하나, 본품은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호 연관성이 없으므로 각각 품목분류(잡지책 제 4902호, 가방 제4202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해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애견용 샴푸와 애견 의류의 품목분류는?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에는 “그 밖의 물품으로 분류되는 예시로 (6) 동물용 화장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샴푸 : 제3307.9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4201호에는 “동물용 마구(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견용(犬用) 코트”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애견 의류 : 제4201.00-9000호에 분류

☞ 애견 사료 : 제2309.10-1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의류 중에서 여자용, 남자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한, 유아용 의류의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의류는 관세율표상 제61류(편물제)와 제62류(편물 제외)에 분류되는데 여자용 인지, 남자용인지에 따라 품목번호 및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요구됩니다.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 및 제62류 주 제9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남자(소년)용 의류: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
- 2) 여자(소녀)용 의류: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
- 3) 남자 또는 여자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 ※ 해당 의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라서 분류

■ 유아용 의류 구분 기준[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및 제62류 주 제5호]

- 유아용 의류: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함



관련법령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치약, 칫솔, 치실이나 액체 상태의 가글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됩니다.

☞ 치약 : 제3306.10-0000호에 분류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제3306.20호

☞ 구강위생용 제품류 : 제3306.90-1000호에 분류

☞ 칫솔 : 제9603.21-0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셀카봉이나 삼각대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비디오 카메라·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및 “일각대는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인데, 때로는 “유니포드(unipod)”라고도 한다. 양각대는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이다. 삼각대는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셀피 스틱(selfie sticks)’이라고도 하는 셀피 포드(selfie pod)는 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사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 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 자신의 사진(“selfies”)를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 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 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셀카봉, 삼각대 : 제9620.00-0000호에 분류

- 따라서,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제9620호에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갤럭시 기어 같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 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됩니다.
- 따라서, 전화 수신 및 송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는 수신기기를 갖춘 무선 송신기기이므로 통신용 기기로서 제8517.62-102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반도체 저장매체인 SSD(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음]”가 분류됩니다.
- 제85류 주6 가목은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 (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충족하는 SSD는 반도체 매체로 된 저장장치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523.51호에 분류되며,
 - 기록이 안된 것은 제8523.51-1000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은 제8523.51-2010호에, 비디오 녹화된 것은 제8523.51-2020호에, 음성만을 기록한 것은 제8523.51-2030호에, 기타의 것이 기록된 것은 제8523.51-209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촬영된 영상의 내부저장 장치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장치가 없는 것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물품입니다.
- HS 해설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어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예: 웹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CCTV 카메라(Closed-Circuit Television Camera)와 웹캠은 화상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므로 텔레비전카메라인 제8525.89-2000호에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스토브·바비큐그릴에 대한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 레인지, 화상, 조리기, 바비큐, 화로, 가스풍로, 가열판 및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일정 구역의 가열·취사나 끓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고체·액체·기체연료·다른 종류의 에너지(예: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하며, 보통 가정이나 캠핑(camp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요건에 맞는 기구류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취사용 스토브 : 가스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1-0000호, 액체연료용의 조리용 기구는 제7321.12-0000호에 분류

☞ 바비큐 그릴 : 숯을 사용하는 조리용 가열판이므로 제7321.19-0000호에 분류

☞ 난방용 스토브 : 액체연료용의 가열용 스토브이므로 제7321.82-0000호에 분류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란 어떤 것입니까?

또한, 세계적으로 HS 6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가 있나요?



- 품목분류란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각 체약 당사국에서 정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제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수출입 물품에 하나의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 품목번호에 따라 관세율 뿐만 아니라 수출입요건 및 감면대상, 간이정액 환급액, 원산지 등이 결정되므로 관세행정의 근간이 됩니다.
- 세계적으로 HS 6단위 동일하게 사용 및 HSK 세분화하는 근거는 HS 협약 전문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릅니다.
 - *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하며,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 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 HS 협약 제1조(용어의 정의) 및 제3조(HS체약당사국의 의무)

61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수출입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K)를 알고 싶는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하단) 법령정보접속 > 검색창에 관련 검색어 또는 HS코드(예: 1905) 등을 입력
- 민원상담 : 국번없이 “125” 문의(관세청 고객센터)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한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①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UNI-PASS(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②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042-714-7535)



관련법령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품목분류가 이미 결정된 물품에 대해 새롭게 품목분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관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 관계법령 개정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기는 경우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
- 변경 절차 및 기존 결정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
 -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품목분류를 변경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은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한 품목분류를 적용.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은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지폐, 주화 및 옛날 돈 등에 대한 관세율 질의



- 더 이상 법정 통화로 쓰이지 않는 수집용 옛날 돈의 경우는 제9705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관세율표 제4907호에 주화는 관세율표 제7118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본세율 무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캠핑용 선풍기(Tripod camping fan)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 질의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제8414.51호에는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각각 분류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풍기의 품명은 "tripod camping fan"으로 상세한 설명은 없으나, 캠핑활동 할 때 텐트 등 다양한 대상과 위치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으로 제8414.59-9000호가 타당해 보입니다.
- 앞선 설명은 단순 참고사항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이 없으며, 질의하신 물품에 대한 사용방법, 설치장소 등 특히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과 텐트 등 설치되는 물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갖추어 품목분류 유권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물이나 음료를 담는 진공방식이 있는 텀블러의 세번은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9617호에는 "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s)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vacuum jars)·보온주전자·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9617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적합한 물품이라면 관세율표 제9617.0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사양, 구성요소 등 상세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팔로산토 나무스틱(PALO SANTO INCENSE STICK-RAW SMUDGE STICK)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



- 관세율표 제4421호에는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됩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들은 보통의 나무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섬유판·적층목재·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물품은 제조공정 및 제품으로서의 포장상태 등이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태워서 향으로 사용하는 스틱상의 목제품이라면 제442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HSK 10단위 품목분류를 통지받으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물품 당 분석수수료 3만원 발생



관련법령

- 기타



notebook cooling pad(fan 부착형)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사후분석에 대한 내용 및 8414호의 분류 및 세관통관에 관한 의견 질의



- "노트북쿨러의 품목분류 최신본(2017년도 이후의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세계 HS 시스템*에 공개되며,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검토 중인 노트북쿨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오니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하단 관련누리집 中 관세법령정보포털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12-01-005" 외에 현재 노트북거치형 쿨러의 국내 분류사례 최신본은 "품목분류4과-8943(2020-12-04)"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분류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 HS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전기장판(매트)의 품목분류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63류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이,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기에, 제6301호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담요, 모포, 러그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되기에,
- 질의하신 전기장판(매트)은 일반적이라면 제9404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해설서 내용에 합당한 물품인 경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물품의 용도, 기능, 구성요소 등 물품의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회신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인조가죽자켓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인조가죽이라고 질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를 결합시켜 만든 물품으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라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만든 의류제품에 해당된다면 제3926.20-0000호에, 관세율표 제59류 주규정 등에 따라 제11부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만든 의류제품에 해당된다면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는 실제 물품의 상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분조성, 용도,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에서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강화유리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소호 제7007.1호에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며, HS해설서에서 ‘열강화유리’와 ‘화학강화 유리’를 예시하고 있고, 열강화유리는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S 해설서에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강화안전유리의 특성을 가지도록 급히 냉각한 열강화유리라면 제7007.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외규정 및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형태와 용도라면, 강화유리와 유리도자제의 제품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호나 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예: 강화유리로 만든 밑이 평평한 큰 컵·봉규산염으로 보강된 접시와 유리도자제의 판은 제7013호에 분류한다).
-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방한용 의류와 일반 의류의 분류기준을 알려주세요.



- 방한용 의류와 일반 의류의 분류기준은 제6101호, 제6102호, 제6201호 및 제6202호에 분류되는 기후대비용의 의류중 방한용의 것은 파카, 패드를 넣거나, 파일원단 등으로 만들어진 의류가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견본 및 구체적인 설명자료 등을 갖추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10단위 품목번호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 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HSK 제9703호)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작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중 하나는 경질(硬質) 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는 방법이며 ;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며 ; 이러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plaster)로 주조하거나 소성(燒成)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硬化)한다. 또 이들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이나 그 밖의 경질재료로 복제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97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조각과 조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거나 성형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품목분류를 위하여 예술가 정보, 구체적인 제작과정, 물품설명서 등의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효력 있는 품목분류 결정을 통지 받아 수입통관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방용 목제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에서 'Kitchen'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Kitchen'의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면 'a room used to prepare and cook food in'(캠브릿지 사전), 'a room or part of a room used for cooking and food preparation'(위키백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요리를 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차리기 위한 목제가구(예 : 싱크대, 전자레인지 스탠드)가 '주방용 목제가구'로 분류됩니다.
-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경우 식탁·책상 등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용도를 하나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이식·비접이식 테이블은 사무실용·주방용·침실용이 아닌 '그 밖의 목제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75

품목번호(HSK)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품목번호(HSK)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품목분류 결정은 세율 확정뿐만 아니라 수출입승인(요건), 감면대상, 간이징액환급액, 원산지결정 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전적인 절차입니다.
- 최근에는 직접적인 수출입자 외에도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에서도 품목번호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본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신청물품의 견본
 - 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 견본 미제출사유서
 - 대체사진 3매(컬러)
-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 성분표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사료용 조제품)
 - 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석유제품)
 - 제조사의 카탈로그
 - 블럭다이어그램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분석수수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품목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이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재질이나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별도로 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적 성격의 세외수입(수수료)에 해당됩니다.
-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등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요금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샘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견본 제출이 생략 가능합니다.
- 다만, 견본이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6조에 의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을 처리기한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합니다.
 1.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4.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3. 제7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협의회 등 신청인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관련법령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관세율표의 가금류의 정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가금(fowl)은 야생의 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하여 육성한 조류로서, 그 생산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종과 모습, 소리 등을 감상하는데 이용되는 애완용종이 있습니다.

■ 주요 가금

- 평과(科)

· 닭(동남아시아에 야생하는 적색야계·화색야계)

· 메추라기(야생메추라기)

· 칠면조(북아메리카의 야생칠면조)

· 기니닭(아프리카의 Guinea fowl) 등

- 기러기·오리과

· 집오리(중국·유럽 각지의 청둥오리)

· 화조(유럽의 화색기러기, 중국의 저어새)

- 집비둘기(중앙아시아의 강비둘기) 등

■ 생산물 이용을 위한 실용종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난용종 : 가금 중에서 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

2) 육용종 : 육용계(肉用鷄)는 체구가 크고 전구(前軀)가 발달하여 뼈가 가늘고 육량이 풍부한 것이 좋은 브라마·코니시·코친·도킹 종(種) 등

3) 난육겸용종 : 가금 중에서 알과 고기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품종으로 플리머스록종·로드아일랜드레드종·뉴햄프셔종 등이 있으며, 오리와 칠면조도 난육겸용종임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결정통지서 확인 및 출력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 <https://unipass.customs.go.kr>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고지서 출력방법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 <https://unipass.customs.go.kr>

※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후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물품
2.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3.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다만,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분류원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과 협의한 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항에 따른 재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7.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분류원장이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관세율표의 로열젤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로열젤리 Royal jelly(제0410.00-3000호)

일벌이 인두선에서 분비한 것으로 왕유(王乳)라고도 합니다.

꿀벌의 유충시기에 왕유를 풍부히 받은 것이 여왕벌로 되고, 이것을 조금밖에 받지 않은 것이 일벌이 됩니다.

여왕벌은 보통 3년 때로는 5~6년을 사는데 반하여 일벌은 활동기에는 겨우 1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인경(Bulbs)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인경(鱗莖) Bulbs(제0601호)

알뿌리(bulb)는 구상(球狀) 또는 괴상(塊狀)으로 된 줄기 및 뿌리의 총칭으로 구근(球根)이라고도 합니다. 잎·줄기·뿌리 등이 양분을 저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비대 되어, 마치 뿌리부의 조직처럼 보이는 형태로 발달된 뿌리의 한 기관입니다. 알뿌리는 비늘줄기, 알줄기, 덩이줄기, 뿌리줄기, 덩이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비늘줄기(인경, 鱗莖) : 잎의 기부가 변형 비대하여 층상(層狀)의 비늘조각을 이루어 짧은 땅속줄기에 붙어 있는 것(백합·튤립·수선화·아마릴리스 등)
- 2) 알줄기(구경, 球莖) : 땅속줄기가 구상으로 비대한 것(글라디올러스·프리지아 등)
- 3) 덩이줄기(괴경, 塊莖) : 땅속줄기가 비대하여 괴상이 된 것(시클라멘·구근 베고니아·그록시니아·아네모네 등)
- 4) 뿌리줄기(근경, 根莖) : 땅속을 수평으로 뻗어 있는 땅속줄기가 비대한 것(홍초·진저·아이리스 등)
- 5) 덩이뿌리(괴근, 塊根) : 뿌리의 일부가 비대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달리아·작약 등)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육두구(Nutmeg)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육두구(肉荳蔻) Nutmeg(제0908호)

육두구는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육두구과의 상록활엽 교목으로 열매는 핵과(核果)로서 길이는 4~6cm입니다. 성숙하면 살구같이 보이며 안에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숙하면 붉은빛을 띤 노란색 껍질이 벌어져서 안쪽에 갈빗대처럼 갈라진 종의(種衣)가 보이는데, 종자를 육두구, 종의를 메이스(mace)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변성유장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변성유장 Modified whey(제4류 소호주 제1호)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며, 예를 들면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커드(Curd)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커드 Curd(제0406.10-2000호)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이 응고된 것으로, 탈지하지 않은 우유를 사용하면 우유지방의 대부분이 흡착하여 포함됩니다. 이때 응고되지 않고 분리되는 용액을 웨이(whey)라 하는데, 여기에는 카세인 이외의 단백질·락토스 등이 남게 됩니다.

- ▶ 치즈 : 유산균으로 약간 발효시킨 우유에 응유효소를 가하여 생긴 커드를 가온·분리하여 숙성시킨 것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마롱글라세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마롱글라세 Marrons glaces(제2006.00-1000호)

밤을 삶아서 진한 설탕시럽에 여러 날 담가 놓아 단맛이 배도록 한 뒤에 브랜디와 바닐라향을 넣어 만든 것으로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자 중 하나입니다.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수세미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 수세미 Loofah(제1404호 해설서)

수세미외(sponge gourd)·천락사(天絡絲)·천라(天羅)·수세미오이(smooth loofah)·수과락이라고도 합니다.

열매는 10월에 익는데, 긴 자루가 있어서 밑으로 늘어져 매달리고 짙은 녹색을 띠며 길이 30~60cm, 때로는 1m~2m인 품종도 있습니다.

과육의 내부에는 그물 모양으로 된 섬유가 발달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검게 익은 종자가 들어 있습니다. 성숙한 열매를 물에 담가 두면 먼저 표면의 과피가 과육에서 떨어지기 쉽게 됩니다.

다음 종자와 물을 빨아들여 끈적끈적하게 된 과육을 씻어내면 그물 모양으로 된 섬유만이 남게 됩니다.

어린 열매는 식용으로도 하며 성숙한 섬유는 주로 철도차량의 차축급유(車軸給油)의 버트, 선박기관과 갑판의 세척용, 신 바닥의 깔개, 여성용 모자의 속, 슬리퍼·바구니 등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관련법령

- 기타



관세율표의 납(Waxes)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납(蠟) Waxes(제1521호)

화학적으로 지방산과 물에 녹지 않는 고급 1가 알코올류 또는 2가 알코올류와의 에스테르를 말하고, 지방산과 글리세롤과의 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지와는 별종의 것입니다.

납은 성상에 따라 고체납과 액체납(예 : 향유고래유, 망치고래유)으로 분류되고, 출처에 따라 식물성 납(예 : 카나버납, 면납)과 동물성 납(예 : 밀랍, 양모납)으로 나뉩니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글리세롤에 3분자의 지방산이 에스테르 합한 것으로 가수분해하면 지방산이 유리되면서 디글리세라이드, 모노글리세라이드를 거쳐 글리세롤이 된다.



관련법령

- 기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



관세율표의 도체와 이분도체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rcasses and half-carasses(제0201.10호)

도체는 가축을 도살하여 박피한 다음 발목·머리·내장을 제거한 나머지를 말하며, 몸뚱이 도체를 종단한 것을 이분도체, 이분도체를 다시 전후로 나눈 것을 4분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품목번호(HSK)란 무엇인가요?



- ▶ 품목번호란 세계관세기구(WCO) HS협약에 근거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표(6단위)를 말합니다.
-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통상 5년을 주기로 개정되며 가입한 국가들은 이 품목분류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국제간에 거래되는 물품을 숫자로 된 6자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HS품목분류표'라 하며, 이러한 6단위를 기초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10단위로 세분한 것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 확인(HS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인증수출자 갱신처럼 2년마다 품목번호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하나요?



-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다만,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위원회 회의 결과, 품목분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고시를 통해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회신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세평가분류 원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품목분류 재심사신청서
2.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사본
3.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양 설명서 등
 - 용도설명서
 -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 다만,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 시 이미 제출된 서류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절차는 사전심사와 동일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고객사에서 원산지확인을 위해 품목번호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신청을 할 수 있는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및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와 견본(신청물품),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UNI-PASS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① 인터넷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② 우편 및 방문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1과 접수담당자 앞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수입대상: 초콜릿 제품 등 5종을 하나의 봉투에 포장한 제품
- 품목분류: ① 제1806.31-0000호 4종, ② 제1905.31-0000호 1종
- 질의사항: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하나의 세번으로 수입신고 가능한 지 여부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됩니다.
- 수입신고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 2가지 세번으로 별도로 분류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각각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세트로 포장된 물품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 소매용 세트는 "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된 것으로 재포장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소매포장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1)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2)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되며 (3)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트(set)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염색약과 같이 서로 1제와 2제가 소매용 상자 안에 각각의 용기로 담겨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1제와 2제)가 염색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조합되어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경우 소매용 세트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스푼과 포크를 세트로 포장한 경우 스푼과 포크는 모두 동일한 제8215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통칙3-나 의 소매용 세트에 대한 판단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햄 통조림과 참치통조림을 함께 세트포장한 경우에도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소매용 세트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수출신고서 상의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수입국 세관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무역거래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 국가 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협약에 따라 동일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세품목분류표상에 특게되지 아니한 신제품이나 복합물품 등의 경우 통칙과 부류 주의 규정에 따라 주된 기능 또는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간에 문화나 정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직접적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관세청에서 수입상대국에서 발생하는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11년도부터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FTA 확대 등으로 국가 간 품목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응전략과 분류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통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내용이 상대국에서 결정하는 품목번호와 상이한 경우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 기타

2. 관세환급



1

과오납환급 신청



과오납환급 신청시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 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 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심사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46조

2

계약상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수출에 같음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하는 경우나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중 일부만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

3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 반품 시 환급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인데 반품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방법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06조의2에 의거 환급대상이 됩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200만원 초과한 물품은 반품 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 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 2

4

해외직구제품 반품 시 환급



제가 해외직구로 100만원의 물품을 구매했다가 반품하였습니다.
관부가세를 환급받기를 원합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 2에 따른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통장사본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 2
-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기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나요?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6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무엇인가요?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여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신청서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세관의 승인요건 확인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조의 2

7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가방 반품 및 환급 절차



미화천불 정도의 명품가방을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작동해 보니 지퍼에 약간의 하자를 발견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지 않아 가방을 반품하고,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요건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은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연월일·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2.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6조의 2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8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기납증 발급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9

환급 관할지세관



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지원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이며, 김포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도라산지원센터, 부산국제유편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2조(정의) 제9호,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10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 간이 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납부내역
4. 기타 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정액환급률표의 고시요청)



수입관세율이 다른 원재료의 관세환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한 것이 국산 또는 수입원재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조정고시)에서 환급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 인 경우를 포함)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 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2항,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환급금 계좌등록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있나요?



■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 (환급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급금 계좌 통보서에 반드시 제출하는 인감과 동일한 도장 날인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인감 모두 날인
- ② 대표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③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 환급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 ② 한국산업은행
- ③ 중소기업은행
- ④ 체신관서

■ 통보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통보서 등은 관할지세관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제6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환급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지 개별환급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환특법 시행규칙 제12조)이라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지 개별환급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인이 개별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환급 고시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고 비적용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환급지 세관에 제출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당초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승인 가능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①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②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금액이 환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금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③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에는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14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물품 개별환급 신청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일 이전의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환특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을 제외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7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4항



환급신청 후 보관 대상 서류와 보관기간이 궁금합니다.



■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보관 기간은 3년
2.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등의 발급일부터 3년
3. 수출신고필증등 법 제4조에서 정한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4.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너무 어려운데, 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에 의거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수출제품에 소요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소요량 사전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면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 및 소요량 산정내역 설명서’를 환급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시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50일)이며,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4조(소요량 사전심사)



환급대상 수출의 수출사실 확인시점과 수출사실 확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 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 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 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원재료를 수입상태 그대로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원재료 공급받아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하였다면, 국내 양도자 등으로부터 해당 원재료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를 발급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입분증 또는 수입분증의 분증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분증의 발급신청시에는 「환급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의 분할증명서, 국내거래 인정서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래 인정서류로는 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19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및 구비서류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면서 제조업체로서 ①환급신청일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이고, ②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 환급지 세관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등에 의해 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 제16조(간이정액환급)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제9호,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간이정액환급 청구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때 처음 수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간이정액 환급 신청시, 임가공 위탁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릅니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환급등 신청인)제1항 및 제2항

22

환급대상 수출(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및 공사)



환급대상 수출(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및 공사)에는 어떻게 있나요?



-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제2항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상수출)에는 어떻게 있나요?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제1항

24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



환급대상 수출의 종류에는 어떻게 있나요?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수출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정함)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보세구역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즉시 환급대상 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환급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 물품반입확인서의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보세창고에 반입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 판매물품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에 반입
- 종합보세구역에 반입(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 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각목에서 정한 물품이어야 함)
 - ※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중 제45조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항



원상태 수출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원상태수출"이란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상태수출을 근거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분할증명서 포함)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상태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등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 여부판단에 대하여 현품 검사 확인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관세납부 증명서류인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신고 및 관세환급 신청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2호



추가환급신청의 대상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다만, 「환급고시」 제2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급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 추가환급신청사유서
 -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고시」 제48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제49조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 및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 관세도 환급 되나요?



■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제한되는 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에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교역 상대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보복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당초의 탄력관세 부과목적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제한비율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후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물품의 세액) / 덤핑방지관세등 적용 후 세액

※ 환급신청시 "1 - 제한비율 = 환급율" 에 해당하는 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할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것만 환급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환급의 제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환급등의 제한)



최초 환급 신청절차는?



-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급신청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환급금계좌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계좌 통보시 첨부서류 : 환급금계좌통보서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신청서 작성요령(「환급고시」 별표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의 접수통지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담당자 등 접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서류제출 여부
 - 서류제출심사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서류 제출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환급신청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나요?



-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 국내 외화판매, 보세공장 공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판매, 공사 등을 완료한 경우
- 환급신청은 수출신고수리일(판매, 공급,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 다만,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4항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관세법에 따른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원상태 수출 및 기납증 완제품 공급 수출한 경우 : 수출자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주한미군에 물품 판매 등) :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 보세구역에 물품 공급, 외국 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 :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1호 서식)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환급등 신청인)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기간은?



-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자진신고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로 합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이 부족하게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날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날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



과다환급시 자진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와 자진신고 가산금은?



■ 자진신고 대상

-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의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 환특법 고시 별지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 자진신고 가산금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의 1일 10만분의 10(3개월 이내의 자진신고 건은 연 1천분의 12의 이자율 적용)

*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일 10만분의 39 적용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환급의 신청)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 제31조(과다환급금등에 대한 자진신고)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 제25조(자진신고 제출서류), 제26조(자진신고 대상)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환급고시」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된 환급신청 건은 「환급고시」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추가환급시 추가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환급신청기간에 관하여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인 추가환급신청의 경우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 다만,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2년→5년)은 23.1.1. 기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환급신청)



해외에서 임가공후 수입된 물품을 국내의 업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을 위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나요?



-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수입시 감세처리 한 물품이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가공임에 대한 과세액)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세관의 환급심사후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의 절차는?



-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기업심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환급특례법」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합니다.
-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다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심사 후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의 비율은 1일 10만분의 39로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0조(가산금액)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정고시」별표 1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정고시」 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2년)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신청후엔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때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수출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조정고시」 제6조에 의하여 단축배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물품 수출 후 환급과 동일하게 수출일을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출한 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유효기간 단축대상물품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물품을 원상태 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 ▶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조정고시」 적용됩니다.
- ▶ 다만, 같은고시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고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소요량 산정방법이 무엇이며,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은 환급금 산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6가지(단위실량 · 단위설계소요량 · 수출건별등총 소요량 · 일장기간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위탁건별총소요량)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환급업체 중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개별환급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간이정액환급업체와 개별환급업체 중 원상태환급업체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 제9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되나요?



■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위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 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 환급특례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등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 즉 수출용원재료는 위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반출승인·즉시반출신고·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환급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적용할 수 있나요?



■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 적용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개인사업체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수출했던 물품에 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환급고시」 제4조에 따라 환급 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신청권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8조(환급의 신청)제1항



환급신청시 환급요건에 대한 심사만 하고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심사하나요?



- 업체가 신청한 환급 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사는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하는 '환급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급신청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부당환급 5년, 부정환급 10년) 내에서 환급신청 건별로 상시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업체별 심사(기업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기간 전체의 환급 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 사후심사는 환급특례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요량 산정·계산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과다환급 등 발견시 세관장은 해당 환급금을 징수(추징)하며,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39의 비율로 가산금도 함께 징수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제2항 및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3조(환급 전 심사)



재활용이 가능한 멸각·폐기 잔존물이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 부산물이란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존물을 유상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산물 등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 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잔존물이 멸각·폐기 등을 통하여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 제2조(정의)제7호, 제16조(부산물 관리)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나 일부 물품에서 불량률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고 환급을 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국내로 다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환급특례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입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2항



환급받은 수출물품이 클레임으로 인하여 재수입되어 기 환급금을 추징하고 재수입 감면 적용을 받은 경우, 최초 수출에 대한 환급시 사용한 원재료를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 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 제3조(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과세등), 제5조(대체수출물품의 관세환급)



0904.22-0000(파쇄한 건조고추류)를 고세율로 수입하여 제조 전 제조장 관할 세관장에 사용신고하지 못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의 품목으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이하 고세율 원재료’)은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 원재료의 환급), 제4조(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및 확인), 제5조(관세등의 환급신청)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은?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 대상원재료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환급특례법」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증명 발급시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며, 왜 중요한가요?



- ▶ 「환급고시」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제49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 ▶ 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하여 기납증 발행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 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신청 또는 국내거래 시에는 수출이행 기간 등의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 통지를 받거나 세액 보정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 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8조의2
-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세액의 최저한은 얼마입니까?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생겼을 경우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를 징수하게 됩니다.
- 징수 최저한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법시행령제37조(징수금액의최저한)



과오납환급 환급가산금과 기준



■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라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 결정 또는 총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환급 가산금 기산일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조 제4항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관련법령

-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소프트웨어 입력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IC 등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는 것은 물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의 생산에 해당되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제6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제4호 및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5조제6항에서는 보세공장의 건조선박에서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유류(잔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유류(석유)의 범위에는 원유, 천연가스(액화된 것을 포함),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중유, 부탄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제6항

3. 과세가격



1

신고납부 수정 및 경정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정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한날의 다음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시가산세(1,2를합한금액)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①+②)
 - ①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관세법시행령제39조(가산세)

2

납세신고란?



납세신고란 무엇인가요?



- 납세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해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규칙제8조(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3

신고납부 세액정정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한다)에 해당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 할 수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통관 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납부일)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 세액을 장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4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본점과 지점(branch) 간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 간 거래가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의 '판매'로 볼 수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은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5

무료배송으로 구매 시 과세운임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운임을 별도로 과세하나요?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6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사유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왜 과세를 하는지요?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7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 이때,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및 관세 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8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총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란 각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9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 과세



다운로드 이용권 등 무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동법 제15조(과세표준),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전송) 받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무형물로서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10

BWT조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BWT(보세창고도 거래) 조건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BWT 수입이란 외국의 수출자가 자기 책임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입니다. BWT 수입이 일반적인 수입과 다른점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사전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수출자의 책임 하에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하고, 반입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BWT에서 거래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 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출판매는 해당물품이 국제간의 물품 이동 및 소유권 이전이 있는 거래여야 하며, 물품의 국가간 이동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관세평가시점에 해당되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 보세창고에서의 거래는 국제간의 물품이동이 없는 거래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ATA 까르네(CARNET)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TA 까르네(CARNET) 물품은 통상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이 수입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4조(제5방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12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격할인이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13

실제지급가격이란?



실제지급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실제지급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신용장, 전신환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상계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14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제1방법 적용 대상 물품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보세장치 중에 전매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합니다.
-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는 국내 도착 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 보세구역 반입하게 된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 수출판매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수출판매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16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환율과 적용시점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 시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대금결제일과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8조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지불될 로열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할 때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2년 연장 가능)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잠정가격신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18

수입 후 국내 설치비 과세가격 산정



일본에서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국내 설치비 50만엔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치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이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 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19

할인금액 과세가격 산정



기존에 수입한 석재에 불량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 수입되는 석재에 대하여 20% 가격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도 과세 가격에 포함되나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 채무를 상계 또는 변제하는 금액 등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 종전 수입과 관련한 하자물품에 대한 할인금액은 이후 수입물품의 가격과 별도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고, 그 채무를 수입물품 대금의 일부와 상계한 것이므로 해당 상계액(할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원단과 라벨 등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한 후 의류를 만들어 수입합니다. 임가공비로 의류 한 벌당 2불을 지불하였는데 세관에서는 임가공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도 과세를 하나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 무상 공급한 원부자재는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8조

21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로열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22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 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회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가격은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 금액인 개당 50불은 인정받을 수 없는가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게 결정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24

해외가공 수입 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여부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과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한 추가 3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전자제품의 수입시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손모분 3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따라서 완제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모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한 물품이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신청 및 결정 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ACV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의2에 따라 ACVA를 신청한 품목의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ACVA 결정 이후에는 ACVA 품목별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26

납세의무자가 아닌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 후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만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8조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가 무엇인가요?



- 납세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ACVA를 신청하면 본부세관장이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1년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납세자가 ACVA 결정서 내용에 따라 신고한 과세가격은 결정서를 교부 받을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선편운임+수출신고시에 란-행에 신고하였던 200USD 에 대해서도 같이 수입신고서상 33번 모델규격에 신고해야하는건지...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거래구분 89)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보험료 등은 해당 클레임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문의사항입니다.

해당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DHL, FEDEX와 같은 특송으로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특급택송화물과세운임표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제1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적용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제1호)에 따라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일반수입신고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운임을 산출하고,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요금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 가능한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할 때 정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를 UNI-PASS를 통해 제출합니다.
- 연장기간 :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제출서류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9호서식), 기간연장 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
- 신청 세관 :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되,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에게 일괄적으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단계에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와 잠정가격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계약에 따라 반복 수입하는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은 해당 계약에 따른 최초 잠정가격 신고 건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 잠정가격신고 건은 수입신고서의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8조



포인트로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수입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 승용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은 다음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고 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 ③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관련법령

- 관세법 제28조



어떤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28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봅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 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거래 당사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특수관계는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붙임 371.》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과세가격 결정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뭐니까?



-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산출합니다.
- 우선,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해당 품목번호와 업종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납세의무자 수입금액, 외부감사 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이렇게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수입금액 비율, 매출총이익률 차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6조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세관장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세조사 및 같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 삭 제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 삭 제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의4 및 시행령 제31조의5



당면 및 만두(파스타)의 품목분류는?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 마카로니, 누들, 라사그네, 그노치, 레비오리, 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당면(chinese vermicelli)”은 제1902호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면 전분(8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며 제1902.19-2000호로 분류됩니다.
- 만두는 “속을 채운 파스타”의 일종으로서 관세율표 제1902호 용어에 따라 조리 여부에 상관없이 제1902.20-0000호로 분류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별 관세 비용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물품별 관세율 조회가 가능한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접속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해당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다만, 위 사이트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4조, 15조, 제19조 및 제50조



수출입신고 전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와 신청 물품의 견본, 성분표, 제조공정도, 용도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5)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시면 HSK 10단위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분석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2.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재산 압류 등 체납정리 절차 진행
-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 등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42조(가산세)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관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관련법령

-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관세 등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
- 유니패스의 [전자납부 > 납세증명서 관리]에서 간편하게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 세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관세 등 납세증명서 서식(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세관별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합니다.
- 문의사항은 해당 세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었습니다.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는데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가산금이 가산세로 전환되고, 가산금이 폐지되는 관세법 개정안이 2020.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납부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체납을 사유로 이미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납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당 세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관세체납으로 출국정지 상태인데 이게 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 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나요?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및 동 규정의 별표 8에서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에서 정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 의무가 없지만, 일단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53조의2(벌칙)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품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②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④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세트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별 구성품 마다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제4항, [별표2의2] 수입세트물품



수입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Bottle made in 국명")
-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여기에서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하며,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원산지의 판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하나요?



■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완전생산기준 :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 ⇨ 해당국가
- ② 실질적 변형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6 단위 기준)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
- ③ 단순한 가공활동 기준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 ④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서 정하는 물품 ⇨ 특정공정 수행국가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별표 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원산지 표시의 확인 및 이의제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판정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 판정)



수출물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유통이력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통이력관리는 왜 하나요?



-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를 알려주세요



■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EDI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관에 통보되므로 납세자는 세관에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 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 체경바·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 한 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담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산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①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③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④양도성 예금증서,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납세담보 제공양도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②「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③「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⑥「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도로운송증서, ⑦「관세법」 제2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⑧그 밖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포괄담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포괄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담보제공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와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 담보물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 기간 중에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금액·담보제공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오르골의 HS 코드는 무엇인가요?



■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기계식 자명조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뮤지컬박스는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부는 핀을 갖춘 실린더(연주할 곡의 음률에 따라서)인데 실린더가 회전하면 핀이 빗의 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함으로써 설이 진동하며 음조를 낸다. 주요부는 판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실린더는 키로 감는 스프링구동식(태엽식)모터에 의하여 회전된다. 어떤 형의 것은 실린더가 상하로 변화를 주는 금속제반으로 대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태엽을 2~3회 돌려주면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의 경우 제 920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성요소, 기능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샘플, 구성성분,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관세법 제86조에 근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명확한 품목분류를 받아 통관 등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cvnci.customs.go.kr)
⇒ 민원서비스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을,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 검색은 세계HS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유통이력신고는 어떻게 하며 이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지요?



-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자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는 처음 등록신고하시는 분을 위하여 원격지원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관련법령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목록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 유통이력 대상 물품 중 관세청 소관인 공산품은「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에이치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명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



개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 (식당, 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유통이력 신고에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에 차이가 나는 경우 거래일자는 어떤 일자로 신고하나요?



-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때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MADE IN DE / MADE IN IN 등 독일 / 인도를 약어로 표기하여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 질의하신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하거나 인도의 국가명을 'IN'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독일과 인도의 영문 국명은 각각 'Germany', 'India' 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식품 중 과자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문의 드립니다.

과자의 1순위로 사용되는 원료인 블루베리농축액(과채가공품)은 수입 제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가공 운송되는 원료로, (미국산 블루베리를 이용 → 브라질에서 블루베리 농축액 가공 및 제조 → 일본에서 제품 소분 → 자국(한국)입고) 수입신고필증 25번의 적출국은 일본으로 표시되며, 수입신고필증 46번의 원산지는 브라질로 표시됩니다. (원산지 : BR-A-B-D 로 표시됨) 이럴 경우, 과자 제품의 블루베리 농축액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인 소분을 한 국가(일본)이 아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브라질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ex. 블루베리농축액/브라질산 으로 표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브라질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 포장하여 질의물품이 생산된 경우, 일본에서는 판매목적의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단순가공만 수행되어 단순공정 수행국가인 일본을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생산한 국가(예 : 브라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 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귀하께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으로 다른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전기충전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 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수입 악세사리 점포를 창업하려 합니다.

1. 중국, 일본 등에서 제조, 생산된 악세사리제품을 제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국 국적의 수입업체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매입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제품의 종류는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 등의 패션악세사리 종류이며 중국, 베트남 등 제조생산국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위의 제품을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제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창업이라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문1) 중국에서 제조된 악세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 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2) 국내 수입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에 대한 외국산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 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제가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근데 수입방식이 조금 달라서 어떻게 진행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수입하면 포장에 원산지 기입이 되어 있으나, 저는 포장된 상태가 아닌 미포장(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수입시 미포장된 개별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묶음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최종 제품의 포장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는데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지요?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칫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이 국내에서 판매하기에는 보기에 좋지않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수입시 원산지 포기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포장후 Made In 어디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칫솔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현품이 아닌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크상태로 수입되더라도 소매용 최소포장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고, 벌크의 대형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Made in Japan)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 원산지표시할 때 국가명과 지역명을 병기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과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 지역명을 기재하였고, 지역명과 국가명이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 보조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수입산 요가매트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요가매트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종이를 덧대어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가구를 구매할 예정인데 조립식 가구일 경우 각각의 부품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며,
-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부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내용은 자동차부품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봉제인형은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수입산 기저귀에 대한 원산지 표시문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1. 품목 : 유아용 1회용 기저귀
2. 예상 HS코드 : 9619.00-1010 또는 9619.00-9010
3. 원산지 표시내용 :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끝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HS 9619호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최소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이며,
- 원칙적인 표시방법은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서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등과 같은 표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한 것을 전제로, 질의하신 "Produced by 회사명, 주소, 국가명" 표기는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사례와 같이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애완견 사료로서 하기와 같은 원산지 표시가
적당한 지 문의드립니다

Product of BC Canada

BC: British Columbia 의 약자로 캐나다의 주 입니다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또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제시하신 방식은 "Product of 국명" 방식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국명 앞에 MADE IN, MANUFACTURED BY, 등 등 동사가 붙어야 하나요?

다른 미사여구나 다른 물품의 명칭이 붙는 것 없이 순수하게 국가명 그 자체만 표기가 되어있을 때 원산지가 표기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 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5호에 따라 볼펜, 연필 등의 일부물품에 한해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안녕하세요. 원산지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산지의 경우 'THE'가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예시)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므로,
- 제시하신 "Made in the 국명" 방식 또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현재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별표6에 2번 설명중 나와있듯이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MADE IN P.R.C 는 부정적 표시인 것은 알겠으나,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풀어서 표시하는 것도 부적정 표시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화장품을 판매할때 포장 하는 종이 박스만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 박스만 날개로 판매 하는 용도도 아니며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도입니다.

질문 1. 화장품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만 수입할때 각각의 종이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종이박스가 10개씩 포장된 외부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박스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할때 담는 용도인 종이백일 경우 종이백 날개에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이백 또한 종이백만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종이박스는 아니고 종이박스 내부에 넣어서 물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간지(속지)만 수입하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도 속지만 날개 판매 하지 않으며 화장품 판매사로 납품 되는 물품 입니다.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시하신 종이박스, 종이백, 포장재가 상기 1회용 물품에 해당함이 통관지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최소포장별로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및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담보기준가격이란 무엇인가요?



-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를 하지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리후 세액심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심사(사전세액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수입신고 수리후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세액심사 기간 소요로 인해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해당 수입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때 제공할 담보액을 계산하기 위한 품목별 기준가격을 담보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8조 제2항(신고납부) 및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원산지 미표기에 따른 보수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 원산지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며, 보완 또는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158조)에 따르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보수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수작업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완료후에는 세관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온라인 거래 사이트(인터넷상)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나요?



- 온라인 거래 사이트상에서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이트에 원산지를 허위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다른업체로 납품하고 있는데 업체로부터 유통이력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데 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맞는지요? 신고하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유통이력 신고는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지며,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저희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위스키 완제품은 영국산 원액(영국에서 호주로 보냄)과 한국산 병(한국에서 호주로 보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희석하고 병에 주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스키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병입국 : 호주, 원액원산지 : 영국) 되어있는데, 이 표시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도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 위스키 원액은 제2208.30호이며, 위스키 완제품은 제2208.30호이어서 HS code 단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영국입니다.
-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영국(병입 : 호주), 단 호주는 선택사항임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 번(HS6단위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 번이 HS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중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용도세울 사후관리물품을 유통업체에 양도가 가능한가요?



- 용도세울 적용으로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관할지 세관에 미리 양도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으며,
 - 이때, 용도세울을 적용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이 아닌 세율로 계산한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 양도 신청이 승인됩니다.
-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지 세관에 용도외 양도 신청을 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83조제2항 및 제3항(용도세율의 적용)



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 등의 액세서리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후 수입하려 할 때,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4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산지 오인표시인 'Designed by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절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원산지 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1개월 이내에 설치장소에 반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입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사후관리물품을 1개월 이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반입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승인하고,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중국산 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입물품을 분할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물품별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물품 관련 개별법에 따라 표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입물품별 개별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유통이력관리제도란 무엇인가요?



-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단계 별로 ①수입자 ②유통업자 ③소매업자 중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로서,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반입명령이란 무엇입니까?



■ 세관장은 법 제23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통이력관리물품을 적발한 때에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식용 물품을 수입 후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한 경우



관련법령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반입명령)



제4조 담보제공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혹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외에 「대외무역법」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4조 (담보제공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포괄담보에 해당하는 담보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의 담보물 중 3, 4, 5, 6번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중에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월별납부 한도액 상향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 월별납부 한도액 상향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신청서(최근 3개월 실적 또는 전년도 분기실적 중 택 1)
2.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시설투자 수입관련 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투자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액받으려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관세납부계획서 또는 자금수급계획서)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할부가 가능한가요?



- 관세의 카드납부는 인터넷 및 무인수납기에서 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 수수료 및 할부이자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세금을 내야하는데 은행에 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 이체
-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8, 직불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③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 ④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가능하나, 현재 가상계좌는 휴대폰·경정·세외 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이사화물 고지만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 되지 않음
- 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한 납부('23년 9월 시행)
 - 해외직구 이용자 개인 세금 직접 납부 건(수입신고 관세사 신청 건에 한함)에 대해 알림 링크를 통해 납부 가능
- ⑥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한 납부('23년 11월 시행)
 -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 간편인증 → 관세 조회·납부



관련법령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무엇인가요?



■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규칙제8조(수입신고수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 되나요?



▶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무엇인가요?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납세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에는 ‘일반 사전심사’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 일반 사전심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사입니다.
- 반면 ‘ACVA’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심사입니다.
- 일반 사전심사 대상은 성실납세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관세법 제30조 뿐만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포함한 과세가격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7조



일본산 셀을 사용한 원산지가 중국인 배터리에 Processed in China를 표시할수 있나요?



- Processed in Chin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 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Made in China”, “원산지 : 중국”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배터리 셀이 일본산 이라면 Cell Made in Japan 등으로 보조표시를 병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항



원산지표시 위반시 받을수 있는 처벌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제33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원산지 거짓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원산지를 거짓표시, 손상·변경, 미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2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4. AEO



1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란?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란 무엇인가요?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05년 6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협력제도를 의미하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법」제255조의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 화물관리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를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2 제1항

2

AEO공인 혜택



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AEO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하는 기업들에 세관에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첫째,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상승합니다. 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수입업체들이 최근 자국 AEO 공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업체에 AEO 공인을 요구하고 있는 등 AEO 공인을 거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AEO는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 셋째, 관세행정상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공인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검사비율 축소 등 물품 검사상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등 납세편의 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 절차상 혜택, 여러 분야의 자율관리 혜택, 다른 형태의 심사 면제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AAA 등급 공인업체의 경우 관세행정상 최고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3 제1항,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4 제1항, 제2항

3

AEO공인 신청방법



AEO 공인은 누가 신청하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AEO 공인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위 분야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의 기준에 따라 AEO 공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EO 공인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AEO 업체는 갱신심사를 통해 공인 기준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합니다.
 -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 공인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UNI-PASS(unipass.customs.go.kr) > AEO > 공인(종합)심사 > 공인(종합)신청
- 공인신청 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신청서(공인, 예비심사, 갱신심사) 및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 (법규준수도 제외)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 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기준 참조)



관련법령

4

AEO공인 신청 심사요건



AEO 공인신청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심사 요건을 확인하는데 곤란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관세청은 보완 이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 업체에 통보합니다.
- 보완 기간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전체 보완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2 제2항, 제6항
-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제5항

5

AEO공인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AEO 공인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가 필요한가요?



- AEO 공인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공인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갱신)심사신청서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번 203 신청 서류 참조)
- 원활한 갱신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2 제5항
-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제2항, 제3항

6

AEO공인 후속절차



AEO 공인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자격 변동, 공인 정기 자율평가)?



■ AEO 업체는 공인 이후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AEO 업체 사후관리에는 공인 후 갱신 기간까지 관리책임자의 지정·운영,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및 정기 자율 평가를 포함하며, 관세청장은 갱신 심사, 기업상담 전문관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AEO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공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AEO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AEO 공인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보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30일 이내에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양도, 양수, 분할·합병 및 특허의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
4.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관련 특이사항

■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기 자율 평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율 평가는 매년 공인받은 해당 달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연도의 자율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
- 자율 평가는 수출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 제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제



관련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 자격, 역할은 무엇이며,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여야 하며 몇 시간 이수하여야 있나요?



-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와 수출입관리책임자를 말합니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 관리책임자는 ①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②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③ 정보교환, 회의참석 등 수출입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④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⑤ 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 포함)의 관리책임자는 아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에 아래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교육 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2.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5.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율 평가 요령
 -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이수(단,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
 2. 공인 후 교육: 매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 ※ 최초 공인: 공인 후 1년 이내 교육이수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후 180일 이내 교육이수



관련법령

8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기업상담전문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상담전문관은 아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신고 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 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율 평가의 확인 및 점검
 5.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재무건전성 중 감사의견, 부채비율 기준(3.2.1)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당해 업체의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혜택 적용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9

AEO MRA(상호인정약정)의 정의



AEO MRA(상호인정약정)가 무엇인가요?



- AEO 제도 도입 국가 간에 일방의 관세청이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한 우수기업(AEO)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서도 받아들여 해당 국가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 AEO MRA(상호인정약정)은 체결 의향국 간
①AEO 공인기준 상호 비교, ② 기업 방문 합동심사, ③상호인정 혜택 합의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④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간 서명을 통해 체결됩니다.
-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페루, 몽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관련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3 제2항

10

AEO제도의 혜택



AEO 공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AEO 제도는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신속통관, 세제상의 혜택, 해외에서의 통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11

AEO공인심사 절차



공인신청부터 공인심사, 사후관리, 종합심사(갱신)까지 AEO의 전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 AEO 공인은 신청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AEO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초 공인 후 유효기간(5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종합심사)을 신청하면 다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갱신됩니다. AEO 공인은 5년 주기로 위 과정이 반복됩니다.



관련법령

12

AEO인증 관련기관



AEO 인증 관련 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 AEO 인증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여러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현장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담당하며, AEO 심의위원회 운영 및 AEO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AEO 인증 후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은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13

기업상담전문관(AM)이란?



기업상담전문관(AM)은 어떤 일을 담당하나요?



-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이란, AEO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지정된 세관 공무원을 말하며,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상담·자문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2항

14

종합심사·갱신심사·재공인심사의 정의



종합심사, 갱신심사, 재공인심사는 같은 의미인가요? (용어 설명)



-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공인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경우를 '공인심사'라고 하고, 갱신을 위해 5년 마다 심사를 받는 경우를 '종합심사'라고 합니다. 즉, 공인=최초=신규, 종합=갱신=재공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15

다수 공인부문에 대한 중복신청 가능여부



여러 공인부문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인부문 종류)



- 수출입 물류와 관련된 9개 분야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수출과 수입, 화물운송주선업과 보세구역운영인 등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업체가 다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6

AEO공인신청 전 준비사항



신규로 AEO 공인을 받고자 합니다. AEO 공인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먼저, AEO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공인기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인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관리책임자는 공인 필수교육을 이수합니다.



관련법령

심사

17

AEO공인기준 가이드라인



AEO 공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은 (사)한국AEO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18

AEO공인(갱신) 절차와 담당기관



공인(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고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공인신청-서류제출-진행상황 확인 등 모든 절차는 온라인(관세청 UNI-PASS)으로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관세평가분류원입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19

공인(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공인(갱신) 신청시 제출해야 할 필수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인(갱신) 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공인기준에 대한 자체평가표,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20

AEO공인 신청서류 제출



공인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USB에 담아 제출하는 등 다른 방법은 없나요?



- AEO 공인 관련 서류에는 민감한 기업(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분실 등의 사고 우려가 있는 USB 제출은 어렵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21

AEO공인 갱신 신청기한



5년 마다 공인을 갱신해야 한다고 하던데 언제까지(신청기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공인신청·서류제출·진행상황 확인 등 모든 절차는 온라인(관세청 UNI-PASS)으로 진행되며, 갱신 신청은 공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22

AEO공인심사 정정 및 취소(취하)신청



공인(종합) 심사 신청을 했는데 수정(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 및 취소(취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접수완료 전에는 관세청 UNI-PASS ‘공인(종합) 신청’ 화면에서, 접수완료 후에는 ‘정정·취하 신청’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6조의 2

23

AEO공인(갱신) 신청 결격사유



공인(갱신) 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되고 각하됐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신청 결격사유)



- 공인신청이 되면 접수 전에 기본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 등 ‘신청 각하’ 사유가 있으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4항

24

재무건전성 관련 동종업계 부채비율 확인 방법



재무건전성 공인기준과 관련하여 동종업계 부채비율은 어디에서 확인 하나요?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25

AEO공인 기준



수출 부문에 대해 공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인기준에 수입활동과 관련된 기준도 꼭 준비해야 하나요?



■ AEO 공인기준이란 무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업체에서 수입관련 업무도 하고 있다면 공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입활동 관련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26

AEO공인 등급(단계)



공인등급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나요?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부여 받을 수도 있나요?



- 공인등급은 A, AA, AAA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규 공인은 업체별 수준에 관계없이 'A'가 부여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27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BP경진대회) 참여혜택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구, BP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입상한 업체에게는 공인 최고등급(AAA) 획득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다만, 입상 실적은 AAA등급 획득시 한번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28

수출입관리책임자의 지정



관리책임자는 몇 명 지정해야 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총괄책임자는 대표자 또는 임원(급)으로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수출입관리책임자는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1명 이상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4]

29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경력 내용이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30

수출입관리책임자 등의 역할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가 해야 할 역할(임무)이 무엇입니까?



-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정기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내부 절차서에 따라 일련의 업무 절차를 수행 또는 감독하는 등 AEO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3항

31

AEO공인 필수교육



AEO 공인 필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필수교육 대상자는 업체가 지정한 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교육은 관세청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탁 교육기관 : (사)한국AEO진흥협회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32

AEO관리책임자 교육



AEO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주요 내용은 AEO 도입 배경, 정책 방향, 공인기준의 세부내용, 관리 책임자의 역할, 공인·종합심사 준비사항 등으로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해당 위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교육기관 : (사)한국AEO진흥협회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4의2

33

AEO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및 수료



AEO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는 어떻게 하나요?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개설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해당 위탁교육 지정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인 전 교육은 16시간, 공인 후 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총괄책임자는 4시간) 수강하면 수료됩니다. 수료증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산으로 발급 됩니다.



관련법령

34

AEO관리책임자 변경 시 교육



AEO 공인 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교육 이수
어떻게 하나요?



- 공인 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업상담전문관(이하 'AM')에게 즉시 변동신고를 하고 변경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제1항

35

AEO공인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AEO 공인 전·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인신청시 교육이수 확인서(수료증)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인 신청은 각하 또는 기각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장심사 개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2조의2

36

수출입관리책임자 변경 시 조치사항



현장심사 직후 수출입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변경된 수출입관리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를 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 공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37

AEO심사대상 사업장이란?



AEO 심사대상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 신청 부문의 물품, 업무, 정보가 관련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수출입 물품 취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뿐 아니라, 인사, 회계, 정보(문서)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사 및 사무소도 사업장에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38

수출포장 거래업체에 위탁 시 해당업체도 심사대상?



수출 최종 포장을 거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 수출 최종 포장을 거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9항

39

사업장일부를 타사업자에 임대한 경우 AEO공인 인정여부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의 일부를 타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타사업자도 AEO 공인을 받아야 하나요?



-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타사업자가 AEO 공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수출업체)

40

사업장 폐쇄 시 현장방문심사 생략여부



AEO 신청시 A사업장을 포함하였으나, 현장심사 직후 A사업장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A사업장도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하나요?



- A사업장의 폐쇄가 명백하다면 현장 방문은 생략될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 현장심사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5항

41

AEO공인 예비심사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AEO 공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전에 예비적으로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 있나요?



-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비심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양한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42

AEO예비심사란?



AEO 예비심사란 무엇이며, 신청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예비심사는 AEO 공인 또는 갱신 신청 전에 실시하는 임의적 절차로서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희망하는 업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43

AEO예비심사 절차 및 비용



AEO 예비심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예비심사가 신청되면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비심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업체가 직접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44

AEO예비심사방식과 내용



AEO 예비심사의 심사방식과 심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예비심사는 일반적으로 서류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나,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범위 및 내용에 따라 일반사항심사, 결격사유심사, 공인기준심사로 구분됩니다.



관련법령

45

AEO서류심사 절차 및 소요기간



서류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서류심사 업무는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절차는 공인기준별 충족여부 심사, 보완 요구, 보완 이행, 보완사항 확인, 완료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 소요기간은 업체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업체별 심사진행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46

AEO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서류심사를 준비하면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상에 심사유형이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심사유형이 ‘서류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현장심사’인 경우에는 현장심사 단계에서만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47

현장심사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서류심사 자료 제출 시, 심사유형이 서류심사가 아닌 현장심사인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현황설명’만 입력(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서류심사 자료 제출 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의 심사유형이 ‘현장심사’인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48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에 A, B, C, D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공인기준은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영문 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A와 C는 필수기준을, B와 D는 권고기준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49

서류심사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못한 경우 조치



최근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류심사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류 보완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9조

50

공인기준 미충족 시 공인(갱신)신청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서류심사 기간 중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심사로 만회할 수 있나요?



-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현장심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류심사 시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인(갱신) 신청은 기각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51

수출입물품 미취급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수출입 물품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이 없는 공인부문도 현장점검을 하나요?



- 수출입 물품을 직접 취급하거나 시설이 없는 공인부문의 경우에도 출입 통제 관리, 정보기술 관리,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9조

52

공인심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공인기준 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현장심사팀의 사업장 방문 기간 및 방문시기가 궁금합니다.



- 공인심사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사업장 방문 기간은 각각 15일 이내이며, 사업장 방문 시기는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9조

53

현장심사 항목



현장심사 시에는 AEO 신청 시 제출한 자료만 심사하는지, 최근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하는지요?



-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심사하며, 최근 업데이트된 공인관련 자료도 현장에서 점검합니다.



관련법령

54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 교부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는 언제 보내 주나요?



- 서류심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신규), 현장심사 개시 10일 전(신규, 갱신)까지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가 교부되며, 심사계획 통지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9조

55

현장심사 준비사항



현장심사 계획을 통보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현장심사 계획통지서에 요청한 바와 같이 심사장소를 준비하고 심사 자료를 비치하며 CEO 인터뷰 일정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56

현장심사 시작회의 및 CEO인터뷰



현장심사 시작회의 및 CEO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시작회의에서는 심사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협의를 하고, CEO 인터뷰를 통해 CEO의 공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개선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관련법령

57

현장심사 평가회의



현장심사 평가회의는 어떻게 하나요?



- 현장 방문심사를 마친 후 심사팀과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 및 의견 교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58

현장심사 일정연기(중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심사 일정을 연기(중지)할 수 있나요?



- 현장심사 시작 전 또는 후에 업체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59

현장심사 중단사유



현장심사 개시 후 진행 도중에 현장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나요?



- 현장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공인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및 방해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심사가 도중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60

AEO최종공인



(신규) 공인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 종료 후 바로 공인이 되나요?



■ 현장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61

AEO공인 심사절차



종합심사(갱신)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 종료 후 바로 갱신이 되나요?



■ 현장심사 완료 후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62

종합심사 신청기각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종합심사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 AEO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종합심사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63

종합심사진행 기간 중 AEO공인 효력유지



종합심사(갱신)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진행 중에 공인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EO 공인 혜택(효력)이 중단되는 건가요?



- 공인취소, 종합심사 신청 철회·각하·기각이 아닌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종합심사 업체의 AEO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64

AEO공인등급 상향신청



AEO 공인등급을 상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인등급 조정신청은 온라인(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신청하며, 등급조정 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이 담당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65

AEO공인 등급 조정신청



AEO 공인등급 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



- 공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AEO 기업이 4개 분기 연속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66

공인등급 조정심사 신청시기



2024년 1월 1일 신규 공인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공인등급 조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 신규 공인을 받았으므로 만일, 2024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연속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상위 등급 기준을 충족 하였다면 2025년 1월 이후 등급조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67

공인등급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공인등급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평가분류원 심사팀의 현장심사를 거쳐 AEO 심의위원회에서 등급상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제27조

68

등급조정 심사기준 및 공인기준



등급조정 심사할 때 별도의 심사기준 또는 공인기준이 있나요?



- 등급조정심사는 종합(갱신) 현장심사의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해 시행하며 공인·종합심사 할 때와 같은 공인등급 부여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심
사

69

등급조정심사 결과



등급조정 신청 심사결과 등급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등급조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등급 상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현 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련법령

70

등급조정심사 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등급조정심사 결과 등급이 상향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 등급이 상향되어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71

AEO공인 종합심사 신청



현재 ‘운영인’과 ‘운송인’ AEO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인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데 한번에 종합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EO 업체가 여러 공인 부문에 대하여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 부문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72

AEO심의위원회 상정시기



개선이행(보완)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언제쯤 AEO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나요?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 AEO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됩니다. 분류원 현장심사팀은 개선이행(보완)된 자료를 재평가한 후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시일 내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관련법령

심
사

73

AEO심의위원회 추가제출서류



AEO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상정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정확도, 재무건전성, 업체의 의견 표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74

AEO심의위원회 결과 확인



AEO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공인 또는 갱신(재공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심의 결과는 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요 내용을 공표하며, 업체가 직접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공인·갱신(재공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75

심사결과 점수기준 미달 시 공인신청 기각여부



공인(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은 불충족이나 나머지 공인 기준은 모두 충족합니다. 이 경우 공인신청은 기각되나요?



-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이 불충족인 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종합) 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AEO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인이 유보되는지 궁금합니다.



■ AEO 공인 유보는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 충족 여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규준수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유보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77

신고정확도 하위 10%의 의미는?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신고정확도 하위 10%란 무엇입니까?



- 신고정확도 하위 10%란 수출입신고 정정, 취하 등 세관신고에 대한 오류율이 동종 업계의 하위 수준(하위 10%)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법령

78

신고정확도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구제방안



우리 회사는 수입신고 건이 워낙 적다보니 신고 정정을 한두 건만 해도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 신고정확도가 하위 10%에 해당되면 공인이 유보되나, 오류 건수가 적거나 최근의 개선추세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보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79

AEO인증일 기준



AEO 심의위원회 결정일·증서상의 발급일·증서 교부일 중 AEO 인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또한 어디에서 증서를 받나요?



- ‘AEO 증서상의 발급한 날’이 AEO 인증일이며 이 날로부터 5년간 공인이 유효합니다. AEO 증서는 업체별로 지정된 AM 소속 본부세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심
사

80

AEO 업체 AAA등급 상향 조건



우리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자’ 공인부문에서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추후 AAA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까요?



- 현재 AA등급인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만 AAA등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2020년 수입신고건에 대해 2021년 정산결과 ‘우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통관적법성 심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연장가능한가요?



-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 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22-5호



AEO업체의 과태료 감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세관장은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AEO기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공인등급별로 정해진 비율 만큼 감경하고 있습니다.

A등급	AA등급	AAA등급
20%	30%	50%

-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됩니다.
- 다만, 관세법 제277조의 2(금품 수수 및 공여)제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관세법 등에 다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6조(과태료의 가중·감경)



우리나라의 AEO MRA 체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23. 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 하였습니다.

■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 전면이행(발효) 준비 - 4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관련법령

-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AEO기업의 경우 수입신고 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 AEO기업이 수입신고시 검사비율이 낮아져 수입통관이 신속히 처리되고 검사 비용이 줄어듭니다.
- ▶ 화주가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관세청에서 ①전자심사, ② P/L처리, ③ 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AEO기업은 검사대상 선별이 공인등급별 아래의 비율로 낮아집니다. (다만 무작위(random)선별은 검사 제외대상이 아님)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관련법령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AEO기업의 경우 수출신고 시 공인등급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는 비율이 감경됩니다.
- 수출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며, ①자동수리, ② P/L처리, ③서류제출, ④검사로 구분하는데, 이때 관세청 수출C/S(Cargo Selectivity)에서는 서류제출 선별과 관련한 일정기준에 AEO기업을 우대 적용하여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류제출 비율을 추가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 A등급 : 50%, AA등급 : 70%, AAA등급 : 100%



관련법령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여러 공인 부문에 중복으로 AEO 공인신청이 가능한가요?



■ AEO 공인 부문은 9개로 구분되고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문	적용대상
1. 수출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
2. 수입부문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
3. 관세사부문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
4. 보세구역운영인부문	「관세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5. 보세운송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화물운송주선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7. 하역업부문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8. 선박회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관세법」 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9. 항공사부문	「관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관세법」 제25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상기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부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사업장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2조, 제3조, 제172조, 제222조, 제225조, 제241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5. 서울



1

세계 주요국가의 수입관세율



세계 주요국가의 수입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 외국의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의 관세율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 세계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기(국가)선택 >> 해당 연도 선택 >> 세번 검색



관련법령

2

관세율의 정의



관세율에 대한 질의



■ 관세율이란 관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종량세와 종가세가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및 별표 관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관세율 종류 -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FTA협정·덤핑방지·상계·보복·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조정·할당·계절·편익 관세), 일반특혜관세, 협정관세(WTO양허·WTO 개발도상국간양허·APTA양허, UN개발도상국간협정·최빈개발도상국특혜·국제협력 관세)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3

베이킹믹스 제품에 대한 관세율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하는 베이킹믹스 제품(밀가루 84%, 베이킹파우더 2%, 설탕 8%, 소다 1%)이 HSK 제1901.20-9000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 질의



■ 제시하신 해당 물품이 HSK 제1901.20-9000호에 해당되고,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세율 8%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SK 제1901.20-9000호는 FTA 미양허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 적용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4

WTO양허관세 적용대상 국가



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세율 적용 대상 국가 질의



■ 일반양허관세는「WTO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2조에 따른 WTO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규정과 해석이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WTO 양허세율 적용 대상 국가는 1. WTO 가입 회원국, 2. 편입관세 대상국가, 3. 최혜국 대우조항이 포함된 상호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4. 상기 적용 대상국가에 속한 독자적 관세주권이 없는 자치령 또는 속령 등이 해당됨



관련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5

최빈국특혜관세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1. 0704100000 / 꽃양배추, 2. 0704901000 / 양배추, 3. 0706101000 /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 문의하신 3개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 25895호)」 제3조에 따라 0%가 적용되는 특혜대상물품이나,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는 최빈국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므로, 최빈국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관세와는 별개로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6

덤핑방지관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관련하여 중국의 "A"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B"로 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A"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A"가 "B"에게 청구하는 송장(거래송장)이 "A"사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덤핑방지관세 적용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수출 국내에서 해당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및 제245조(신고 시 서류제출)

6. 관세조사



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란 무엇인가요?



■ 관세조사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세조사는 선정 방법에 따라 정기 및 비정기 관세조사로 크게 구분됩니다.

○ 정기 관세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비정기 관세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2조제20호,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2

관세조사에 따른 납세자권리보호



관세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 ④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함
-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1조~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

3

일자리창출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일자리창출기업의 관세조사 유예에 대해 알려주세요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 2013년부터 관세조사 유예 제도(매년 6월 선정, 당해 연도 7월~다음 연도 6월)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선정요건은 전년도 수입금액 미화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 기업으로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당해 연도에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신청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유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0조의3

4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



관세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관세조사 대상자는 정기 및 비정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 관세조사(4~5년 주기의 정기 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매년 2회 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며, 현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및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비정기 관세조사(특정사안 비정기 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0조의3

5

관세조사의 중지·연기 사유



관세조사에 대한 연기·중지가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곤란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관세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40조 등)
 -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중지 사유(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3항 등)
 - 관세조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여 중지를 신청한 경우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쟁의 등 발생으로 조사를 정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품목분류·관세평가 협의기구에 안건 상정,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질의 등에 준하는 경우
 - 해외 특수관계자나 관련자로부터 과세자료 제출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 제140조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제36조

7. 기타



1

분석자료 보완요청 기한경과 시 조치



세관 분석실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체청훈령 제2253호) 제14조(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요구를 합니다.(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 기간내에도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훈령 제6조(분석검사기준 등록)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제14조

2

분석결과 확인방법



분석 의뢰한 분석결과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Uni-Pass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본인확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리전 분석은 통관지 수입과에, 수리후 분석은 통관지 납세심사과에 방문 및 전화문의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3

재분석의뢰



재분석의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 재분석의뢰는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회보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그 밖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련법령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4

분석진행사항 확인



분석진행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진행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관련누리집 > UNI-PASS전자통관 > 메뉴(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분석진행사항조회 항목을 클릭하시면 분석진행사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접수일자, 분석기관, 진행상태, 보완지연사항, 회보일자 등 세부적인 분석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일반 민원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 받기 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 세관 분석실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분류 분석의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일반인은 분석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해당 수입물품의 샘플,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물품 성분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6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수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신청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을 방문(우편, 팩스 가능)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가에서 다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위임장(수입자가 부호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관련법령

- 관세법시행령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1항

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신청 후의 수출입실적 조회에 대해 알려주세요



- 통관고유부호의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시며,
- 국세청의 사업자단위과세를 먼저 변경하신 후 새로 발급받으신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본사와 지사의 실적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고있어,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이 된다하더라도 본사와 지사의 실적이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이전 신고내역에 대해 정정 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 되더라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만료된 이후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www.trass.or.kr>)에서 자사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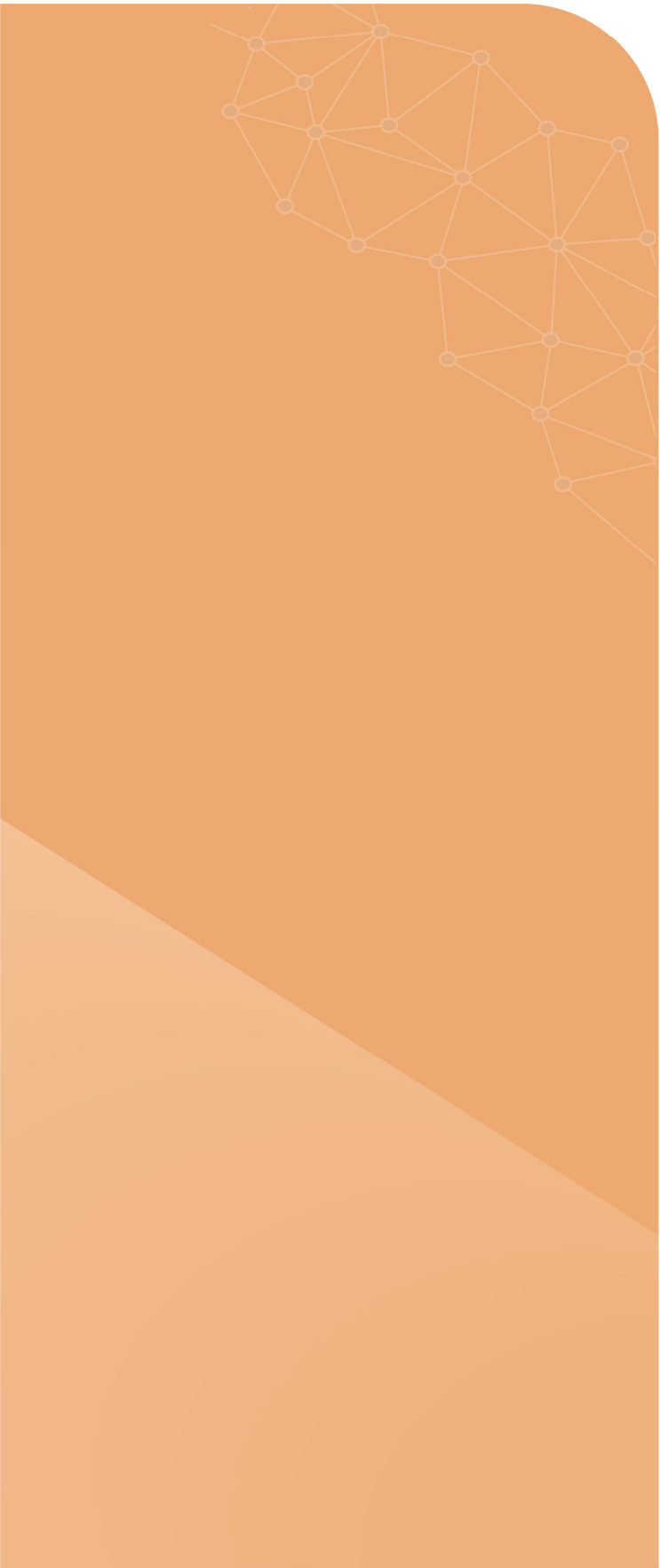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관리에 관한 고시

PART 3

FTA

1. FTA 특혜관세





1. FTA 특혜관세

1

APTA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C/O를 늦게 보내주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APTA 협정대상 품목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수입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특혜세율로 수입신고하고 실행세율과의 차액을 담보제공하여 수리전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불인정됩니다.

■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에 따라, 수입신고전 발행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의 기타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내(원산지증명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분을 제출하면, 사후에 특혜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및 제6조
-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2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



FTA협정 비당사국으로 수출했던 원산지상품을 원상태로 재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한-칠레,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중미, RCEP, 한-인도네시아, 한-캄보디아 FTA의 경우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원상태 재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특혜관세 목적상 재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한-EFTA(원산지규정 12조), 한-인도(협정 3.13조), 한-EU(원산지의정서 12조), 한-페루(협정 3.15조)와 한-터키(원산지의정서 12조), 한-콜롬비아(협정 3.16조), 한-캐나다(협정 3.15조), 한-영(원산지의정서 12조), 한-이스라엘(협정 3.12조) FTA 협정은 원상태 재수입 상품을 각 협정의 특례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합니다.

■ 원상태 재수입품의 원산지상품 인정을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되거나 수출기간 동안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입증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비당사국으로 수출한 물품과 당해 비당사국으로부터 재수입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3

원산지증명서 양식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FTA별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 및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 > 통합검색에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력 > 별지 제8호~별지 제24호의9 서식 참조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자료실> FTA 서식모음> 원산지증명서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기관발급)’ 및 ‘원산지증명서 서식(자율발급)’ 참조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24호의9)

4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국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FTA 체약 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 일반현황> ‘FTA 한눈에 보기’ 표에서도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5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시 원산지결정 기준



원산지(포괄)확인서 상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증명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FTA협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산지결정이 이루어져야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이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시에도 FTA협정별·품목별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F
T
A



관련법령

6

한-미 FTA 특혜관세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미국산 물품이나 한국산 물품을 각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원산지 제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 FTA협정문 제6장 원산지규정 및 절차(섬유는 제4장), 부속서 6-가 또는 6-나

② (원산지증명서)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신청)

③ (직접운송 예외) 물품이 제3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관련규정 : 한미FTA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관련법령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잘못된 것으로 추후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수정통보서)으로 각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참고로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TA관세법 제44조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FTA관세법 시행령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 FTA관세법 제44조(벌칙) 제3항

8

국내구매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 여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 방직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 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재료 여부를 납품업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면 공급일 기준으로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9

상대국의 FTA협정세율



FTA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그 나라의 수입 협정관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FTA가 발효되었다고 하여 FTA상대국 수출시에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0%인 것은 아니며, 품목에 따라 관세 인하율이 각각 다르며 전혀 인하되지 아니한 품목도 있습니다.
- 수출물품의 HS Code 6단위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상대국의 FTA협정세율 검색이 가능합니다.
 -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 국가별 관세율별(상대국 세율) 조회



관련법령

10

수리·개조 재반입물품 면세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한국으로 재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리비는 과세가 되나요?



- 한-미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때 발생한 수리비 및 왕복운임 등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한-미 FTA 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1

원산지증명서 반복사용(포괄증명)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 협정*에서는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 물품에 대한 원산지 포괄증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포괄증명 기간(1년내, '한-호주 FTA'는 2년 이내)동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F
T
A



관련법령

12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수입통관 후에도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13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중고물품에 한-EFTA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EFTA FTA에 중고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위의 요건을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중고물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수입 시 한-EFTA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F
T
A



관련법령

14

한-미 FTA 직접운송 규정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된 경우에도 한미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비당사국을 거쳐(통과 및 환적)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에서의 물품 비가공 및 세관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련 서류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



(TRQ 품목) 관세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이 무엇이며
협정관세추천은 어디서 받는지요?



- 관세율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만 특혜관세가 부과되도록 정한 물품을 말하며("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에 따라 선착순 방식 또는 주무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위임을 받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
 - *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사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선착순 방식에 의한 물품은 관세청 "FTA포탈(www.yesfta.customs.go.kr) < FTA 활용제도 < 협정별 물량관리" 에서 현재 특혜관세 부과 가능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3조(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16

완제품 구매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을 수 있나요



- 최종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시 이를 제출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받으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원산지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자, 해외 수출자·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입건의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특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반복적으로(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으로 발급한 경우 등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FTA관세법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 FTA관세법 제46조(과태료)
- FTA관세법 제44조(벌칙)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 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19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환급



FTA 협정관세율로 납부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한없이 환급 특례법상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른 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는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환급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는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수출 및 원재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F
T
A



관련법령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수출물품에 대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상대국(수입국) 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대국(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등



관련법령



APTA 협정 적용을 받을 때에도 협정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령을 따르는 FTA 협정의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외 특혜관세 적용 관련해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22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인증수출자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요?



-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인증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으로 모든 협정,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나,
- 품목별인증수출자는 해당품목(HS 6단위별)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요건으로 심사하는 협정별·품목별 인증제도이므로, 인증(인증유효기간 5년)받은 협정별, HS 6단위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관련법령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기재생략 가능)
-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방법으로 표기할 것을 권합니다.
 -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WO'
 - 2)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 3)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로 기재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한-아세안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호대응세율

-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해를 하지 않고 고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않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호대응세율표는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제4항 및 제5항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국가의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수출국가나 경유국가가 FTA국가라고 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 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 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26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을 알려 주세요.



■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불인정공정 등)'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으로 대별되며 양자를 모두 충족하여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준은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며, 일반기준과 더불어 해당 품목별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 선택 및 HS code 입력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및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며 어디에서 서식을 볼 수 있나요?



■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시면 되며, 발급방식에는 아래의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 FTA별 원산지증명서 서식 조회 방법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 FTA 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2조(정의)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FTA별로 적용가능한 협정관세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FTA협정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계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FTA별로 연도별로 물품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
 -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협정국가간 교역물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각 협정별로 품목에 따라 즉시관세철폐, 단계적(5년, 10년 등)관세철폐, 관세철폐적용 제외 등 협정관세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수입 협정세율 조회방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해당 연도의 각 협정별 수입 관세율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협정세율 대상 여부 및 협정세율을 아래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접속 >현행법령 >FTA관세법 시행령 검색 >별표확인(해당 FTA)
 - 2)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FTA자료실 >협정별 세율정보 >수입세율 조회
- FTA 상대국 수출시 적용되는 협정세율 조회 방법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접속 > 세계HS >관세율표 >국가 선택 >HS code 입력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별표(1~24의2)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재(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사본제출 가능),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2조(정의)
-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및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및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18조(수리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FTA관세법 제10조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상세내역 붙임 참조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계산을 할 때 다음의 경우에 따른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제6조(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 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 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물량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1회 선적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수입시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나, 동일선적분에 대하여 B/L분할신고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분할신고분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하여,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잔량관리 필요



관련법령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털 게시물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의 수리를 위해 해당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한-EU 협정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따라서 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한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기본세율로 사용신고하고 제품 수입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첨부하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관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신고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한 경우라면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 또한,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신고 시에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와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원료과세 신청하여 제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신고 시 기본세율로 사용신고 하였다면 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제1항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원료과세) 제4항



FTA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HS code와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 관련 협정: 한-EFTA FT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영 FTA

-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관련법령

3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수입통관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원산지 입증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고 관세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여 다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사례 예시

-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

-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1.3.18)」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 면제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며,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미화 1,000불 이하의 입국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의 FTA 특혜신청 (휴대품신고서 특혜관세 적용항목 체크)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한 후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 〉

협정	적용대상	협정	적용대상
EU, EFTA, 영국, 미국,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터키, 인도, 이스라엘	미화 1천달러 이하	중국	미화 700달러 이하
		베트남	미화 600달러 이하
		아세안·RCEP·캄보디아·인도네시아	미화 200달러 이하



관련법령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물품을 통관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였는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FTA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를 납부한 후) 경우라면, FTA관세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FTA관세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차액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관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명서(사본)
- 그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원산지검증을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몇 년간 보관 관리해야 하나요?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사후 검증 등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소명서,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아래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 이 경우, 보관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에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별로 보관대상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EU로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발급하는 권한(한-EU, 한-영,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CEPA, 한-중, 한-베트남, RCEP,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요건)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업체는 서류보관의무도 면제되나요?



-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업체에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FTA관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인증 수출자라 하더라도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5년간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단, 한-중 FTA 원산지증빙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 참고로, 자율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관련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FTA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후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능력을 심사하여 1회 인증으로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5년간 포괄 인증 형태이므로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개별 FTA협정의 개별품목(HS코드 6단위)에 대한 인증개념으로, 신제품에 대해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 등이 기존 인증품목과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신제품이 기존 인증받은 품목과 대상 FTA협정 및 HS코드(6단위)가 동일하고 모델과 규격만 다른 경우라면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HS코드 6단위가 같더라도 투입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빙서류(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부가가치기준의 경우))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며,
 - 다만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의 ‘신고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는 선적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록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2014.1.1. 개정)’ 제7조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한국의 수입자가 유럽의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주문함에 따라 3장의 인보이스와 3장의 B/L이 발행되었고 이 물품들이 동일한 선박으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이 각각의 인보이스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지만 3건을 합하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원산지신고서 상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 한국의 수입자가 주문한 각각의 건별로 B/L이 3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모두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000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 이때 EU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같은 선박(항공)을 통해 동시에 송부된 것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해석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제3호나목



EU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일치하지만 지역코드가 정확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심사 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 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인증번호의 진위 여부 등 유효성 여부는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웹사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한-EU FTA 활용 증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에 EORI NO 또는 VAT NO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사이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이 번호로 확인되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것입니다.)
 - ☞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접속 >참여마당 >공지사항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시작일보다 증명일자가 늦은 경우(소급 발급)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한-미 FTA의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며,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해당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14.8.19)



중국측 수출대행자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로도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중국 발행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 이 경우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서류의 진본 여부가 확인되면 특혜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등



관련법령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16.7.13)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 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7개국의 무역협정으로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수입물품에 적용할 APTA 세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 (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적용받고자 합니다.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APTA 원산지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부속서II(APTA 원산지규칙)에 규정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완전생산기준(A로 기재)
 - 협정참가국(즉 원산지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인 경우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2. 타국산공제 부가가치기준(B와 타국산부가가치비율 함께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중국)이 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FOB가격의 45%이상인 경우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3. 누적부가가치기준(C다음에 누적가치비율을 기재)
 - 당해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협정참가국들(중국, 한국 등 APTA협정국가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누적부가가치)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종 가공국가의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4.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특례총족(D로 기재)
 - 다른 무역협정국가의 원산지기준보다 10%를 인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데 즉 위에서 타국산공제부가가치기준에서 35%이상, 누적부가가치기준에서 50%이상이면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상세 사항은 APTA 협정문(부속서II)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방법



-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RCEP 협정문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서는,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협정문 제3.19조)
- ② 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방법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22.5.18)'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RCEP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 ①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에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구비가 필요합니다.
- ②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 RCEP 제3.4조(누적), 제3.19조(연결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RCEP)



-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문의



- RCEP 제2.6조 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 ① '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 ② '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문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한-EU 및 한-영 FTA에서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의 범위 문의



- 한-EU 또는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 입증을 위해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선하증권(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한-영)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한-영 FTA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



- 한-영 FTA 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EU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영 FTA적용 대상물품 직접운송 원칙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대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하는 EU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협정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EU 누적 및 직접운송 예외규정 적용을 발효후 5년('25년말까지)으로 연장
(23.12.20.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 개정 시행: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주1, 제13조제1항 각주2)

- 다만 이 경우,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 스웨덴 본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인증서문구의 인증수출자번호는 스웨덴이며 원산지는 폴란드로 표기 되어 있음)



- 한-EU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스웨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폴란드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스웨덴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누적 적용 방법



- 한-중 FTA에서는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되는 누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누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한-중 FTA 협정 제3.6조(누적)



세관장의 품목분류 정정에 따른 한-미 FTA 사후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 및 작성일 기재 방법



-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의 발급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된 원산지증명은 4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소급발급의 여부를 원산지증명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산지증명에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



중국과 베트남에 임가공 수출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임가공 수행작업은 단순 조립)



- 한-중 FTA 제3.6조(누적) 및 한-베 FTA 제3.6조(누적)에 의해 한국산 재료가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상품에 결합(완성품의 생산에 투입)된 경우 한국산 재료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 재료로 간주될 수 있으며, 완성품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서 등의 원산지는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중국 또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협정에 규정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여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독일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경우
한-EU FTA 누적 적용



- 한-EU FTA 협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일에서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를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고, 국내 가공공정이 제6조에 규정된 불인정공정 이상이라면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3조(원산지 누적)



당사는 무역업체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추가가공 없이 EU지역으로 수출만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품목별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제출없이 제조업체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관련된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서명카드,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수증 등은 수출자가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당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원산지포괄증명서를 발급하려 합니다. 이때 포괄증명기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와 수출물품은 같으나 발주 수량에 따라 원산지포괄증명서 발급시 수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량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원산지포괄증명서란 반복되어 선적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 예컨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이 2024년 3월 8일이라면 "From(부터) 2024/03/08 To(까지) 2025/03/07"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수량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만을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 한-미 FTA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며, 인도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나 분실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재발급 신청 사유서
-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인도와의 협정에만 해당)



관련법령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당사는 한-중 FTA,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입니다. 태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한-아세안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이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간소화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당사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증 요건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산처리시스템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요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스템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이나 자재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사용하는 ERP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SAP의 경우 모듈을 추가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FTA-PASS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원산지정보원 (☎1544-0645)으로 문의하시면 FTA-PASS 설치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 상대국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혜택을 위해 당사에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단순 수출만 하여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납품을 해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서는,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자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11란 서명란에 서명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스위스 생산물품을 이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들여와 라벨 작업을 한 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상품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여 한-EFTA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 한-EFTA 협정문 제14조(직접운송)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스위스제품을 네덜란드 회사의 창고로 반입하여 라벨 작업을 한 경우, 라벨 작업이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 비당사국(네덜란드) 회사 창고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한-EFTA 협정관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자인 미국 업체가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는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수출만을 하는 경우 본사가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출자(본사)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거가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관련법령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 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 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산지증명서류 관리가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세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19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225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 농산물의 경우에는 1,028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련 인정서류 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 확인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무엇인가요?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므로 업체 스스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를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내부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거나, 관세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전담자는『FTA관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 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거나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 교육 이수점수: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20점 이상,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10점 이상(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 참조)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을 위한 교육은 각 지역 본부세관의 YES FTA 아카데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2항



제품의 원산지는 독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있는 네덜란드 수출자, 선적지는 이탈리아에서 부산으로 직접운송(직접운송충족) ⇒ 상기와 같은 경우 FTA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 한-EU FTA 협정 제1장 제1.2조(일반정의)에 양 당사자란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독일 제품을 인증수출자인 네덜란드 수출자가 수출하여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한-EU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의 비당사국 환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



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라 하고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 줌, 한국에서 유럽 인증수출자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는지



-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하여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음,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89.5%)



-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8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 원산지증명서의 ‘증명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불특정인이 아닌 특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인정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직위 및 직책이 있는지 혹은 증명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등록 및 해제)
 -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일본 수출권이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country of origin 서류를 요구합니다. FTA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적용되는 원산지확인서 인데 상공회의소가 아닌 세관에서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발급절차, 유효기간, 수수료와 그 밖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유럽에서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같이 수입되는 경우 EUR 6,000초과 여부는 유상물품만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유상, 무상물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나요?



- 한-EU FTA 협정상 EUR 6,000 초과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수출자만이 가능하며, 6,000유로 초과여부는 운송서류 또는 송품장 상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협정상 전체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수입되는 경우 유상과 무상을 합친 전체금액으로 6,000유로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중국 해관에서 우리나라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정정 요구시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협정관세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의 HS 6단위를 기재합니다. HS 6단위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석 상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 중국 해관의 사전심사서 등 공식적인 문서로 수정할 HS코드가 확인 되고, 동 HS코드로 분류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의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 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미국, EU 등)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 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Remark)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입신고 수리 후 EU측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소급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한-EU FTA 협정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집행위원회에서 양 측 간에 소급적용해주기로 합의되었습니다.('11.7.18)
 - 따라서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하며 그에 따라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유효기간이 경과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 FTA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정정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9항 및 제10항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 브렉시트로 영국이 EU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

-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최초 운송업자가 전 운송 구간에 대해 책임 지고 발행한 단일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및 영국 관세당국에서 발행된 환적 증빙서류 등으로 직접운송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 운송)



FTA 원산지증명서 상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CC, CTH 등)



- 개별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이 상이하므로 해당 FTA 협정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기준 세가지로 나뉘며 이는 다시 단독기준, 선택기준(or), 조합기준(and) 등으로 구분됩니다.

※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식은 관세청 FTA포털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활용정보 > 원산지결정기준



관련법령



한국세관에서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상대국에서 소급발행 문구가 미기재 되었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상대국 수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 관세청 산하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외통관애로를 접수(온라인 가능)*하시면, 상대국 관세 당국에 접촉하여 관련 해외통관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 해외통관애로 신고 > 해외통관애로 신고센터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해외통관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 관세관 및 해외 협력관 등과 연락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양식이 없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해당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으며, 자율발급이 가능한 한-미 FTA원산지 증명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미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

-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항목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가능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에 "표준양식"(권고서식)을 만들어 업계가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활용 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관련법령

- 한-미 FTA 협정서 제6.15조 제2항



원산지증명서 한 란에 다수의 모델·규격을 기재할 수 있나요?



- 수출품목이 다수일 경우 품목번호(HS)별 기재 및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 품목번호(HS)가 동일한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HS), 원산지기준을 각 물품별로 기재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상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수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수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FTA 원산지 판정 시 세번변경기준이란 무엇인가요?



- 세번변경기준은 해당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b라는 국가의 재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HS 품목번호가 변경된 경우 최종 제품이 a국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됩니다.



관련법령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의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보니 원산지는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신발이면 FTA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호주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물품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제품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직접운송요건에 위배되어 한-호주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인도 측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인도세관이 요청할 경우에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입증정보(FORM1):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

-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21.5월 개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조회사로부터 한국 제품을 구매하여 추가 가공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지, 또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 수출자가 물품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의 최종물품 생산자 등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소명서’는 생산자가 원산지 명세, 생산원가 등을 제공해 주면 수출자가 작성해도 무방하나, 영업비밀 등에 의해 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당사는 중국으로 기계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확인해 보았더니 소급발급문구가 누락되었습니다. 소급발급문구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한-중 FTA에서는 협정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한-중 FTA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자재명세서, 원가계산서, 제조공정도 등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또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서류 및 해당 물품이 생산되어서 수출되기까지의 일체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미국산 의류 해외직구시 FTA 세율적용이 가능한가요



-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아래의 공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관세의 과세가격(물품가격+미국내 운송료+한국까지의 운임+보험료포함)*10%
- 다만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1항에 따라 수입 시 FTA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 해외에서 특송업체(페덱스, DHL 등)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특송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에서 수취인을 대신하여 통관업무를 대행하므로 FTA적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상기 서류를 갖추어 특송업체나 통관대행업체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인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란 어떤 조건인가요?



- 한-중 FTA에 따르면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요건을 면제하며,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간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물품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된 수입의 일부분으로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입니다. 한-중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운임,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 한-중 FTA 제3.19조(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50조(비밀유지)



FTA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릅니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2. 동종·동질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현재 고시 물품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2항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3항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증빙서류 미 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령

- 협정관세 적용제한 - 「FTA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벌칙



원산지검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산지 검증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사후검증이 원칙

■ 원산지 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및 FTA 이행관리

■ 원산지 조사 착수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

■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과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으로 구분 실시하고, 각 FTA별로 상이한 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해외수출자를 직접조사
 - 간접검증 :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검증결과를 수입국에 회신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17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6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문의합니다.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는, 협정관세의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FTA관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

- 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 가. 신청서(신청인,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의 사항 포함)
 - 나.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신청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 납부
- ②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통지
- ③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3항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반려사유는 무엇이고, 사전심사를 받았음에도 그 결과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 관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의 서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6항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법령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 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4.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관세청 YES FTA 아카데미는 무엇인가요?

FTA를 활용하고 싶은데,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YES FTA 전문교육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YES FTA를 통해 FTA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기간(24년 2월~12월) 내에 집합과정(비대면 교육 병행)과 온라인 과정으로 FTA 기초부터 원산지판정 및 검증대응 전략까지 총 16개 세부 과정을 통해 FTA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문 교육을 통해 FTA 활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3~4) 또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1544-570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정	교육대상	세부과정명	교육시간
집합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FTA 기초	6시간(1일)
		FTA 심화	6시간(1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6시간(1일)
		품목분류	4시간(1일)
		원산지인증수출자	4시간(1일)
		원산지검증	4시간(1일)
		FTA 활용 및 검증대응 전략	4시간(1일)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4시간(1일)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4시간(1일)
		FTA 특강	별도 계획
온라인 과정	중소기업 실무자 등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하기	1시간(상시)
		C/O 작성하기	1시간(상시)
		HS 통칙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1시간(상시)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1시간(상시)



관련법령

- 관세법233조의2



「FTA-PASS」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관리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입니다.
- 주요기능으로는 ①정보관리, ②원산지판정,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있으며,
 - ①완제품, 원재료 등 물품정보, 원산지판정이력 및 서류발급이력 관리
 - ②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및 결과확인
 - ③원산지증명서 발행(자율)·발급신청 및 출력(기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발급·유통 지원



관련법령

- FTA특례법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지원)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 FTA 활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공익 관세사’ 제도와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있음
-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형 종합 수출지원 제도로,
 - 공익관세사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 수출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까지 종합 안내
 - FTA 활용 준비 지원(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지결정기준·최적 특혜관세율 확인 등)
 - FTA 활용 현장 교육(FTA 관세특례법 개요, 품목분류 등)
- ▶ 지역 대표산업의 FTA 활용지원 강화

■ 사업 진행 절차

전화 또는 메일로 FTA 활용 상담 신청	전담세관공익관세사 기업 현장 방문	사후관리 지원
수시	수시	수시

■ 사업 기관

기관	부서	전화	홈페이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11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인천)032-452-3644 (서울)02-510-1382 (부산)051-620-6954 (대구)053-230-5184 (광주)062-975-8192 (평택)031-8054-7034	
	통관총괄과 (평택)		



관련법령

- FTA 특례법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지원)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과정이 있나요?



-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및 FTA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및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FTA 교육과정'을 운영
-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에서 확인 가능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중간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물품과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 기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일반세율로 수입통관한 용도세울대상 품목인 중국산 물품을 원산지 증명서 구비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 FTA 협정관세 적용 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규정을 준용합니다.
- 관세법 제8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 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4조제2항



한-아세안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단서조항에도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 (예시 : 한-아세안 FTA 제1901.90호 원산지결정기준)
 -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
 - 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상품인 것에 한한다.
-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이 완성품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수입자와 수입신고서 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 운송될 것,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관련법령

- FTA관세법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한-아세안 FTA 적용하여 수입 통관하였으나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 C/O를 수출자에게서 발급받아 한-베트남 협정으로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세율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스위스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함께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함께 기재된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고 한-E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현품에 'MADE IN USA'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인 소액물품인 경우,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 간이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중국 FTA는 미화 700불, 한-베트남 FTA는 미화 600불, 한-아세안 FTA/RCEP/한-캄보디아 FTA/한-인도네시아 CEPA는 200불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제3항
-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나 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합계가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이 6천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됩니다.



관련법령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2항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 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② 미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

■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PART 4

조 사

1. 일반조사
2. 외환조사





1. 일반조사

1

밀수신고 대상



관세청에 밀수 신고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관세청에서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국물품(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 등)을 수출입통관 절차 없이 밀수출입하는 행위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 불법환전영업 등 불법외환거래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세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국민보건 위해(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행위
- 공항·항만 등을 통한 불법 마약류 반입 행위
- 기술유출 장비·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등

※ 무역거래와 관련 없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국내 제조 가짜상품, 수입산 여부가 불분명한 원산지 위반 물품 등)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특허청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2

밀수신고 방법과 절차



밀수신고 방법과 절차



▶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지역번호를 누르면 관할 세관으로 연결되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방문, 우편,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센터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5 > '10' > 해당 지역번호
-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 > 신청/접수하기
- 모바일 관세청 APP(안드로이드, ISO) > 전체메뉴 > 밀수신고 > 신고서 작성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3

위조상품 판매 신고



위조상품 판매를 제보하고 싶는데 필요한 절차나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국내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기관은 관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단속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으로 관세청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제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해당 물품이 해외에서 반입된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반입물품 여부 판단시 고려 사항 〉

1. 인터넷 상 원산지를 외국으로 표시
2. 판매자가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판매
3. 실제로 해외에서 바로 배송받은 경우

※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물품으로 판단되신다면, 가까운 검찰, 경찰에 제보하셔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시 필요한 내용 〉

1.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한 사이트 주소
2. 국내 사업장 주소 또는 물품보관 장소
3.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사진(직접 배송받으신 물품의 사진)
4.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배송 사진

-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4

밀수신고 포상금



밀수신고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밀수신고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여 사건 수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액은 해당사건의 위반 법조, 사건금액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1억원(마약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입니다.

조
사

- 관세법 제324조(포상)
-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5

대리 구매·반입 행위



해외 여행 중에 국내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 ▶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 반입한 미화 800불 이내(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 금액)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타인의 물품을 배송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9조(밀수출입죄)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6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받나요?



▶ 전자상거래를 통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구매하여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세 등의 납부를 면제(감면)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에 판매가 불가함

▶ 추가적으로 당초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제241조(수출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7

해외직구 물품 재판매에 따른 처벌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사용하다가 구매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구 되팔이로 관세법 위반인지



- ▶ 자가사용목적 구매물품을 주문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 또한, 해외직구 건의 재판매에 대한 위법여부는 각 개별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구 되팔이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한 답변은 연번 6번을 참고하십시오.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

8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어떠한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되며,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위반유형별 판정예시는 동 고시의 ‘별표4’ 부터 ‘별표8’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미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하여 통관을 허용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9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



위조상품은 어떤 것이며 위조상품 수출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위조 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가 사용된 물품을 말하며,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위조 상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위조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상표법 등 개별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타인의 상표가 허락 없이 사용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10

통고처분의 정의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통고처분이 무엇인가요?



- ▶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로, 범죄경력(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통고처분에 대하여 벌금 등을 납부하여 이행을 하게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통고처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세법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
사

-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 관세법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11

CITES대상 생물 수입 시 처벌



CITES 대상 멸종위기종을 국내로 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생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별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또는 동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입죄로 조사 후,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조치합니다.

* 물품원가 5천만원 이하: 통고처분
물품원가 5천만원 초과: 조사 후 검찰고발

나. 또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유죄 확정 시, '관세법 제282조'에 의해 몰수 대상입니다.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 관세법 제270조제2항(부정수입죄)
-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12

CITES의 정의



CITES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입니다. CITES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해진 야생 동식물과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가공품은 국제적으로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CITES 지정 야생동식물로는,

- ①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서리 등
- ② 웅담, 사향 등의 동물 한약 등
- ③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 한약 또는 의약품 등입니다.

다. CITES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사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13

CITES대상 동물의 수입절차



필리핀에서 앵무새를 한마리 선물받아 기르고 있는데, 정이 들어 귀국할 때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CITES라는 제도가 있어 앵무새도 수입이 되는 것, 안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CITES에 해당하는 앵무새라면 수입이 가능한지요?



가. 해외에서 CITES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동물의 학명(Scientific Name), 과명(Family Name), 목명(Order Name)을 확인하고, CITES 홈페이지에서 CITES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해당 동물이 CITES 대상이라면, 수입을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반입 목적 및 반입 동물 소유 경위 등을 신고한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 이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 검역신청을 하여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 입국 시에는 상기 허가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4

탐지견 분양절차



탐지견 분양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탐지견의 분양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훈련견 민간분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은퇴견 상시분양

- (대상) 전국 탐지견 운영현장에서 1년 이상 운영한 탐지견 또는 6세 이상의 모견
- (신청) 입양희망자는 모바일폼으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서류심사) 입양신청자 명단에 등록된 순서로 은퇴견 입양의사 확인 및 서류 심사가 진행
- (은퇴견 프로필 전달) 신청자는 현재 입양가능 한 은퇴견 프로필을 전달 받아 해당견의 입양의사를 확인
- (현장심사) 입양의사가 있는 경우 현장심사를 진행
- (심의위원회) 현장심사가 완료 되면 심의위원회 진행
- (합격자 및 인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은퇴견 인계 진행

▶ 훈련견 민간분양

- (대상) 탐지견 양성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훈련견
- (신청) 연 1회, 기한 내에 접수 후 마감
- * 기타 절차는 은퇴견 상시분양과 동일

- 탐지견 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훈령 제6조(탐지견 처분)
- 탐지견 증여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규



탐지견 핸들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관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채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탐지조사 전문경력관은 마약 및 안보위해 물품 등 적발을 위한 탐지견 운용,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응시자격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④ 응시연령 :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시전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예정자 포함
- ▶ 자격증, 경력, 학위 (한가지 이상 요건 충족 필요)
 - (자격증)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서(반려견지도사) 3등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경력) ①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②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학위)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 (관련분야) 견관리 또는 견훈련, (관련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관련학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16

밀수입물품의 몰수



밀수입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도 납부해야 하고 물건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 ▶ 통고처분은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 관세법 위반 행위 중 ‘밀수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서 그 물품을 몰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물품을 처분하여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밀수입한 현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과 별개로 해당 물품을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불이행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
사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82조(몰수·추징), 제311조(통고처분)

17

세관공무원의 피의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세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의 일시·장소는 협의할 수 있으며, 임의조사이므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출석불응은 “영장에 의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94조(출석요구)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18

세관의 범죄 수사 범위



세관에서 범죄 수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세관은 관세법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사범, 지재권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부정수출입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상 범죄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 ▶ 법령별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
사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2. 외환조사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어떻게 짓나요?



▶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의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2

다국적기업의 채권·채무 상계



다국적기업인 A사(한국)와 B(미국법인), C(중국, A의 자회사)는 각각 재화의 수입·수출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시 A가 B에게 받아야 할 채권과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상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외국환거래규정의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와 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상계합의서, 다자간 상계에 참여하는 기업목록, 상계대상 채권·채무 확인서류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3

물품으로 수출자에 대한 채무상계



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4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채무 상계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1과 채무 100을 상계함에 있어서, 사전에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없이 99만큼 지급하였을 경우, 그 위반 금액을 99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계를 한 1만큼을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1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5-4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 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상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건당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칙(형사처벌), 건당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 이 때 상계신고 위반금액은 실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1'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100'을 신고하지 않고 상계하여 '99'를 지급하였다면 상계 위반금액은 '1'에 해당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5

구매대행 대금 제3자지급 신고절차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 ▶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니며,
-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제3자지급 대상여부



■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수출업자 / 거주자
해외법인 B - 수입업자 / 비거주자
국내법인 C - 거주자

- ① A는 B에게 USD1,000,000 물품을 수출함
- ② C는 B를 대신하여 상기 물품대금을 원화(11억원 국내 송금)로 A에게 지불함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C가 A에게 B의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가 제3자 지급 신고 대상인지 여부



- ▶ 거주자(국내법인A)와 비거주자(해외법인B)간 거래에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제3자지급에 해당합니다.
-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3호와 같이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국내법인C)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해외법인B)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국내법인A)에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7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



■ 거래 현황

국내법인 A : B/L 양도인

국내법인 B : B/L 양수인

해외법인 C : 수출자

- ① 국내법인A가 해외법인C로부터 물품 수입
- ② 국내법인A가 국내법인B와 B/L양수도 계약 체결
- ③ 국내법인A는 해외법인C에게 물품대금 지급
- ④ 국내법인B(양수인)는 수입통관 진행

■ 질의 사항

상기 거래에서 양도인 "A"와 해외거래처 수출자 "C"와 대금지급을 하며, 양수인 "B"와 수출자 "C" 사이에는 직접적인 송금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송금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제3자지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의



- ▶ 국내법인(A)와 해외 수출자(C) 간 계약에 따라 국내법인(A)가 거래상대방인 수출자(C)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해 거래 당사자 간 지급 및 수령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3자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용카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대금지급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
- 거주자의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에 따른 게재료 및 별책대금 등 제경비 지급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를 제외한다)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정된 거래 : 법 및 영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 또는 보고를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5호 및 제5-11조

9

온라인 가상화폐 환전소 창업 절차



오프라인 환전소처럼 오프라인 가상화폐 환전소를 창업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 및 법령 문의드립니다.



- ▶ 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제8조제3항

10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행위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

11

외화의 휴대반출신고



출국시 외화를 휴대하여 나가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예외

▶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출국시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미화 3만불 이하의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화 3만불 초과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제1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12

외화반입신고



외국에서 미화 3만불 정도를 입국시 소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화신고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하여 수입(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13

유학 시 휴대수출 외화 한도



이번에 유학을 가면서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전부 가지고 가는데요. 출국시 소지하고 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없으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은행에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출국시 세관에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한 후에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및 제5-11조

14

우편물로 반입한 외화의 세관신고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무엇을 말합니까?



▶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 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바.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8조

16

환전영업자 반기보고



환전영업자 반기보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전거래 실적이 1건도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사본과 환전업무현황보고서를 매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환전업무현황보고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그 스캔본을 환전장부와 함께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전업관리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인허가 > 환전업무 현황보고서

▶ 환전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직접 방문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정기보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환전거래 실적이 없어도 '환전실적 없음'으로 관할세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기보고 미이행 또는 환전장부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2개월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7

미화 2천불 이하 매입·매각 시 인적사항 확인여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 ▶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가 있으며,
-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18

환전업 운영에 따른 장부기재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환전업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 판매시 외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동으로 한화로 계산되어 거슬러 주는데, 환전장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 ▶ 환전업과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 포함)하여야 합니다.
- ▶ 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업과 관련한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받고 잔돈을 원화로 거슬러 주는 행위는 환전장부 기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19

환전장부 보관기간



환전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수작업 장부와 전산제출용 양식으로 작성된 장부 둘다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 ▶ 환전장부를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기록 관리할 경우에는 수작업 장부를 별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권장 보고서식(전산제출용)'으로 작성한 환전장부는 파일형태로도 5년간 보관 가능하며, 다만, 자료 유실방지를 위한 백업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출력물 요청시 즉시 출력하여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20

환전업 폐업 절차



환전업을 등록을 하고 한번도 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별개로 세관에도 환전업 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① 환전업무 폐지신고서, ② 환전영업자 등록증 원본, ③ 보유외국환잔액(외화예금 포함) 매각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매각증명서, ④ 미사용 및 폐기 환전증명서 은행 반납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반납확인서, ⑤ 직전 반기보고 이후부터 폐지신고시점까지의 환전장부 사본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세무서에 하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이며, 등록·면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등록했던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추가로, 세관에 환전업무 폐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21

환전업 일시휴업 절차



환전영업자 등록을 했으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시 휴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전영업자의 휴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일신상의 이유로 영업장 문을 닫는 등의 휴업은 자율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환전장부 등 반기보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 ▶ 환전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기별 다음달 10일까지 환전장부와 환전업무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환전업 등록 시 제출서류



환전업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를 갖춘 자는 누구나 환전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환전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전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도면/사진 등 영업장 및 전산설비 구비에 관한 증빙자료
- ② 신분증 사본
-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④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⑤ *면허세 납부영수증(사본)
- ⑥ 임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법인)
- ⑦ 고객센터 운영,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서류(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에 한함)
- ⑧ 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구비에 대한 증빙자료 (온라인 환전영업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서류 제출생략 가능

▶ 온라인 환전의 경우 이행보증금, 약관, 손해배상절차 등 요건 증빙자료,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의 경우 고객운영센터, 긴급복구체계 운영 등 관련된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23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 작성방법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Cross rate 적용방법을 알려주세요



- ▶ 환전영업자의 업무현황보고서(반기보고) 작성 시 미달러 이외의 이종통화는 해당 반기 말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고시하는 환산율(Cross rate)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 ▶ 환산율(Cross rate)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에서 통화별 Cross rate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 * www.smbs.biz > 환율조회(분기별 말일자로 변경조회)
- ▶ 환산율(Cross rate)은 적용방법은,
 - ①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된 유로화(EUR), 영국 파운드화(GBP), 호주 달러화(AUD), 뉴질랜드 달러화(NZD)는 Cross Rate을 곱하면 미 달러화(USD)로 환산되고, 기타 Cross rate 옆에 (US\$)가 표기 안 된 화폐는 Cross Rate을 나누면 미 달러화(USD)로 환산됩니다.
 - ② 또한 통화별 환율(분기별 말일자 환율)을 통해서도 이종 통화(유로화(EUR) 등)를 미 달러화(USD)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유로화(EUR)를 달러로 환산하는 경우
: 유로화(EUR) → 원화환산 → 달러환산
- ▶ 환전업 시스템(UNI-PASS) 접속 시 제공되는 Cross rate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4

환전영업자 업무 허용 범위



환전영업자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 ▶ 환전영업자는 대면(일반, 카지노), 비대면(온라인, 무인환전기기) 환전 영업자로 구분되며, 등록하신 종류에 따라 업무 취급 범위가 다릅니다.
- ▶ 일반(카지노) 환전영업자 : 등록된 영업장 내에서만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에는 금액 제한이 없고 외화 매각은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 온라인 환전영업자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전신청을 받은 후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 : 신분증 스캔 기능을 갖춘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환전거래가 가능하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25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26

외국환업무의 정의 및 등록 절차



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개인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을 어떻게 짓나요?



▶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원로 입국하는 자
 -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그리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28

물품 수출에 의해 해외수출자에 대한 채무 상계 절차



해외 수출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 수출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물품의 수출에 의해 보상하는 경우는 채권,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 ▶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이와 함께 상계를 실시하는 자는 관계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물품의 제공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및 제5-11조

29

구매대행업체로 통한 대금지급이 제3자지급신고예외대상인지 여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지?



- ▶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대금 지급 자체가 제3자지급 신고 예외 대상인 것은 아니며,
-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제15호에 따라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30

당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신고절차



제3자 지급에서 거래당사자가 중국에 있는 A인데 홍콩에 있는 B로부터 수령하여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의 결제를 위해 당해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31

우편물로 외화 수령시 세관 신고 방법



우편물로 외화를 수령했는데, 은행에서 세관에 신고한 서류를 가져와야 환전이나 예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입하기 전이나 후에 신고할 수 있나요?



-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이나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취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6-2호 서식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32

매입·매각 시 인적사항 확인 여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 확인을 하여야 하나요?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5항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의 작성은 면제되나,

▶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규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가 있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제1항에 따라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33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



환전영업자 외국환매입 통보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 환전영업자는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국통화등을 매입한 경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동일자·동일인 기준 한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및 특정금융거래법 제4조의2

34

외국환 업무의 정의 및 미등록시 처벌



외국환업무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여야 하나요? 개인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8조, 제27조



일반시민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소에서 환전시 제한 사항이 있나요?



- 일반(오프라인) 환전영업자를 통해 환전할 경우, 외화 매각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외화 매입은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 온라인·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를 통할 경우, 외화 매입 및 매각 모두 동일자에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환전영업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에 제품을 유상으로 수출한 후 해당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 외국환거래법규 개정('17)으로 채권의 회수 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회수 명령), 외국환거래법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

▶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별도로, 향후 세관에서 수출과 외환 영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6조

37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 수령 절차



당사가 해외거래처에 제품 개발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외거래처에서는 환불은 안되며 다른 명목의 인보이스를 주면 달러를 송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행할 때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 ▶ 제품 개발비 등에 대한 환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인보이스를 제출하여 환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조
사

-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해외거래처인 "A"공장의 실제 위치는 중국이고, 그 업체의 미국 달러 거래 은행은 싱가포르이다.

예금주명은 "A"로 동일할 경우, 대금은 싱가포르로 지불되고 물품은 중국에서 선적되어 한국에 도착하는 거래가 국내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 ▶ 외국환거래법 상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간 지급 및 수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단순 '수취인 명'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 다만, 해당 계좌의 실소유주가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임이 확인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보증기간 내 반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CREDIT NOTE를 수령하고 반품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를 송금한 이후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하는 경우 → 수출(반품)신고된 물품에 대해 외화를 입금받음
- (2) 최초 수입 후 수입물품대금 외화송금 이전에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진행 하는 경우 → 최초 수입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수출(반품) 신고된 물품에 대한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질의사항은

- ①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거래를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지
- ② 위 (1), (2)의 대금 지급 및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① Credit Note(신용전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품(반송)물품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영수할 때 영수사유를 증빙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반품(반송)대금을 차감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Credit Note를 수취하는 그 자체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거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② (1), (2)의 내용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1)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2) 당해 최초 수입건에 대한 대금지급 전에 수출(반품)한 경우 전체 수입건에서 반품 건에 대한 대금을 제외하고 정상품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지급금액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별도의 채권이 발생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 살았을 때 소지한 캐나다달러 39천달러를 국내에 들어온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주자 간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환전업 등록을 받지 못한 자가 인터넷 거래를 통해 거주자간 환전거래를 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인지?



-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등록 환전업무 영위 혐의로 조사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해당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민원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 ▶ 이와 별도로,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 ▶ 그 외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PART 5

납세자보호

1. 불복청구
2. 납세자보호



1. 불복청구



1

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세관의 추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세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불복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2

관세법상 불복청구 대상



관세법상 불복청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불복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
- 참고로,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3

세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



세관으로부터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관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131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관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8조, 제40조 및 제9조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20조 제2항 및 제2호(「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4

이의신청의 정의와 신청기간



관세법상 이의신청 제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세법 상 이의신청은 세관장의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절차이나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는 아니므로, 이의신청 생략 후 관세청장·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및 관세법 제132조(이의신청)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과세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복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관장은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 청구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부 및 관련 증빙

■ 만약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6

불복청구 제기 세관



관세추징을 당했습니다. 불복을 제기하고 싶은데 업체소재지 세관, 통관지 세관, 추징세관 중 어디 세관을 대상으로 불복을 제기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불복 청구 대상은 민원인의 업체 소재지 또는 수입통관지 세관과 무관하며, 부족세액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 세관장을 상대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2. 납세자보호



1

관세 관련 법령 절차 상담 센터



관세 관련 법령이나 절차 등을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관세 관련 법령과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을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25'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20번(관세 법령 및 기타 상담문의)을 선택후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면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 20번 관세법령 및 기타 상담내용

- ① FTA, ② 해외직구, ③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 ④ 품목분류, HSCODE, ⑤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 ⑥ 수출통관, ⑦ 관세환급, ⑧ 보세화물, ⑨ 조사·외환

■ 인터넷 문의는 관세청 고객센터 누리집 초기화면(<https://www.customs.go.kr/call>)에서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관련 내용 및 규정 등을 확인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문의시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인증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2

관세청·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등 관세법 제118조의4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사항을 심의합니다.
- 또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118조의2~5

3

관세청 국민신문고 이용방법



관세청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세청은 관세청 누리집 내 국민 신문고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직접 관세법 등 관세관련 법령 질의, 관세행정관련 문의 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 신문고 접속 방법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 신문고
- 관세청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핀, 휴대전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외국인등록번호 인증 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 누리집 국민 신문고에 문의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 및 규정을 확인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고객센터(☎12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PART 6

기 타

1. 무역통계
2. 유니패스
3. 기타



1. 무역통계



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이용방법



수출입물품의 통계를 알고 싶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나요?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또한 어떤 통계를 제공하고 있나요?



1. 수출입무역통계 이용 방법은,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tradedata.go.kr) 홈페이지에서 각종 수출입통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수출입통계」, 「테마별 무역통계」, 「수출입물류통계」, 「관세행정통계」로 대분류시켜 총 94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상세 메뉴는 '붙임' 참고.

참고로, 수출입무역통계는 매월 15일경 집계 · 공표하고 있습니다.

2. 그 외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계교부대행자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bandtrass.or.kr, ☎02-2140-0732)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 전체 메뉴목록 〉

기준일 : 2024.2.23

□ 메뉴 구성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메인화면		
수출입통계	수출입 총괄	
	수출입 상세 실적	품목별
		성질별
		신성질별
		품목별+국가별
		성질별+국가별
		신성질별+국가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별
		세관별
		항구/공항별
		거래종류별
	지역별 총괄	
	지역별 상세 실적	품목별
		성질별
	10일 단위 잠정치 통계	
테마별무역통계	10대 수출입통계	품목/국가 무역수지
	FTA 무역	활용률
	기업특성	총괄
		종사자규모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기업무역활동	총괄
		생존/존속률
		고성장/가젤7기업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수출지표
	무역경기확산지수	
	남북교역	총괄
		실적
수출입물류통계	총괄	
	입항물동량 실적	
	출항물동량 실적	
	운송비용	해상수출입
항공수입		
관세행정통계	세수	총괄
		실적
		세목별
	AEO	AEO기업 총괄
		AEO MRA체결국 실적
	수입가격공개	농축수산물
원유		
사용자지원	보도자료	
	공지사항	
	자료실	수출입동향책자
		연보
		그림무역통계
		무역수지확산지수
	자주하는질문	
	업무지원정보	관세환율정보
HS부호		
통계부호		
HS부호 내비게이션		
무역통계소개	무역통계란?	
	국제적기준	
	작성기준 및 방법	
	무역통계상오류	
한눈에 보는 무역통계		

2. 유니패스

1

관세청 유니패스(UNI PASS)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유니패스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까지도 세관 신고로 통합(Uni)하여 원스톱 처리(Pass)가 가능한 관세청의 전자통관 포털 시스템입니다.
- 참고로 유니패스의 단어는 UNI+PASS의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국제 인지도 제고 및 해외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세부 의미는 하기와 같습니다.
 - UNI : Unified(통합처리), Universal(표준화로 모든 국가 사용), Unique(관세청 고유함)
 - PASS : Fast Clearance Service(신속통관 서비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유니패스 회원 가입·탈퇴·정보변경



유니패스 회원 가입·탈퇴 및 회원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업체 또는 대표자를 사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사용자등록>사용자등록안내]의 '이용신청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절차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신청 및 발급 받습니다.
- ② 신청인은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하여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합니다.
- ③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 후 승인 처리합니다.

■ 추가로 유니패스 회원정보 변경 및 탈퇴는 아래의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회원정보 변경 : 유니패스 >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 개인정보관리 > 회원탈퇴



관련법령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3

유니패스 인증서 및 등록방법



유니패스 이용 가능한 인증서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유니패스에서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의미하며,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인증서 등록 방법은 [My메뉴 > 개인정보관리 > 공동·금융인증서등록] 화면에서 돋보기 버튼을 선택한 후, 인증서 확인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암호 입력 후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4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https://unipass.customs.go.kr>)은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선박·항공기 입출항 및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은 물론, 보세 화물 추적 관리와 수출입에 필요한 요건확인 등 전반적인 통관·관세·물류에 대한 것들을 개인 및 업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이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업무지원, 정보조회, 통관단일창구, AEO, 고객지원, 마이페이지와 같이 8개(아래 ①~⑧)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전자신고 : 수출입통관, 화물 관련 각종 신고서를 작성, 전송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 ② 전자납부 : 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기능 및 체납 내역과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 ③ 업무지원 : 체화공매, 전자서고, 전자봉인, 유통이력, 지식재산권 등 통관 업무 이외의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메뉴로 구성
 - ④ 정보조회 : 사전안내, 자사실적, 통관정보, 통관 물류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
 - ⑤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과 관련된 신고서 작성 및 전자 지불 등 각종 현황 조회 메뉴로 구성
 - ⑥ AEO : AEO 공인 예비 심사 신청, 공인심사, 사후관리 및 지원 정보 메뉴로 구성
 - ⑦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사용자등록, 커뮤니티, 자료실 등 고객 지원을 위한 포털 기본 메뉴로 구성
 - ⑧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관리, 서비스 관리, 문서함 관리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 즐겨찾기 메뉴 선택 및 포틀릿 설정을 할 수 있는 개인화 관리 메뉴로 구성



관련법령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3. 기타



1

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



업체의 수출입실적증명은 세관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 수출입실적증명서는 세관에서 발급이 곤란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www.bandtrass.or.kr, ☎ 02-2140-0740)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또는 신분증)이며, 온라인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된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참고로 증명서 발급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1566-511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

2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활용 방법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세행정 적용 분석모델 중 민간에게 활용도가 높은 모델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속 URL은 bigdata.customs.go.kr이며, 현재 ①맞춤형 지원사업, ② 유사품목분류사례, ③수출입트렌드, ④해외관세동향 등 총 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제목	내용
1	맞춤형 지원사업	수출입 데이터에 기반,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 중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 추천
2	유사 품목분류 사례	유사어 필터 및 문장 검색 등 강화된 검색 기능과 사례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 실제 수출입 물품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분류 사례 제공
3	수출입 트렌드	수출입 실적을 다양한 시각화 기법으로 표현해 한눈에 수출입 현황 파악
4	해외 관세동향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정보를 수집, 딥러닝 작업을 통해 정제된 새로운 해외 정보 생성



관련법령

기
타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가 무엇인가요?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 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관세청 데이터안심구역입니다.
- 관세청은 모두 3곳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에 본원이 있으며 서울세관과 관세인재개발원에 각각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인재개발원은 영상데이터센터로서 X-Ray 영상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4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과 절차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이용상담 → 이용신청 → 센터 이용 → (필요시) 분석결과물 반출 신청 → 이용종료 및 자료폐기
-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사전 이용상담은 이메일(customsdata@korea.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5

휴대폰을 이용한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져오는 경우 예상세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관세청은 해외여행객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여행자 스스로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안내 및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정보(품목, 수량, 개당단가 등)를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시점에서의 환율·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 많은 경우나 궁금하신 점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담당직원의 제작코멘트



| 담당직원의 제작코멘트 |

운영지원과장 손성수

관세청의 업무를 분야별로 망라한
민원사례 FAQ를 발간하기 위해 힘써주신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례집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원들 또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민원업무의 바이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이익재

상당사례집이 관세행정 고객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이용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증 해결사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 하인홍

직원들의 노력이 한뼘한뼘
새겨져 민원 FAQ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 사례집이
국민들과 직원분들에게 관세청
민원업무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지원센터 권종원

관세행정 고객이 쉽게 접근하여 궁금한 점을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외환조사와 안단비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복잡하고
언어워서 문의가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된 질의답변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운영팀 송창영

수출입 업무의 기본이 되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정책과 서은정

심사제도 업무 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움집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무역협정정립팀과 김정리

구변 사례집이 복잡다양해진 FTA관세행정 분야에서
작지만 꽤 쓸모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사정책과 손동희

어려운 관세평가 업무를 사례집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심사와 이석영

FAQ 사례 활용을 통한 신속·편리한 민원 해소는 기본! 불필요한 민원 감소에 따른 응대 품질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은 플러스!

세원심사와 정미나

사례집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가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관물류정책과 박상현

수입통관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세행정 민원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정무역심사팀 추영주

원산지표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민원 답변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관물류정책과 남기오

해당 사례집이 수출업체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입안전검사와 권기범

다양한 FAQ 사례를 통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요건업무 진행하는데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세국경감시과 이정호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많은데 이 사례집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인쇄일 : 2024년 4월

발행일 : 2024년 4월

발행처 : 관세청 운영지원과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인쇄처 : (사) 성원 / 중앙사업단
(Tel. 042-627-0090)

본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 자주찾는 질문FAQ →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5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